
2026년도 본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교통건설국)

김 포 시

목 차

■ 교통건설국

1. 교통정책과	1
2. 대중교통과	71
3. 건설도로과	163
4. 도로관리과	281
5. 차량등록과	353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교통정책과
요 구 액	2,334,00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04,120	75,080	75,080	0	110,300	35,22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교통 수단) 사용료	103,661	75,000	75,000		110,000	35,000	2024, 2025년 세입 추계 반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59	80	80		300	220	2024, 2025년 세입 추계 반영

녹색어머니회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공모여부	비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		대표자	임성주
사업목적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한 스쿨존 내 교통질서 확립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แท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지도반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 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에 위한 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6,984	16,964	16,964	0	0	0	16,964	0	
시비	16,984	16,964	16,964				16,964	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6,964	16,964		
녹색 어머니회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일 시 : 2026년 중				
		-지원단체 :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내용 :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및 캠페인 지원				
		-산출근거				
		○ 홍보비				
		· 엘로카드 : 3,850원×2,286개	= 8,800	8,800		
		· 현수막 : 50,000원×20개	= 1,000	1,000		
		· 어깨띠 : 51,000원×10개	= 510	510		
		· 교통안전교재 : 5,000원×400권	= 2,000	2,000		
		· 걸어서학교가자 현수막 : 55,000원×10개	= 550	550		
		○ 식비				
		· 캠페인참석자 급식비 : 9,000원×20명×10회	= 1,800	1,800		
		· 다과비 : 3,000원×33명×10회	= 990	990		
		○ 물품구입비				
		· 명찰 : 8,000원×33개	= 264	264		
		· 깃발set : 15,000원×70개	= 1,050	1,05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교 어린이 등굣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의 활동 여건 개선
- 교통 안전 캠페인 활동 지원으로 교통봉사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매년 실시하는 스쿨존 캠페인 활동 시交通安全 반사경(옐로카드)을 배부하여 교통사고 예방
 - 미취학어린이 및 김포 관내 초등학교 대상 ‘녹색어머니와 배우는 어린이交通安全 교육’을 추진을 위한交通安全교재 및 현수막 등을 지원
- ※ 2025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3. 4.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 어린이交通安全교육 실시 (7회)
2024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4. 4.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 어린이交通安全교육 실시 (7회)
2025	· 관내 스쿨존 캠페인 추진 - 일시 : 2025. 4. ~ 매주 화요일 - 내용 : 김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및 캠페인 실시 · 어린이交通安全교육 실시 (연 14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6,671	16,671	-	16,670	16,670	-	1	1	-	
2024	16,984	16,984	-	16,983	16,983	-	1	1	-	
2025	16,964	16,964	-	16,964	16,964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공모여부	비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대표자	유홍선
사업목적	교통 혼잡지역의 신속한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지도를 통하여 교통사고 없는 교통문화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지도반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交通安全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 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交通安全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交通安全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交通安全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交通安全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0,300	50,300	50,300	0	0	0	50,703	403	
시비	50,300	50,300	50,300				50,703	403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703	50,700	0	
모범 운전자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일 시 : 2026년 중				
		- 장 소 : 김포시 전 지역				
		- 참여인원 : 91명				
		- 지원단체 : 김포시 모범운전자회				
		- 사업내용 : 모범운전자회交通安全 봉사활동 지원				
		- 산출근거				
		o 식비				
		. 출퇴근 정체지역 근무자 식대 : 9,000원×15명×20일×12개월	= 30,735	30,735		
		o 물품구입비				
		. 야광경광봉 : 15,000원×91개	= 1,365	1,365		
		. 발광조끼 : 35,000원×91개	= 3,185	3,185		
		. 모범정복 : 42,000원×91개	= 3,822	3,822		
		. 모범우의 : 70,000원×91개	= 6,370	6,370		
		. 통신사무비 : 30,000원×12개월	= 360	360		
		o 순찰차 운영비				
		. 유류비 : 100,000원×12개월	= 1,200	1,2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 모범순찰차 자동차세 : 348,000원	=	348	348	
		· 순찰차 보험료 : 638,000원	=	638	638	
		· 엔진오일 80,000원×2회	=	160	160	
		· 타이어교체 120,000원×2본×1회	=	240	240	
		○ 무전기 운영비				
		· 무전기전파 사용료 : 6,000원×15대×12개월	=	1,080	1,080	
		· 노후 무전기 교체 : 300,000원×4대	=	1,200	1,200	

□ 예산요구 사유

- 상습 정체지역 교통정리 봉사하는 회원들의 식비 및 활동운영비 지원
-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 및 시 주관 행사 등에 따른 물품구입비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상습정체지역 및 시 주관 행사의 교통지도 활동 시 필요한 장비 교체와 운영비 편성
 - ※ 2025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 · 상습정체지역 교통단속 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2024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 · 상습정체지역 교통단속 근무 · 상습침수지역 교통정리 특별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2025	·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스쿨존 연합 캠페인 · 상습정체지역 교통단속 근무 · 상습침수지역 교통정리 특별근무 · 시 주관 행사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50,156	50,156	-	50,136	50,136		20	20		
2024	50,300	50,300	-	50,249	50,249		51	51		
2025	50,300	50,300		50,300	50,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고령운전자 대상		
사업목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3,700	56,100	56,100	0	0	0	46,500	-9,600	
국비	16,110	16,830	16,830	0	0	0	13,950	-2,880	30%
도비	18,795	19,635	19,635	0	0	0	16,275	-3,360	35%
시비	18,795	19,635	19,635	0	0	0	16,275	-3,360	35%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6,500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301-14 기타 보상금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 310명 - 일반반납자 100,000원 × 155명 - 실운전증빙자 200,000원 × 155명	= 15,500 = 31,000	

※ 경찰청 교통기획과-9307(2025. 9. 12.)호와 관련 지급 방법 변경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 국도비 감소로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7. 11. : 「김포시交通安全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0. 8. 1.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시행
- 2022. 9. ~ : 매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10만원 김포페이 지급
※ 2025. 2월 예산소진
- 2026. 1. ~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자
 - 지원방식 :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1회 한정) 상당의 김포페이 카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600매 지급(1인당 10만원)
202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537매 지급(1인당 10만원)
2025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카드 561매 지급(1인당 10만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000	60,000	-	-	
2024	53,700	53,700	-	-	
2025	56,100	56,1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행정팀장 박상우	담당자	시설7급 최재민	전화	5924
-----	-------	--------------	-----	----------	----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목적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전검토 및 심의 수당 등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0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조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8조 제1항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9조 제1항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80	10,880	10,880	0	0	0	10,800	-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280	10,880	10,880				10,800	-8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800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8명×11건	= 4,400	
		· 심의 수당 : 100,000원×8명×8회	= 6,400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심의 수당 등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3개년(2022~2024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2. ~ : 김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최초 구성 및 운영
 - 2026. 1. ~ : 김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6회 개최, 9건 처리
2024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7회 개최, 12건 처리
2025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3회 개최, 7건 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280	5,400	-	3,880	
2024	9,280	6,760	-	2,520	
2025	10,880	4,450	-	6,4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40개소		
사업목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87,192	300,000	300,000	0	0	0	3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7,192	300,000	300,000				300,00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01-01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연간단가) 140개소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375개 × 400,000원 - 노면표시 유지보수 : 5,000㎡ × 30,000원	= 150,000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매년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동일 사업비 필요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사업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시설 관리비용 지속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지보수 연간단가(노면표시, 교통안전시설) 착공
- 2026. 12.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지보수 연간단가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마송중앙초 등 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분리대 설치(감정초 등 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논슬립) 설치(감정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차식표지 설치(호수초 등 9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석정초 등 4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바닥신호등 설치 (결포초)
2024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분리대 설치(신평초 등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솔터초)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설치(양도초 등 1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운양초 등 6개소)
2025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분리대 설치(한가람초 등 9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보름초 등 7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볼라드 보수 및 설치 (김포서초 등 2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77,416	776,435	90,552	10,429	
2024	587,192	552,564	-	34,628	
2025	300,000	139,495	-	160,5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정현	전화	2327
-----	-------	------------	-----	----------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

사업기간	2026. 3.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40개소		
사업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0,000	1,100,000		1,100,000	0	0	1,2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550,000	550,000		550,000			600,000	50,000	50%
시비	550,000	550,000		550,000			600,000	50,000	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 1,685,714원 × 140개소	= 236,000	
	401-01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볼라드 : 200,000원 × 120개 - 차량용 방호울타리 : 350,000원 × 1,600m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350,000원 × 800경간 · 노란색 신호등 설치 : 20,000천원 × 5개소	= 24,000 = 560,000 = 280,00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신설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 실시 의무.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필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예산증감 사유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증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12.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착수 및 준공
 - 2026. 3. ~ 9.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도로 재포장 공사(솔터초 등 5개소) - 승하차안전ZONE 설치 공사(구래초 등 2개소) - 방호울타리 설치(운양초 등 2개소) - 미끄럼방지 포장(신곡초 등 3개소) - 활주로형 표지병 설치(금빛초 등 14개소)	- 바닥신호등 설치(고창초 등 5개소)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고창초 등 5개소) - 노란색 신호등 설치(한가람초 등 3개소) - 신규 및 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운유초 등 3개소)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고촌초 등 9개소)
2024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147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가현교 등 73개소)	
2025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14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금파초 등 3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0,000	1,344,073	-	15,927	
2024	1,100,000	1,011,114	-	88,886	
2025	1,100,000	1,009,642	-	90,35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정현	전화	2327
-----	-------	------------	-----	----------	----	------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903개소)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40,200	2,131,404	1,671,404	0	250,000	210,000	1,525,000	-606,4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40,200	2,131,404	1,671,404	0	250,000	210,000	1,525,000	-606,404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25,000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교통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 34,000,000원 × 12개월 =	408,000	
	206-01 재료비	·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차량신호기, 잔여표시기 등) =	150,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위·수탁비 : 317,000,000원 =	317,000	
	401-01 시설비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연간단가) : 162,500,000원 × 4구역 =	650,000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전기,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반영 요구
-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
 - 신호등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는 재료비로 계상하여, 보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추진하고자 함.
-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위·수탁
 - 전문기관을 통한 교통현황 분석과 신호운영으로 교통정체 완화 및 최적화된 신호체계로 시민불편 해소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 교통흐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정적 유지보수가 필요하기에 예산 반영이 요구됨.

□ 예산증감 사유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시설물 이관에 따른 관리대수 감소로(134개소 → 84개소, ▼50개소) 교통 시설물 전기·통신요금 감액.
-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기술운영 위·수탁비 증액
- 노후화와 기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신호기 자재 확보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편성에 따라 유지관리 시설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12. : 교통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연중납부
 -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운영
 -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자재 구입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6개 구역),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2개 구역)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6대 교체공사, 노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5개소 교체공사 - 장기동 1773번지 일원 신호등 설치공사, 사우동 보건소 삼거리 횡단보도 이설공사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2024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교통신호등 전기 계약종별 변경공사, 교통신호등 노후 철주 교체공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8,000	1,553,296	-	104,704	
2024	1,640,200	1,498,622	-	141,578	
2025	2,131,404	1,428,783	-	702,62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 8급 김수은	전화	2482
-----	-------	------------	-----	-----------	----	------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사업기간	2020. 8. ~ 2026. 12.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사업규모	안전체험관 조성(A=1,987.62m ² ,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목적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5호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	
	해당조례	재난안전법	제66조의4 제1항7호, 제4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00	3,500,000	3,000,000	500,000	0	0	123,200	-3,376,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000	3,500,000	3,000,000	500,000			123,200	-3,376,8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3,200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전기, 소방 안전관리대행비 및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보안경비 용역 - 전기 500천원 × 12개월, 소방 300천원 × 12개월 - 승강기유지관리용역 250천원 × 12개월 - 보안경비 용역 300천원 × 12개월	= 9,600 = 3,000 = 3,600	
	401-01 시설비	· 스마트 안전체험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95,000	
	401-03 시설부대비	· 공공요금 납부(전기, 수도, 통신 등) 1,000천원 × 12개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스마트 안전체험관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 7. 스마트안전체험관 건축물 준공
- 2026년 스마트안전체험관 건축물 최소 유지관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적정(변경)	-	-	-	-
일자	2025.11. 반영	2021.03. 반영	-	-	-	-	2023.04.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0. 8. : 건축기본계획 수립
- 2020. 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 2021. 1.~2022. 4.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4. :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 2023.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5. 7. : 건축물 조성 공사 준공
- 2026. 1 ~ 12. :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2,313,100	9,498,300	2,814,800	123,200	2,691,600	0	
공 정 별	설계비	380,000	380,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10,236,600	7,450,000	2,786,600	95,000	2,691,600		
	감리비	1,650,000	1,650,000	0				
	부대비	46,500	18,300	28,200	28,2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2024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2025	건축물 조성공사 준공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업규모	관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20개소(노인보호구역 17개소, 장애인보호구역 3개소)		
사업목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조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4,430	55,250	55,250	0	0	0	45,25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4,430	55,250	55,250				45,250	-1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25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 보호구역 실태조사(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 5,250	
	401-01 시설비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20개소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400,000원 × 40개	= 16,000	
		- 노면표시 유지보수 : 35,000원 × 500㎡	= 17,500	
		- LED표지병 설치: 100,000원 × 65개	= 6,50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한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12 : 실태조사 정비
 - 2026. 4.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공사 착공
 - 2026. 5.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설치(갈산3리 마을회관 등 5개소)
2024	교통안전시설 설치(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
2025	고원식횡단보도 정비(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등 2개소), 볼라드교체(1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0	148,190	-	1,810	
2024	54,430	53,511	-	919	
2025	55,250	40,233	-	15,01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노인보호구역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노인보호구역 17개소		
사업목적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50%) ☒ 보조(50% 도비)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조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항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0	73,900	190,000	0	-116,100	0	160,000	86,100	
국비		0						0	
도비	80,000	36,950	95,000		-58,050		80,000	43,050	50%
시비	80,000	36,950	95,000		-58,050		80,000	43,050	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 34,650,000원	= 34,650	
	401-01 시설비	·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교통안전표지판 : 500,000원 × 40개 - 노면표시 설치 : 33,000원 × 600㎡ - 미끄럼방지 시설 : 32,000원 × 2,200㎡ - LED 표지병 : 100,000원 × 150개	≐ 125,350	

□ 예산요구 사유

- 신규 지정(예정)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시인성 확보 필요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신설으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 의무실시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노인보호구역(예정) 확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12. :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착수 및 준공
 - 2026. 3. ~ 10. :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초원지3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귀전2리 마을회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025	·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개소(귀전2리 2개소, 고막리 1개소) · 대벽4리 노인회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동을산1리 마을회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전류1리 마을회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60,000	57,410	82,456	20,134	
2025	156,356 (본예산 73,900 이월액 82,456)	128,595	-	27,76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 예산증감 사유

- 매 분기 김포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규·변경 구간에 대한 안전표지 설치 필요
- 도로 노후화,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유지관리 연간단가 집행 및 계약 체결, 유지관리 자재 구입
 - 2026. 2.~12.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착수 및 준공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착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정비 (연간단가) : 206개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9,252㎡
2024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정비 (연간단가) : 393개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8,706㎡
2025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 156개(진행중)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7,500㎡(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0	355,070	-	44,930	
2024	390,000	372,869	-	17,131	
2025	420,000	124,620	-	295,3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및 정기검사		
사업목적		정기·인수 검사를 통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정확도·인식률 검증 및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1,270	133,270	0	0	18,000	194,040	42,7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51,270	133,270			18,000	194,040	42,77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4,040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비 : 2,300,000원 × 81대 = ·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비 : 2,580,000원 × 3대 =	186,300 7,740	

□ 예산요구 사유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연 1회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성능 유지 및 법적 신뢰성 확보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확도 및 인식률을 검증하기 위한 인수검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및 인수검사 필요 비용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12.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연중 시행(81대,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정기검사비 지급(김포시→한국도로교통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관리과 추진
2024	-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시행 74대
2025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및 정기검사 비용 지급(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1,270	125,870	-	25,4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태우	전화	5943
-----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7,000	400,000	400,000	0	0	0	400,000	0	
국비	437,000	400,000	400,000				400,000	0	100%
도비		0						0	
시비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 특별교통수단 차량 40대 × 10,000,000원 = - 시스템 운영비 : 39,880,000원 - 일반운영비 : 65,120,000원 - 차량유지관리비 : 295,000,000원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대당 10,000천원 국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29. : 경기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 ~ 12. : 특별교통수단 운행(김포도시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행건수 : 83,576건 · 이 용 객 : 114,529명
2024	· 운행건수 : 76,063건 · 이 용 객 : 101,193명
2025	· 운행건수 : 64,825건 · 이 용 객 : 96,61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3,000	245,741	-	7,259	
2024	437,000	435,241	-	1,759	
2025	400,000	40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특별교통수단 운영 (도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33,055	4,193,981	4,193,981	0	0	0	3,091,606	-1,102,375	
국비		0						0	
도비	1,089,917	1,258,194	1,258,194				927,482	-330,712	30%
시비	2,543,138	2,935,787	2,935,787				2,164,124	-771,663	7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91,606	
특별교통수단 운영 (도비)	201-01 사무관리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회의 수당 : 100,000원×7명×2회 =	1,4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특별교통수단 인력운영비 - 보수 : 2,231,432,000원 - 수당 : 28,885,000원 =	2,260,317	
		· 경비 -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기타 경비 등 : 829,889,000원 =	829,889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제공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김포도시공사 위탁)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29. : 경기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 ~ 12. : 특별교통수단 운행(김포도시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행건수 : 83,576건 · 이 용 객 : 114,529명
2024	· 운행건수 : 76,063건 · 이 용 객 : 101,193명
2025	· 운행건수 : 64,825건 · 이 용 객 : 96,61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68,321	3,246,201	-	722,120	
2024	3,633,055	3,189,137	-	443,918	
2025	4,193,981	4,193,021	-	9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사업기간	2026. 상반기	사업위치	김포시 전 지역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8대 교체 구입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8,000	196,000	0	12,000	0	392,000	184,000	
국비		98,000	98,000				196,000	98,000	50%
도비		0						0	
시비		110,000	98,000		12,000		196,000	86,000	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2,000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 49,000,000원 × 8대 (더뉴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	= 392,000	

□ 예산요구 사유

- 특별교통수단 내용연수(8년)초과 및 노후(운행거리 300,000km 초과) 차량 교체 : 2017년식 8대

□ 예산증감 사유

- 차량 8대 노후화(내용연수 및 운행거리 초과)로 인해 수리비 상승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11. 반영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29. : 경기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상반기 : 특별교통수단 8대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행건수 : 83,576건 · 이 용 객 : 114,529명
2024	· 운행건수 : 76,063건 · 이 용 객 : 101,193명
2025	· 운행건수 : 64,825건 · 이 용 객 : 96,61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767	136,576	-	191	
2024	-	-	-	-	
2025	208,000	207,180	-	8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교통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교통사업특별회계-

회계구분	교통사업특별회계	부 서 명	교통정책과
요 구 액	9,384,1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3,524,379	2,892,167	4,181,293	-1,289,126	3,525,100	632,933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영주차장 임대수입(공사)	136,353	205,167	180,167	25,000	202,200	-2,967	노상주차장 9개소 임대수입 반영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견인차고지 임대수입	0	0	0	0	65,000	65,000	견인차고지 임대료 반영(선진운수)
사용료수입/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388,026	2,537,000	3,901,126	-1,364,126	3,140,000	603,000	대곶 공영주차장 및 고촌1 공영주차장, 운양3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전기차 충전요금 수입	0	6,000	0	6,000	6,000	0	전기차 충전요금 수입 반영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0	130,000	100,000	30,000	100,000	-30,000	특별회계 운영 및 이자수입, 공공예금 예치액 등 금리인하 반영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0	14,000	0	14,000	11,900	-2,100	김포도시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금리인하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0	14,000	0	14,000	3,000	-11,000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0	14,000	0	14,000	3,000	-11,000	암류자동차 공매 및 경매 교부금 수입금 및 그 외 수입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55,950	4,659,026	8,944,707	-4,285,681	4,300,000	-359,026	
과태료/차량관련과태료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3,855,950	3,209,026	7,494,707	-4,285,681	2,850,000	0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한 계도 강화, 안전신문고 운영에 따른 경각심 강화 등 단속 건수 감소 반영
부담금/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수입	1,400,000	1,450,000	1,450,000	0	1,450,000	0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반영
지난연도 수입	690,000	1,040,000	690,000	350,000	750,000	-290,000	
지난연도 수입/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690,000	1,040,000	690,000	350,000	750,000	-290,000	-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지난연도 수입 반영 -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건 감소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8,200	4,049,216	250,000	3,799,216	500,000	-3,549,216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268,200	4,049,216	250,000	3,799,216	500,000	-3,549,216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 반영
내부거래	0	31,306	0	31,306	50,000	18,694	
예탁금및예수금/예탁금 ◎예탁금 이자 수입	0	31,306	0	31,306	50,000	18,694	통합안정화 기금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반영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전역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설치(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화전 적색표시 등)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87,704	1,125,404	1,125,404	0	0	0	1,205,900	80,49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87,704	1,125,404	1,125,404				1,205,900	80,49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5,90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	201-02 공공운영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전기·통신 요금 : 38,325,000원 × 12개월 =	459,900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시스템 운용, 카메라 모니터링 등) =	320,000	
	401-01 시설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50,000,000원 × 6개소 =	300,000	
		. 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 설치(연석) : 500,000원 × 40개소 =	20,000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300,000원 × 120개 =	36,000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설치 : 35,000원 × 2,000㎡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성능개선 필요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노면도색,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 설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민원 요청에 따른 신규 설치 필요
-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관련 시설물(노면도색, 표지판) 설치 및 기지정 구간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12.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용역 착수 및 준공
교통시설물(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 유지관리(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6. 2.~6. : 소화전 적색표시 착수 및 준공
 - 2026. 3.~6.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10개소 설치 및 성능개선 17개소 · 불법주정차 방지 볼라드 설치 308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440개, 시선유도봉 설치 : 528개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150개소, 소화전 적색 복선 노면표시 공사 : 900㎡
2024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25개소 ·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연간단가) : 주정차 금지구역 352개소, 일방통행 33개소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39개 설치, 노면표시 설치 : 1,015㎡ 설치
2025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5개소 설치 및 성능개선 8개소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00개소 ·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연간단가) : 주정차 금지구역 374개소, 일방통행 33개소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 연간단가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14,928	2,047,767	-	67,161	
2024	887,704	877,372	-	10,332	
2025	1,125,404	864,725	-	260,67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이무영	전화	5923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단속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 등 운영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단속반 운영, 과태료 부과, 체납 관리, 단속알림 서비스 등 효과적인 계도단속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3호
		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 시장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29,562	397,934	412,734	0	0	-14,800	705,424	307,49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9,562	397,934	412,734			-14,800	705,424	307,49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5,424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고지서용지구입: 55,000원×31박스×12개월 = 20,460 .고지서 프린터 소모품 교체 비용: 1,125,000원×12개월 = 13,500 .교통지도단속 및 캠페인 급식비: 9,000원×3명×30일×12개월 = 9,720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3명×3회×12개월 = 5,400 .단속반 근무자 피복비: 140,000원×14명 = 1,960 .단속반 근무자 휴게실 기본경비: 2,000,000원 = 2,000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홍보비: 1,500,000×2회 = 3,000		
	201-02 공공운영비	.일반 우편요금: 430원×26,000건×12개월 = 134,160 .등기 우편요금: 2,830원×11,500건×12개월 = 390,540 .모바일 발송료: 150원×11,000건×12개월 = 19,800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 4,000,000원×6대 = 24,000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상해보험료: 11,000원×14명×12개월 = 1,848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보험료: 1,000,000원×6대 = 6,000 .주정차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14,203,200원 = 14,204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 유지관리: 21,951,600원 = 21,952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15,120,000원 = 15,120 .국민신문고민원 자동처리시스템 유지관리: 7,500,000원 = 7,500 .불법주정차 모바일 전자고지 유지관리비: 12,000,000원 = 12,000 .공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 170,000원×12월 = 2,040 .견인차고지 주민세(사업소분): 220,000원×1개소 = 220		

□ 예산요구 사유

- 단속업무 운영을 위한 일상적 경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불법주정차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실제 지출 내역 결과를 반영한 일부 감액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계도 홍보 제작 등 필요성 감소에 따른 감액
- 민원편의 시스템 개선 및 불법주정차 관련 공공운영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건수: 184,992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7,937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금액: 7,016백만원 · 과태료 징수율: 88.4%
2024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건수: 158,683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5,836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금액: 4,097백만원 · 과태료 징수율: 70.2%
2025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부과: 108,880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4,614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징수금액: 3,411백만원 · 과태료 징수율: 73.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44,830	645,800	-	99,030	
2024	529,562	330,539	-	199,023	
2025	397,934	201,792	-	196,1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질서팀장 최규현	담당자	행정7급 손연수 행정8급 이기택 행정8급 윤성호 행정9급 김민수	전화	5577 5578 5576 5574
-----	-------	------------	-----	--	----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 구입(교체)

-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다목적 승용차량 2대, 이동형 CCTV 2세트		
사업목적	노후단속차량의 구입(교체) 및 단속 CCTV 구입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제1항1호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9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 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7,000	0	0	0	0	0	180,000	180,000	
국비	5,960	0					6,000	6,000	
도비		0						0	
시비	71,040	0					174,000	174,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 구입(교체)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이동형 단속 CCTV 구입 : 30,000,000원×2대	= 60,000	
		· 주행형 단속차량 구입: 60,000,000원×2대	= 120,000	국비지원 사업

□ 예산요구 사유

- 노후화된 단속차량 2대 교체
 - 국비 6,000천원(3,000천원 × 2대), 시비 114,000천원(57,000천원 × 2대)
- 차량 부착 단속 CCTV 2대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10. 반영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및 단속 CCTV 1대 구입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7,000	74,183	-	2,817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질서팀장 최규현	담당자	행정7급 손연수	전화	5577
-----	-------	------------	-----	----------	----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61개소, 주차면 5,148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지속 운영 및 관리,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8조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3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19,830	5,103,821	3,515,821	1,060,000	250,000	278,000	3,692,954	-1,410,86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19,830	5,103,821	3,515,821	1,060,000	250,000	278,000	3,692,954	-1,410,867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92,954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홍보 및 물품 구입	= 82,000 = 2,700	
	201-02 공공운영비	·행복나눔 및 품무역 노외주차장 공공요금 ·전용회선 통신요금 5개소×12개월×200천원	= 3,000 = 12,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 20명, 기간제근로자 13명) ·운영경비(공공요금 납부, 수선유지비 등)	= 1,441,142 = 1,568,232	
	401-01 시설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옥상층 바닥면 보수 ·고촌공영주차장 노후 관제설비 교체	= 100,000 = 170,000 = 71,000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63,284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양역환승센터 영상설비 네트워크 장비 증설 ·운양역환승센터 통합영상저장장치(NVR) 추가증설 ·통합주차관제 2차 백업시스템 도입	= 54,621 = 88,193 = 36,782	

□ 예산요구 사유

- 국유지 지속 사용을 위한 대부료 및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납부
-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주차장 문제 발생 시 즉시 처리 등으로 시민편의 제공
- 사우자주식공영주차장 준공 20년차로 바닥 에폭시 마감의 부식 및 균열에 따른 보수 필요
- 고촌 공영주차장 노후관제설비 내용연수(9년) 초과로 관제장비 교체
- CCTV 증가로 운양환승센터 내 영상설비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영상저장장치 증설
- 통합주차시스템 전산실 운영 불가 대비를 위한 2차 백업시스템 구축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북변자주식 주차장(8억) 정비 완료로 인한 예산 감소
-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옥상층 바닥면 보수로 인한 예산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장기동 노외주차장 외 4개소 정비공사
2024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구조 보완 공사
2025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관제기기 교체/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운영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구매/ 장기2 공영주차장 재포장 공사/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0,272	2,544,615	237,881	47,776	
2024	3,757,711	3,026,122	488,000	243,589	
2025	5,591,821	4,362,257	-	1,229,56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공업8급 이경수 시설8급 김인혁	전화	2330
-----	-------	------------	-----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교통유발부담금 약 6,000건		
사업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에의 정확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6조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863	35,397	35,397	0	0	0	65,219	29,82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863	35,397	35,397				65,219	29,822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5,21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반		
		- 기본급 : 93,840원 × 20일 × 8명	= 15,015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 × 4일 × 8명	= 3,003	
		- 고용산재보험료 : 18,018,000원 × 4%	= 721	
	201-01 사무관리비	·부과 고지서 구입 : 60,000원 × 10박스	= 600	
	201-02 공공운영비	·사전안내문 인쇄비 : 100원 × 6,000건	= 600	
		· 등기 우편요금 2,830원 × 16,000건	= 45,28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 실사용 용도조사를 위한 조사반(8명) 운영
- 정기부과 전 부담금 부과 안내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위한 사전안내문 인쇄비, 발송비 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압류 관련 우편요금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6. :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
 - 2026. 8. : 교통유발부담금 사전안내문 발송
 - 2026. 10. :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발송
 - 2026. 12.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독촉 및 압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교통유발부담금 4,823건 1,510,879천원 부과 · 4,624건 1,464,419천원 징수
2024	· 교통유발부담금 4,942건 1,612,922천원 부과 · 4,644건 1,521,402천원 징수
2025	· 교통유발부담금 5,050건 1,591,898천원 부과 · 3,512건 1,123,450천원 징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481	58,906	-	575	
2024	32,863	27,505	-	5,358	
2025	35,397	28,956	-	6,4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행정9급 사영우	전화	5942
-----	-------	------------	-----	----------	----	------

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대로 버스전용차로(사우동~고촌읍)
사업규모	관내 버스전용차로 8km(노면표시, 표지판, CCTV유지관리 등)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20,000	20,000	0	0	0	40,000	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20,000	20,000				40,000	2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201-02 공공운영비	. 버스전용차로 CCTV 유지관리(시스템 운용, 카메라 모니터점검 등)	= 20,000	
	401-01 시설비	. 버스전용차로 교통시설물(노면표시, 표지판 등) 유지보수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필요
- 버스전용차로 내 훼손된 노면표시, 표지판 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단속 CCTV의 유지관리비(운용, 부품교체 등)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12. :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착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13. 고촌~개화 중앙 버스전용차로 개통 · 5.26.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2024	· 버스전용차로 표지병 설치 및 교체(190EA)
2025	· 버스전용차로 표지병 설치 및 교체(120EA) ·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조명 교체(2개소) ·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LED 전광판 교체 설치(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19,485	-	515	
2025	20,000	19,855	-	1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시설7급 이무영	전화	2465 5923
-----	-------	------------	-----	----------------------	----	--------------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운양동 1309-8
사업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A=1,385㎡, 46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500,000	500,000	
국비		0						0	
도비		0					250,000	250,000	50%
시비		0					250,000	250,000	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비 : 20,000,000원×1식 = 20,000 -공사비 :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아스콘 포장 주차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 480,000		

□ 예산요구 사유

- 운양동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및 주변 상업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확보(도비 250,000천원, 시비 250,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적정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2019.06.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6. :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19. 11. : 부지 매입
 - 2026.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6. 4. : 공사 착공
 - 2026. 6. : 공사 준공
 - 2026. 7. : 김포도시공사 위탁운영 체결 및 유료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조성(A=1,385㎡, 46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1309-8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공업8급 이경수	전화	2872
-----	-------	------------	-----	----------	----	------

북변 및 사우 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돌문로32,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봉화로 182번길 18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북변자주식 및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사업목적	노후 승강기 교체를 통한 이용고객 안전성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승강기의 안전검사)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3. 정밀안전검사 :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 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2항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00,00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00,000	20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북변 및 사우 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401-01 시설비	.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 100,000천원 .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 100,000천원	= 100,000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04년 9월 준공 후 21년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험이 커지고 있어 승강기 안전확보와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조속한 전면 교체가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사우자주식 및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승강기 교체 비용 신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3.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8급 김인혁	전화	2330
-----	-------	------------	-----	----------	----	------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사우중앙 공영주차장 (사우동 883)
사업규모	주차장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1개)		
사업목적	사우중앙 공영주차장 내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8조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3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5,000	2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5,000	25,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401-01 시설비	·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 25,000,000원×1개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우중앙 공영주차장에 무인 사전정산기 신규 설치로 시민편의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사우중앙 공영주차장 무인 사전정산기 신규 설치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무인 사전정산기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공업8급 이경수	전화	2872
-----	-------	------------	-----	----------	----	------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8. ~ 2026. 12.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사업규모	안전체험관 조성(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목적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계)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5호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교통안전	
	해당조례	재난안전법	제66조의4 제1항7호, 제4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5,998,300	4,226,135	1,772,004	3,500,000	4,882,032	389,972	2,814,800	123,200	2,691,600
국비									
도비									
시비	5,998,300	4,226,296	1,772,004	3,500,000	4,882,032	389,972	2,814,800	123,200	2,691,600
기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000	3,500,000	3,000,000	500,000	0	0	123,200	-3,376,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000	3,500,000	3,000,000	500,000			123,200	-3,376,8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3,200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 전기, 소방 안전관리대행비 및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보안경비 용역 - 전기 500천원 × 12개월, 소방 300천원/개월 × 12개월 - 승강기유지관리용역 250천원 × 12개월 - 보안경비 용역 300천원× 12개월	= 9,600 = 3,000 = 3,600	
	401-01 시설비	· 스마트 안전체험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 95,000	
	401-03 시설부대비	· 공공요금 납부(전기, 수도, 통신 등) 1,000천원 × 12개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 7. 스마트 안전체험관 건축물 준공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 7. 스마트안전체험관 건축물 준공
- 2026년 스마트안전체험관 건축물 최소 유지관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적정(변경)	-	-	-	-
일자	2025.11. 반영	2021.03 반영	-	-	-	-	2023.04. 반영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20. 8. : 건축기본계획 수립
 - 2020. 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 2021. 1.~2022. 4.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4. :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 2023.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 2025. 7. : 건축물 조성 공사 준공
 - 2026. 4. :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용역 착수
 - 2026. 12. : 전시시설 제작 및 설치 용역 완료 및 운영개시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2,313,100	9,498,300	2,814,800	123,200	2,691,600	0	
공 정 별	설계비	380,000	380,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10,236,600	7,450,000	2,786,600	95,000	2,691,600		
	감리비	1,650,000	1,650,000	0				
	부대비	46,500	18,300	28,200	28,2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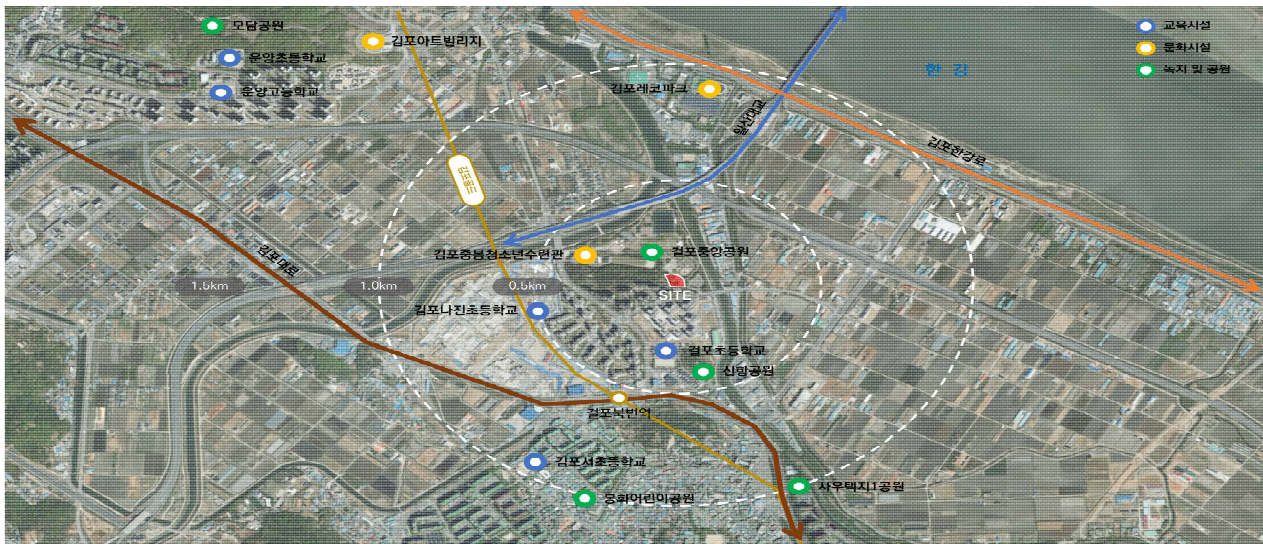
2023	공유재산 변경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이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2024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2025	건축물 조성공사 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97,234	732,499	2,464,652	83	
2024	5,998,300	4,226,296	1,772,004	-	
2025	5,272,004	4,882,032	389,972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A=1,987.62㎡, 지하1층 지상2층	본예산 요구액 (천원)	123,200
부기명 (세부사업)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사업위치	걸포동 1553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6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2. ~ 2026. 12.	사업위치	구래동 6882-7번지
사업규모	지하주차장 105면(지하1층, 연면적 3,760㎡)		
사업목적	구래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3,529,134	12,239,958	1,289,176	-	348,814	940,362			
국비									
도비	2,000,000	2,000,000							
시비	11,529,134	10,239,958	1,289,176	-	348,814	940,362			
기타									

□ 예산요구 사유

○ 계속비이월 사업내용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BF 본인증 획득을 위한 기관협의 및 정비추진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반영		-	-
일자	2025.11. 반영	2020.03. 반영		-	-	-	2020.02.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1. : 사업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2. : 공유재산 심의
 - 2020.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2.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3. ~ 2023. 12. :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 2024. 1. ~ 2026. 12. : 부대공사추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3,529,134	13,529,134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340,000	340,000	0			0	
	보상비	0	0	0			0	
	공사비	11,650,849	11,650,849	0			0	
	감리비	1,508,285	1,508,285	0			0	
	부대비	30,000	30,0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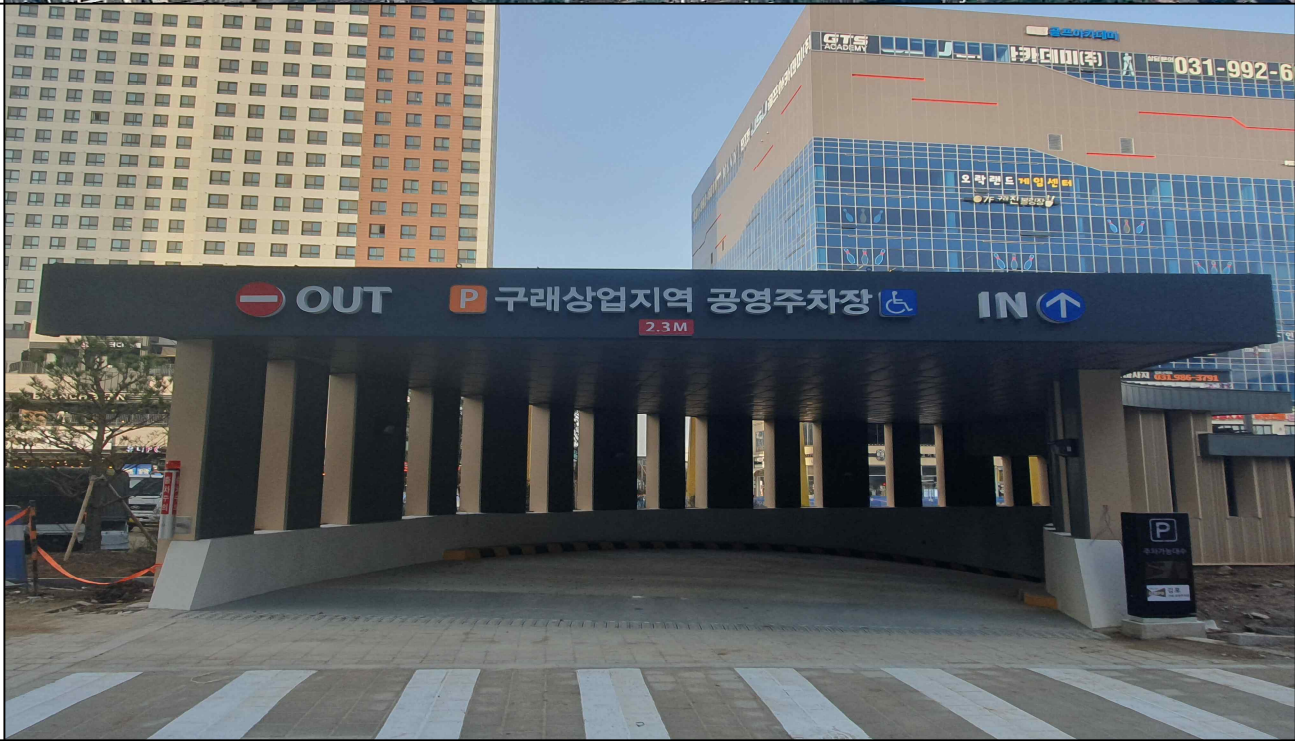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사 준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2024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인도 재정비 공사 완료 사토처리 공사
2025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정비(국가유공자 및 가족배려 주차구획 정리 등) 구래상업지역 공영주차장 BF 보완공사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878,741	5,946,596	1,932,145	-	
2024	13,529,134	12,239,958	1,289,176	-	
2025	1,289,176	348,814	940,362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지하주차장 105면 (지하1층, 연면적 3,760㎡)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구래동 6882-7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6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7. ~ 2028. 12.	사업위치	풍무동 933번지
사업규모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A=5,815㎡, 지상5층 6단 135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5,450,000	4,726,534	723,466	-	-	723,466			
국 비									
도 비									
시 비	5,450,000	4,726,534	723,466	-	-	723,466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반영		-	-
일자	2025.11. 반영	2020.10. 반영		-	-	-	2020.08.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7. : 사업계획수립
- 2020. 8.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반영
- 2020. 10. : 투지심사 완료
- 2021. 3. ~ 2023.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5. : 계약심사 완료
- 2024. 1. :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42면)
 - ※ 현재 지평식 조성하여 사용중이며, 재정건전성 확보 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2026. 3. ~ 2027. 12. : 공사추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1,100,000	5,450,000	0	0	0	5,650,000	
공 정 별	설계비	350,000	350,000	0			0	
	보상비	4,100,000	4,100,000	0			0	
	공사비	5,780,000	900,000	0			4,880,000	
	감리비	830,000	100,000	0			730,000	
	부대비	40,000	0	0			4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계약심사 완료
2024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42면)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55,455	220,722	834,733	-	
2024	834,733	111,267	723,466	-	
2025	723,466	-	723,466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A=5,815㎡, 지상5층 6단 135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933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6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1306-7번지 외 2필지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 환승주차장 조성(424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5,621,000	35,348,272	272,728	-	171,465	101,263			
국비									
도비									
시비	35,621,000	35,348,272	272,728	-	171,465	101,263			
기타									

□ 예산증감 사유

- 계속비 이월 사업내용
 - 운양역환승센터 공영주차장 BF본인증 보완 공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반영		-	-
일자	2025.11. 반영	2017.11. 반영		-	-	-	2020.08.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3. : 추진계획 수립
 - 2018. 5. : 실시설계 추진
 - 2020. 3. : 운양환승센터 조성공사 착공
 - 2020. 8. :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공유재산심의 완료
 - 2022. 8. : 운양환승센터 조성공사 준공
 - 2023. 1. ~ 2026. 12. :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BF보완공사 등)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5,621,000	35,621,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970,286	970,286	0				
	보상비	0	0	0				
	공사비	32,595,276	32,595,276	0				
	감리비	1,957,000	1,957,000	0				
	부대비	98,438	98,438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
2024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
2025	운양환승센터 부대공사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24,558	661,021	963,537	-	
2024	963,537	690,808	272,728	-	
2025	272,728	171,465	101,263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 공영주차장, 424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운양동 1306-7번지 외2필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6급 박종국	전화	5941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대중교통과
요 구 액	14,685,63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63,200	323,200	323,200	-	293,100	-30,100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영차고지 임대료	120,000	120,000	120,000	-	130,000	10,000	임대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북변차고지 임대료	3,200	3,200	3,200	-	3,100	-100	공시지가 감소에 따른 감액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광고사용료	140,000	200,000	200,000	-	160,000	-40,000	측면광고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6,800	5,000	5,000		4,000	-1,000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800	1,000	1,000	-	1,000	0	전년 동일 편성
기타수입/그외수입 ◎공영차고지 관리비	6,000	4,000	4,000	-	3,000	-1,000	관리비 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5,000	230,000	230,000		230,000	0	
과징금/과징금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10,000	210,000	210,000	-	210,000	0	전년 동일 편성
과태료/기타과태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0	20,000	20,000	-	20,000	0	전년 동일 편성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버스정류소 일원
사업규모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목적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조, 제3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00	500,000	500,000	0	0	0	320,000	-180,000	
국비		0						0	
도비	51,000	150,000	150,000				96,000	-54,000	
시비	119,000	350,000	350,000				224,000	-126,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00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 버스승강장 설치 : 20,000천원*10개소	= 200,000	
		·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 설치 : 4,000천원*30개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된 버스승강장 및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 및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1차) 추진
 - 2026. 03. ~ 2026. 05. :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1차) 추진
 - 2026. 04. ~ 2026. 06. :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26. 08. ~ 2026. 10. :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2차) 추진
 - 2026. 10. ~ 2026. 12. :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2차)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쉼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8개소, 안내판 버스정류소 설치 1개소 · 쉼터형 버스정류소 이설 및 철거 12개소, P형 표지판 설치 및 이설, 철거 39개소, 정류소 내 의자 설치 10개소 · 버스정류소 내 조명 정비 48개소 · 버스정류소 내 보도 정비 및 노면 도색 25개소 · 쉼터형 버스정류소 지붕유리필름 정비사업 47개소
2024	· 쉼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2개소 · 쉼터형 버스정류소 철거 5개소, P형 표지판 설치 및 이설, 철거 45개소 · 버스정류소 내 조명 정비 48개소
2025	· 쉼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10개소 · 쉼터형 버스정류소 철거 6개소, P형 표지판 설치 및 이설, 철거 25개소 · 버스정류소 내 조명 정비 20개소 · 버스정류소 내 보도 정비 및 노면 도색 10개소 · 버스 승강장 내 천장형 냉난방기 2개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3,000	332,992	-	8	
2024	170,000	156,361	-	13,639	
2025	500,000	499,280	-	7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임장 유종오	담당자	시설9급 김노아	전화	2457
-----	-------	-------------	-----	----------	----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0.	사업위치	운양역(ID:35649) 등 4개소
사업규모	운양역(ID:35279) 등 노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4개소 교체 시공		
사업목적	광역버스 환승거점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조, 제3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9조 제3호
		제9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2,000	250,000	250,000	0	0	0	170,000	-80,000	
국비		0						0	
도비	48,600	75,000	75,000				51,000	-24,000	
시비	113,400	175,000	175,000				119,000	-56,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0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 운양역(ID:35649) : 35,000천원*1식	= 35,000	
		· 호수마을5단지.호반베르디움2차(ID:35735) : 35,000천원*1식	= 35,000	
		· 곡촌마을.금호어울림1단지(ID:35117) : 70,000천원*1식	= 70,000	
		· 한신더휴테라스(ID:35761) : 30,000천원*1식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인구 증가로 대중교통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 노선 수에 비해 규모가 작고 노후한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를 확장 교체 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 및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6. 05.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1차) 추진
 - 2026. 07. ~ 2026. 09.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2차)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1차) 3개소 완료 · 뉴고려병원.이니스더원(ID:35493) 광역형 승강장 15m 설치 · 운양역(ID:35650) 밀폐형 승강장 6m 설치 · 당곡고개(ID:35250) 광역형 승강장 9m 설치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2차) 3개소 완료 · 장기역.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ID:35513) 밀폐형 승강장 6m 설치 · 힐스테이트.경남아너스빌(ID:35659) 복합형(일반+밀폐) 승강장 12m 설치 · 수정마을·휴먼시아(ID:35623) 광역형 승강장 12m 설치
2024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1차) 3개소 완료 · 조리미입구(ID:35268), 북변환승센터.구터미널(ID:35532) 광역형 승강장 15m 설치 · 양도사거리.삼용아파트(ID:35255) 광역형 승강장 9m 설치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2차) 2개소 완료 · 솔터마을입구(ID:35643), 호수마을이편한세상.한가람우미린(ID:35640) 광역형 승강장 12m 설치
2025	-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1차) 2개소 완료 · 장기사거리.수정마을(ID:35211) 광역형 승강장 21m 설치 · 화성파크드림.KCC스위첸(ID:35483) 광역형 승강장 12m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0	239,414	-	586	
2024	162,000	161,826	-	174	
2025	250,000	159,732	-	90,2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타임장 유종오	담당자	시설7급 임승범	전화	2462
-----	-------	-------------	-----	----------	----	------

버스정류시설 정비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버스정류소 일원
사업규모	관내 버스정류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분야별 연간 단가공사 추진		
사업목적	버스정류소 구조물·전기·보도 분야 연간 단가공사 추진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조, 제3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85,000	85,000	0	0	0	200,000	1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85,000	85,000				200,000	11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버스정류시설 정비 사업	401-01 시설비	.시설(구조물) 연간 단가공사 : 100,000,000원	= 100,000	
		.전기 연간 단가공사 : 60,000,000원	= 60,000	
		.보도 연간 단가공사 : 40,000,000원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버스정류소 구조물 설치·철거, 전기 조명시설 공사, 줄서기 유도 싸인블록 및 점자블록 설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정류소 이용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버스정류시설 유지보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년 버스정류소 연간 단가공사(시설물, 전기, 보도) 착공
 - 2026. 12. : 2026년 버스정류소 연간 단가공사(시설물, 전기, 보도)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쉼터형 버스정류소 설치 6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5,000	82,619	-	2,38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팀장 유종오	담당자	시설7급 임승범	전화	2462
-----	-------	------------	-----	----------	----	------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버스정류소 일원
사업규모	버스정류소 1,279개소		
사업목적	버스정류소를 위탁관리를 통해 오물 제거, 노선도 정비 등 이용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7,673	150,499	150,499	0	0	0	197,485	46,98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7,673	150,499	150,499				197,485	46,98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7,485	
버스 정류소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0,709,000원*1식 (기본급, 수당 등)	= 40,709	
		·일반운영비 : 40,826,000원*1식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기간제 4대보험료 등)	= 40,826	
		·수선유지교체비 : 115,450,000원*1식 (승강장 유지보수, 노선도 정비, 환경 정비 등)	= 115,450	
		·배상금등 : 500,000원*1식 (영조물 배상금)	= 500	

□ 예산요구 사유

- 경미한 시설물 유지보수, 오염물 청소, 광고물 및 노선도 정비 등 신속한 현장 출동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

□ 예산증감 사유

-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버스정류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김포도시공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0. :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 2026. 12. : 대행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선도 정비 : 1,799건
2024	-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선도 정비 : 2,287건
2025	-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선도 정비 : 1,65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881	151,881	-	-	
2024	157,673	157,673	-	-	
2025	150,499	150,499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임장 유종오	담당자	시설7급 임승범	전화	2462
-----	-------	-------------	-----	----------	----	------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600
사업규모	월곶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사업목적	월곶 공영차고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차고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김포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김포도시공사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803	28,379	28,379	0	0	0	54,224	25,84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803	28,379	28,379				54,224	25,84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224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환경상적 위탁사업비	.일반운영비 : 43,404,000원*1식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등)	= 43,404	
		.수선유지비 : 10,520,000원*1식 (시설물보수, 냉난방기 엔진 소모품 교체)	= 10,520	
		.기타비용 : 300,000원*1식 (영조물 배상금)	= 300	

□ 예산요구 사유

- 월곶 공영차고지 내 시설물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증가 및 녹지부 환경정비 비용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0. : 대행사업비 분기별 지급
 - 2026. 12. : 대행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월곶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6개 업체, 540대 임대 [연간 누계(단기 주차 대수 포함)]
2024	- 월곶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6개 업체, 652대 임대 [연간 누계(단기 주차 대수 포함)]
2025	- 월곶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운영 위탁 - 공영차고지 임대관리 : 6개 업체, 599대 임대 [8월까지 누계(단기 주차 대수 포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118	63,118	-	-	
2024	60,803	60,803	-	-	
2025	28,379	28,379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팀장 유종오	담당자	시설7급 임승범	전화	2462
-----	-------	------------	-----	----------	----	------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전환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내 버스 차고지
사업규모	운수업체 버스 차고지 7개소		
사업목적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한 버스 서비스 개선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885	73,867	21,000	0	52,867	0	73,977	110	
국비		0						0	
도비	9,865	22,160	6,300		15,860		22,193	33	
시비	23,020	51,707	14,700		37,007		51,784	7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977	자부담 포함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307-09 운수업체보조금	.구래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3,663천원*1개소 = 3,663 .이젠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4,356천원*1개소 = 4,356 .걸포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4,818천원*1개소 = 4,818 .대포리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2,630천원*1개소 = 12,630 .석모리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2,630천원*1개소 = 12,630 .대명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12,630천원*1개소 = 12,630 .양곡차고지 휴게시설 개선 23,250천원*1개소 = 23,250		

□ 예산요구 사유

- 운수종사자의 휴식 공간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버스 서비스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사업비와 차이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버스 차고지 인프라 개선사업 수요조사
- 2025. 11.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및 도비 보조금 내시
- 2026. 01. ~ 2026. 11. :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 추진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급
- 2026. 12. :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젠/결포/구래/태리/북변 차고지 시설 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4	- 대포리/이젠/결포/구래 차고지 시설 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5	- 월곶/이젠/결포/구래/풍무/북변/대포리/대명/석모리/양곡 차고지 시설 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9,882	513,438	-	6,444	
2024	32,885	32,885	-	-	
2025	73,867	-	-	73,86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팀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시내버스 와이파이 479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1,884	102,393	101,884	0	0	509	129,330	26,937	
국비								0	
도비								0	
시비	101,884	102,393	101,884	0	0	509	129,330	26,93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9,330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시내버스 와이파이 통신요금 : 22,500원*479대*12개월 =	129,330	

※ 국비 부담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납부, 국비 세입예산 대상 아님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초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공공와이파이 대당 평균 이용요금 증가 및 운영대수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	-	-	-	-	-	-	-	-	-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2.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0. 01. ~ 2023. 05.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478대)
 - 2023. 06. ~ 2023.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450대)
 - 2025. 01. ~ 2025. 12. : 와이파이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450대)
 - 2026. 01. ~ 2026. 12. : 와이파이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479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78대) 정상 운영
2024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감소(28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2025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7,009	114,899	-	12,110	
2024	101,884	101,884	-	-	
2025	102,393	93,903	-	8,4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임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광역버스 와이파이 189대		
사업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관내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4,824	84,825	84,825	0	0	0	102,060	17,235	
국비		0						0	
도비	25,447	25,447	25,447				30,618	5,171	
시비	59,377	59,378	59,378				71,442	12,06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60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광역버스 와이파이 통신 요금 : 45,000원*189대*12개월 =	102,06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조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
- 2026년 도비 보조 가내시 반영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대당 통신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2.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완료
 - 2021. 01. ~ 2023. 08.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198대)
 - 2023. 09. ~ 2024.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189대)
 - 2025. 01. ~ 2025.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189대)
 - 2026. 01. ~ 2026. 12. : 정상 운영 및 요금 납부 예정(189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감소(9대),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189대) 운영
2024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189대) 운영
2025	-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189대)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920	93,888	-	13,032	
2024	84,824	84,823	-	1	
2025	84,825	77,757	-	7,0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임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The 경기패스(국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 63,686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와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80,000	5,460,000	5,460,000	0	0	0	9,048,000	3,588,000	
국비	1,440,000	2,730,000	2,730,000				4,524,000	1,794,000	
도비	432,000	819,000	819,000				1,357,200	538,200	
시비	1,008,000	1,911,000	1,911,000				3,166,800	1,255,8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48,000	
The 경기패스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341,774,000천원(경기도 총사업비) * 2.647%(김포시 분담비율) =	9,048,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서 반영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이용요금 환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The경기패스 이용자 지속 증가 및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 및 대중교통비 환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공기관위탁사업비 2,880,000천원 지출
2025	- 공기관위탁사업비 4,124,800천원 지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880,000	2,880,000	-	-	
2025	5,460,000	4,124,800	-	1,335,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The 경기패스(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 63,686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2,196	400,480	217,858	0	0	182,622	203,662	-196,81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2,196	400,480	217,858			182,622	203,662	-196,81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3,662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7,000,000천원(경기도 총사업비) * 2.909%(김포시 부담비율)	= 203,662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 반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6. 01. ~ 2026. 12 : 대중교통비 환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132,196천원
2025	- 2025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400,48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32,196	132,196	-	-	
2025	400,480	400,480	-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 13,759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35,586	500,902	435,205	0	0	65,697	986,896	485,99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35,586	500,902	435,205			65,697	986,896	485,99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86,896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24,839,500천원(경기도 총사업비) * 3.973%(김포시 분담비율) =	986,896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반영 필요
- 만6세~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실사용액에 대해 최대 24만원/연 한도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 지속 증가로 인한 부담액 증가
- 경기도에서 시군부담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하여 우리시 부담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6. 01. ~ 2026. 12 : 대중교통비 환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637,038천원
2024	-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735,586천원
2025	- 2025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490,42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7,038	637,038	-	-	
2024	735,586	735,586	-	-	
2025	500,902	490,424	-	10,478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저상버스 39대(대당 87백만원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월차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저상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152,000	5,040,000	5,040,000	0	0	0	3,393,000	-1,647,000	
국비	2,576,000	2,520,000	2,520,000				1,696,500	-823,500	
도비	386,400	378,000	378,000				254,475	-123,525	
시비	2,189,600	2,142,000	2,142,000				1,442,025	-699,97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93,000	
저상버스 도입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저상버스 87,000천원 * 39대	= 3,393,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2023년부터 노후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 및 대당 지원금 감소로 인한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6년도 저상버스 수요조사
 - 2025. 09.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저상버스 도입 및 보조금 교부(39대)
 - 2026. 12. :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저상버스 5대 도입
2024	- (시내)저상버스 38대 도입 (이월 23대) - (마을)저상버스 14대 도입
2025	- (시내)저상버스 26대 도입 (이월 1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76,000	460,000	2,116,000	2,300,000	
2024	7,268,000	6,900,000	361,000	7,000	
2025	5,401,000	2,410,000	-	2,99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st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행정6급 이선미	전화	2456 5917
-----	-------	-----------------------------	-----	----------------------	----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CNG 저상버스 31대(대당 5백만원 지원)		
사업목적	연료비 및 정비비 등 운행비용 일부 보전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저상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2,500	250,000	250,000	0	0	0	155,000	-95,000	
국비		0						0	
도비	46,500	75,000	75,000				46,500	-28,500	
시비	186,000	175,000	175,000				108,500	-66,5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5,000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5,000천원 * 31대	= 155,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사업량 : 31대)
- CNG 저상버스에 운영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저상버스 지원 대수 감소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26년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대상 조사
 - 2025.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6. 06. : 상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6. 12. : 하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6. 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상반기 36대분 * 2,500천원 = 90,000천원 지원 - 하반기 23대분 * 2,500천원 = 57,500천원 지원
2024	- 상반기 29대분 * 2,500천원 = 72,500천원 지원 - 하반기 26대분 * 2,500천원 = 65,000천원 지원
2025	- 상반기 25대분 * 2,500천원 = 62,50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7,500	147,500	-	80,000	
2024	232,500	137,500	-	95,000	
2025	250,000	62,500	-	187,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공영버스 7대(선진버스: 53번, 86-1번/서정마을버스: 공영쇄암(53-3번), 공영학운(53-5번), 86번, 201번, 202번)		
사업목적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운영 지침	제5조 제3항
		제5조(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③ 공영버스 운영 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 운영 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57,220	701,780	636,660	0	65,120	0	526,337	-175,443	
국비		0						0	
도비	197,166	210,534	190,998		19,536		157,901	-52,633	
시비	460,054	491,246	445,662		45,584		368,436	-122,81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26,337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10,500,000천원(경기도 총사업비) * 5.01%(김포시 부담비율)	= 526,337	

□ 예산요구 사유

- 현 교통수단 부족으로 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인 도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5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사업 정산
 - 2026. 01. ~ 12. : 2026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 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 실적

2023	- 도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원(581,284천원)
2024	- 도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원(657,220천원)
2025	- 도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원(701,780천원)

○ 최근3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1,284	581,284	-	-	
2024	657,220	657,220	-	-	
2025	701,780	701,78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st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행정6급 이선미	전화	2456 5917
-----	-------	-----------------------------	-----	----------------------	----	--------------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맞춤형버스 5개 노선(김포운수: 1번,4번/선진상운: 3번,7번,8번)		
사업목적	벽·오지 및 산업단지 등 대통교통 취약지역에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82,000	1,089,900	1,089,900	0	0	0	867,176	-222,724	
국비		0						0	
도비	591,000	326,970	326,970				260,153	-66,817	
시비	591,000	762,930	762,930				607,023	-155,90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67,176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4,410,000천원(경기도 총사업비) * 19.7%(김포시 분담비율)	= 867,176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경기도 맞춤형버스 운행 지원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및 지역명소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내시
- 2026. 01. ~ 12. :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금 교부(도→시)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원
- 2026. 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지급(1,133,000천원)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지급(1,182,000천원)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선진상운(주) - 추진실적 : 맞춤형버스 운영지원금 지급(1,089,9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3,000	1,133,000	-	-	
2024	1,182,000	1,182,000	-	-	
2025	1,089,900	1,089,9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선진상운(주)		대표자	신재호, 김종명	
사업목적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운수업계보조금)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56,305	1,667,880	2,446,224	0	0	-778,344	889,536	-778,344	
시비	1,556,305	1,667,880	2,446,224			-778,344	889,536	-778,34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889,536	889,536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70번(출근) : 226,000원 * 16회 * 246일	= 889,536	889,536		

□ 예산요구 사유

- 비수익 노선 지원: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운행손실을 보전하여 노선을 지속 운영
- 골드라인 혼잡 완화: 걸포북변역,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등 주요 역에서 출발하는 출근 급행버스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70C,D 노선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357,412천원 지급
2024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478,350천원 지급
2025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1개소(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005,320천원 가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492,992	1,492,992	-	1,357,412	1,357,412	-	135,580	135,580	-	
2024	1,556,305	1,556,305	-	1,478,350	1,478,350	-	77,955	77,955	-	
2025	1,667,880	1,667,880	-	1,005,320	1,005,320	-	662,560	662,560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심야버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운수(주)		대표자	정종운, 신재호	
사업목적	심야시간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지원을 통해 주 이용객인 야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이동수단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운수업계보조금)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4,706	60,679	60,679	0	0	0	60,679	0	
시비	74,706	60,679	60,679				60,679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60,679	60,679		
심야버스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이음1 : 2,029,280원 * 12개월	= 24,351	24,351		
		· 이음2 : 3,027,255원 * 12개월	= 36,328	36,328		

□ 예산요구 사유

- 심야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 유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동일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연간 운행손실금 51,538천원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연간 운행손실금 61,068천원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 김포운수(주) · 추진실적 : 이음1, 2번 상반기 가지급금 29,113천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9,706	69,706	-	51,538	51,538	-	18,168	18,168	-	
2024	74,706	74,706	-	61,068	61,068	-	13,638	13,638	-	
2025	60,679	60,679	-	29,113	29,113	-	31,565	31,565	-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시내버스 3개 업체 및 마을버스 11개 업체		
사업목적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운송업자의 결손액 일부 보전을 통해 업체 경영난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3항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107,280	4,046,110	4,413,940	0	-367,830	0	3,596,210	-449,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107,280	4,046,110	4,413,940		-367,830		3,596,210	-449,9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96,210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94,600,000천원 ¹ * 70% ² * 2.64% ³	= 3,596,210	

1) 경기도 총사업비

2) 경기도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3)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약자수도권통합요금제시행 공동합의문('07)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전철·시내·마을버스 간 환승할인으로 인한 운임손실 일부를 지원함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6. 1. ~ 12. :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월별 환승할인금 산정 및 지원(도→시→ 시내·마을버스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4,741,740,000원)
2024	·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11개 업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5,107,280,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4,046,11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1,740	4,741,740	-	-	
2024	5,107,280	5,107,280	-	-	
2025	4,046,110	4,046,11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사업목적	시내버스 업체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발전 및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4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9,646	303,764	303,764	0	0	0	301,849	-1,91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9,646	303,764	303,764				301,849	-1,91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1,849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2,000,000.000원 ¹ * 70% ² * 3.59% ³	= 301,849	

1) 경기도 총사업비

2) 경기도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3)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6. 05. ~ 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경기도)
 - 2026. 12. :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인센티브 지급(도→시→운수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283,513,00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4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379,646,00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303,764,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513	283,513	-	-	
2024	379,646	379,646	-	-	
2025	303,764	303,764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사업목적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익 적자노선 운행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1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78,043	1,265,683	1,265,683	0	0	0	1,006,719	-258,96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78,043	1,265,683	1,265,683				1,006,719	-258,96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6,719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40,000,000,000원 ¹ * 70% ² * 3.59% ³	= 1,006,719	

1) 경기도 총사업비

2) 경기도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3)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수단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2026년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6. 01. ~ 12. : 사업추진, 분석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적자노선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2024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 지원,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적자노선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
2025	·적자노선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1,265,683,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94,705	2,394,705	-	-	
2024	2,278,043	2,278,043	-	-	
2025	1,265,683	1,265,68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시내버스 3개 업체 및 마을버스 11개 업체		
사업목적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운송업자의 결손액 일부 보전을 통해 업체 경영난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3항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9,481	356,408	356,408	0	0	0	306,159	-50,24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9,481	356,408	356,408				306,159	-50,24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6,159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0,650,000,000원 ¹ * 70% ² * 4.1% ³	= 306,159	

1) 경기도 총사업비

2) 경기도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지시율

3)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버스 운송 사업자의 결손액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사업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분기별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보전금 산정 및 지원(도→시→버스 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시내버스 3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303,299천원) · 마을버스 11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63,335천원)
2024	· 시내버스 3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392,789천원) · 마을버스 11개 업체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 지급(79,481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356,408,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335	63,335	-	-	
2024	79,481	79,481	-	-	
2025	356,408	356,408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st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6 5917
-----	-------	-----------------------------	-----	----------------------	----	--------------

벽지노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3개노선(101, 102, 83)		
사업목적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69,427	768,383	0	1,044	0	1,099,182	329,755	
국비		0					329,755	329,755	
도비		0						0	
시비		769,427	768,383		1,044		769,427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99,182	
벽지노선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1,099,152,000원('26년 김포시 총사업비) * 70%	= 1,099,182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벽지노선 지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반영 편성
-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벽지노선의 운영결손금 보전을 위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시비 변동 없음(국비만 매칭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국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시→운수업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3개노선[선진버스(주)]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693,133천원)
2024	- 시내버스 3개노선[선진버스(주)]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745,995천원)
2025	- 시내버스 3개노선[선진버스(주)] 벽지노선 지원금 지급(769,42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3,133	693,133	-	-	
2024	745,995	745,995	-	-	
2025	769,427	769,42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고촌교통(유) 등 11개 업체		대표자	박봉수 등 13명	
사업목적	남부권 및 북부권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손실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운수업체보조금)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2조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5,234,395	6,474,640	5,600,000	0	0	874,640	5,600,000	0	
시비	5,234,395	6,474,640	5,600,000	0	0	874,640	5,600,000	0	
자부담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5,600,000	5,600,000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307-09 운수업체보조금	· 일반마을 3,860천원(평균손실지원액)*81대*12개월 · 공공마을 6,695천원(평균손실지원액)*23대*12개월	3,752,000 1,848,000	3,752,000 1,848,000	- -	

□ 예산요구 사유

-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없는 남부권 및 북부권 세부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중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의 손실금 일부 및 전액 재정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동일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일반마을버스 : 5개 업체/ 18개 노선, 공공마을버스 : 8개 업체/ 17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4,187,425천원(일반마을버스 : 2,577,322천원, 공공마을버스 : 1,610,103천원)
2024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일반마을버스 : 5개 업체/ 18개 노선, 공공마을버스 : 8개 업체/ 18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5,234,395천원(일반마을버스 : 3,402,263천원, 공공마을버스 : 1,832,132천원)
2025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일반마을버스 : 5개 업체/ 18개 노선, 공공마을버스 : 8개 업체/ 18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4,436,334천원(일반마을버스 : 2,769,199천원, 공공마을버스 : 1,667,135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4,468,032	4,468,032	-	4,187,425	4,187,425	-	280,607	280,607	-	
2024	5,234,395	5,234,395	-	5,234,395	5,234,395	-	-	-	-	
2025	6,474,640	6,474,640	-	4,436,334	4,436,334	-	2,038,306	2,038,306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917 2455
-----	-------	---------------	-----	----------------------	----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마을버스(11개 업체) 및 시내버스(3개 업체) 재정 지원 노선		
사업목적	경영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및 교통 취약 노선의 합리적인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5조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	22,000	22,000	0	0	0	22,000	0	
국비								0	
도비								0	
시비	22,000	22,000	22,000	0	0	0	22,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22,000천원*1회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경영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및 교통 취약 노선의 운송원가 산정하여 합리적 재정 지원
- 운송원가를 통한 시 재정 지원 규모(지원율, 원가 반영 여부) 예측에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	-	-	-	-	-	-	-	-	-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연구용역 계획수립
 - 2026. 04. ~ 2025. 09. : 연구용역 사업 진행
 - 2026. 09. : 결과 보고 및 '26년 운송원가 반영 재정 지원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마을버스 및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 시행(12개 업체, 40개 노선)
2024	- 마을버스 및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 시행(14개 업체, 45개 노선)
2025	- 마을버스 및 벽지 공영버스 경영분석 연구 용역 시행(14개 업체, 46개 노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20,000	-	-	
2024	22,000	20,000	-	2,000	
2025	22,000	-	-	22,000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한강이음버스 6대					
사업목적		신도시 교통취약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테마공원 연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제78조(지역 자율 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 자율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 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60,000	798,000	798,000	0	0	0	838,000	40,000	
국비	380,000	0						0	
도비		399,000	399,000				419,000	20,000	
시비	380,000	399,000	399,000				419,000	2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38,000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201-02 공공운영비	.한강이음버스 6대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 115,00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한강이음버스 : 60,250천원 * 12개월	= 723,000	

□ 예산요구 사유

- 한강이음버스 6대 운행 손실 전액 보조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고정비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손실 지원액 증가
-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등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한강이음버스 운행 손실 및 운영비 지원
 - 2026. 01. : 최종 집행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649,999천원)
2024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644,076천원)
2025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377,35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50,000	649,999	-	1	
2024	760,000	644,076	-	115,924	
2025	798,000	377,353		420,6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팀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대광위 광역버스 17개 노선		
사업목적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44,313	5,922,411	7,153,000	0	0	-1,230,589	6,402,371	479,9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44,313	5,922,411	7,153,000			-1,230,589	6,402,371	479,9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402,371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8,536,494,000원('26년도 김포시 부담지시액) * 75%	= 6,402,371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공버스의 대광위 준공영제 이관에 따른 대상노선 증가 및 운송원가 상승으로 예산 증액
※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지시액의 75%만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5. 12. : 경기도 → 대광위 광역버스 이관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3,155,851,000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546,813,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5,922,411,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58,351	3,155,851	302,500	-	
2024	4,546,813	4,546,813	-	-	
2025	5,922,411	5,922,411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경기도 공공버스 1개 노선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773,597	7,618,386	3,826,097	0	0	3,792,289	842,867	-6,775,51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773,597	7,618,386	3,826,097			3,792,289	842,867	-6,775,51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2,867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204,096,000원 ¹ * 70% ²	= 842,867	

1) 김포시 총사업비

2) 시 부담율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공공버스의 대광위 준공영제 이관에 따른 대상 노선 감소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5. 12. : 경기도 → 대광위 광역버스 이관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973,280,000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11,662,833,000원 ※ 이월액 1,889,236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826,097,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862,516	4,973,280	1,889,236	-	
2024	11,662,833	11,662,833	-	-	
2025	7,618,386	3,862,097	-	3,756,2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고촌, 풍무)
사업규모	수요응답형 버스 10대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운행 효율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20,000	1,825,000	1,825,000	0	0	0	1,368,750	-456,250	
국비		0						0	
도비	576,000	547,500	547,500				410,625	-136,875	
시비	1,344,000	1,277,500	1,277,500				958,125	-319,37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68,750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136,875,000원 * 10대	= 1,368,750	

□ 예산요구 사유

-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부족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9개월분만 사업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 2026년 운송원가 산정 및 협상
 - 2026. 01. ~ 12. : 똑버스 운행 및 운송손실금 지급
 - 2027. 01. : 사업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수사업자 손실지원금 지급 961,060천원
2024	- 운수사업자 손실지원금 지급 1,815,119천원
2025	- 운수사업자 손실지원금 지급 1,228,15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000	961,060	-	838,940	
2024	1,920,000	1,815,119	97,000	7,881	
2025	1,922,000	1,228,153	-	693,8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7급 김민우	전화	5554
-----	-------	------------	-----	----------	----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고촌, 풍무)
사업규모	김포시 톡버스 10대		
사업목적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안정적인 재정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톡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12조
		제7조(고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톡버스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톡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 ① 도지사는 톡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2,510	62,006	62,006	0	0	0	55,574	-6,432	
국비		0						0	
도비	30,753	0						0	
시비	71,757	62,006	62,006				55,574	-6,43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574	
수요응답형 버스(DRT) 활성화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1,791,327천원(경기도 총 사업비) * 3.1%(김포시 부담비율) =	55,574	

□ 예산요구 사유

- 김포톡버스의 운송비용 정산, CS센터 운영 등 재정지원에 관한 업무 위탁 비용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경기도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운송원가 산정 및 운송손실금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 : 53,818천원[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2025	· 자치단체간 부담금 납부 : 62,006천원[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02,510	53,818	-	48,692	
2025	62,006	62,006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7급 김민우	전화	5554
-----	-------	------------	-----	----------	----	------

대중교통 정책사업 홍보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현수막, 전단지, 신청서 등		
사업목적		각종 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복리 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000	15,000	15,000	0	0	0	9,000	-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15,000	15,000				9,000	-6,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대중교통 정책사업 홍보비	201-01 사무관리비	. 버스 정책 홍보비 : 5,000,000원 . 공공마을버스 홍보비 : 1,333,000원 . 택시시책 홍보물 및 서식 제작 : 1,000,000원 . 이음택시 홍보물 및 서식 제작 : 667,000원 . 택시 승차장 신설 및 이전 홍보비 : 333,000원 . 밤샘주차 단속계도 홍보비 : 667,000원	= 9,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사업에 대한 각종 서식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노선조정 홍보비 등 예산집행 실적에 따른 2026년 예산 일부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2024. 12.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25. 01. ~ 2025. 12.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26. 01. ~ 2026. 12.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14,000,000원
2024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9,151,000원
2025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4,042,5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000	14,000	-	-	
2024	15,000	9,151	-	5,849	
2025	15,000	4,043	-	10,95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steam장 유종오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고현아 행정6급 이선미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912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노선 5개(53대)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15,582	4,250,377	4,250,377	0	0	0	6,150,476	1,900,09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15,582	4,250,377	4,250,377				6,150,476	1,900,09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150,476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8,200,634,000원('26년도 김포시 부담액) * 75%	= 6,150,476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도주관 노선 5개의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결손보전액 증가
※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 지시액의 75%만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액 가내시 시달
 - 2026. 01. ~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015,582,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4,250,377,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15,582	3,015,582	-	-	
2025	4,250,377	4,250,37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87대(10개 노선)		
사업목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86,397	5,412,535	4,267,782	0	0	1,144,753	14,238,444	8,825,909	
국비		0						0	
도비	1,165,919	1,623,761	1,280,335			343,426	4,271,533	2,647,772	
시비	2,720,478	3,788,774	2,987,447			801,327	9,966,911	6,178,13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238,44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163,660천원 * 87대	= 14,238,444	

□ 예산요구 사유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주관)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운송원가 상승 및 대상 노선 증가로 사업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01. : 88번 공공관리제 시행(13대)
 - 2025. 11. : 위탁사업비 지급(경기교통공사)
 - 2025. 11. : 2026년 사업비 가내시 시달
 - 2026. 01. : 1002번(12대), 21번(8대) 공공관리제 시행
 - 2026. 01. ~ 12. : 분기별 사업비 지급(시 →경기교통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운행손실금 3,886,397천원 지급(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2025	· 운행손실금 2,271,696천원 지급(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해당없음		-	-	
2024	3,886,397	3,886,397	-	-	
2025	5,412,535	2,271,696	-	1,996,08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개 위원회, 7명(위촉직 5명)		
사업목적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개선, 노선선정 등 중요사항 결정·심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등 전문가 나. 운송사업자 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조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	1,000	1,000	0	0	0	1,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0	1,000	1,000				1,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201-01 사무관리비	· 회의수당 100,000원*5명*2회	= 1,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예산액 동일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27. : 조례 제정
 - 2024. 06. 03. :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2024. 10. 31. ~ 11. 08. : 제1회 김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 2025. 11.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 2026. 01. ~ 12.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 200천원
2025	·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예정 : 2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00	200		600	
2025	1,000	-	-	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7급 김민우	전화	5554
-----	-------	------------	-----	----------	----	------

버스 비상수송대책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전세버스 12대		
사업목적	매년 반복되는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000	6,000	6,000	0	0	0	6,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	6,000	6,000				6,000	0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버스 비상수송대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500,000원/대 * 12대	= 6,000	

□ 예산요구 사유

- 매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을 위해 버스정류장과 김포골드라인 주요 역사를 연결하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수단 공급 안정성 확보
- 버스 비상수송대책 추진을 위한 계약금 등 초기 투입비용 발생에 대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예산액 동일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상황 발생 시 전세버스 투입 섭외 및 계약
임시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기록 확인 후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000	-	-	6,000	
2025	6,000	-	-	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원 피복비(2명), 밤샘주차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및 스마트폰(3대) 운영비		
사업목적	최신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 기반 밤샘주차단속시스템' 이용 및 단속원 피복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단속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720	6,580	6,580	0	0	0	8,200	1,6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720	6,580	6,580				8,200	1,6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200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밤샘주차 단속원 피복비(하계복, 안전화) : 140,000원*2명 =	280	
	201-02 공공운영비	·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 510,000원*12월 [유지보수 기간] 2026.01.01. ~ 2026.12.31. [유지보수 내용] - 현장 단속 프로그램 - 단속 스티커 출력 - 밤샘 주차 서버 메인 프로그램 - 개인정보 DB 암호화 솔루션 - 현장단속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 · 스마트폰 통신요금 : 50,000원*3EA*12월 =	6,120	
			1,800	

□ 예산요구 사유

- 밤샘주차 단속원(현장 근무자) 업무 성격상 단속복 착용이 필요
-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스마트폰 통신비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월 유지보수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07. : 보안성 검토,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 요청
 - 2019. 12. : 시스템 구축(계약심사 및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설치 포함)
 - 2020. 01. : 서비스 개시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및 실적 보고, 단속원 작업복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5,702,080원 집행
2024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6,215,920원 집행
2025	·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 운영 외 단속용 스마트폰 요금(3대) : 5,709,000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40	5,702	-	538	
2024	6,720	6,216		504	
2025	6,580	5,709	-	8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7급 유형석	전화	5569
-----	-------	------------	-----	----------	----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72대		
사업목적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349	33,370	13,315	0	20,055	0	14,094	-19,276	
국비		0						0	
도비	5,006	12,514	4,993		7,521		5,285	-7,229	
시비	8,343	20,856	8,322		12,534		8,809	-12,047	
기타		0						0	자부담 3,524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094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 5,500원*672대*5월*80% =	14,094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요금 카드 결제 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통신료를 지원하여 카드 결제 기피 현상 해소
-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해소 및 카드 이용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5개월분만 사업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 ~ 2026. 5.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7.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법인택시 143대 · 개인택시 486대	2,925,120원 지원 9,972,160원 지원
2024	· 법인택시 146대 · 개인택시 486대	3,065,920원 지원 10,056,640원 지원
2025	· 법인택시 146대 · 개인택시 486대	5,781,600원 지원 19,038,800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0	12,897	-	303	
2024	13,349	13,122	-	227	
2025	33,370	24,820	-	8,5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72대		
사업목적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1,150	194,000	111,150	0	82,850	0	133,000	-61,000	
국비		0						0	
도비	33,345	58,200	33,345		24,855		39,900	-18,300	
시비	77,805	135,800	77,805		57,995		93,100	-42,7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3,000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 : 24,740*672대*8월 =	133,000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카드 결제액 15,000원 이하 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 및 택시 이용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8개월분만 사업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 ~ 2026. 8.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7.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법인택시 143대 · 개인택시 486대	37,900,090원 지원 43,347,700원 지원
2024	· 법인택시 146대 · 개인택시 486대	38,601,950원 지원 49,877,570원 지원
2025	· 법인택시 146대 · 개인택시 486대	66,920,630원 지원 74,324,900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33	81,247	-	28,786	
2024	111,150	88,479	-	22,671	
2025	194,000	141,245	-	52,75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합)성일운수 외 3개사	대표자	김봉구외 3인
사업목적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에 따른 택시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이용객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계(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탐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IT취약계층_개인택시523인 포함)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5호
		제9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택시 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 시스템 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231,312	238,632	238,632	0	0	0	254,016	15,384	
시비	231,312	238,632	238,632				254,016	15,384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45,016	245,016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 31,500원 × 672대 × 12월	= 254,016	254,016		

□ 예산요구 사유

- 택시플랫폼(김포콜택시)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편의 증진
- 관내 택시업계의 김포콜 사용료 지원을 통한 택시업계 재정부담완화

□ 예산증감 사유

- 월 이용료 증가에 따른 증액 (1대당 월 이용료 30,500원 → 31,500원)
-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25년 및 26년 증차분 반영에 따른 증액 (632대 → 672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택시 629대 김포콜 사용료(월 30,500원) 지원을 통한 택시이용객 편의 도모 및 택시업계 재정부담 경감
2024	○ 관내 택시 632대 김포콜 사용료(월 30,500원) 지원을 통한 택시이용객 편의 도모 및 택시업계 재정부담 경감
2025	○ 관내 택시 632대 김포콜 사용료(월 30,500원) 지원을 통한 택시이용객 편의 도모 및 택시업계 재정부담 경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230,214	230,214	-	226,401	226,401	-	3,813	3,813	-	
2024	231,312	231,312	-	228,841	228,841	-	2,471	2,471	-	
2025	238,632	238,632	-	191,296	191,296	-	47,336	47,336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44명		
사업목적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 비율이 과반 이상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2,000	303,600	276,000	0	27,600	0	214,715	-88,885	
국비		0						0	
도비	197,400	212,520	193,200		19,320		150,301	-62,219	
시비	84,600	91,080	82,800		8,280		64,414	-26,66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4,71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110,000원*244명*8월	214,715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8개월분만 사업비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01. ~ 2026. 8. : 사업집행 (월별집행)
 - 2026. 07. : 상반기 집행분 점검
 - 2027. 01. : 하반기 집행분 점검
 - 2027. 0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374명 지원 / 166,180,000원 (월7만 지원)
2024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663명 지원 / 266,300,000원 (월10만 지원)
2025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082명 지원 / 229,020,000원 (월11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7,240	166,180	-	11,060	
2024	282,000	266,300	-	15,700	
2025	303,600	229,020	-	74,5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택시 사업구역외 영업등 위법행위 신고 1건당 10만원 포상		
사업목적	택시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9조(신고포상금 제도) ① 시장·군수는 주민 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지급기준·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전년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군의 전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00	3,00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	3,000	3,000				3,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 3,000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의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위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 예산증감 사유

- 증감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1건 지급(2,100,000원)
202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0건 지급(2,000,000원)
202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3건 지급(2,3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2,100	-	900	
2024	3,000	2,000	-	1,000	
2025	3,000	2,300	-	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관내 택시 운행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TIMs) 운영		
사업목적	택시의 운행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지원 및 데이터 활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 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 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639	7,493	7,493	0	0	0	8,114	62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639	7,493	7,493				8,114	62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114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치단체 부담금)	= 8,114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택시 면허 대수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
- 택시 산업 발전, 종사자 근무 여건 및 운수회사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실시간 택시 영업정보 및 운행데이터 분석, 앱 미터 검정 기능 수행) 활용으로 택시 운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택시 정책 수립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 인건비 등 관리비 상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2026년 예산편성 협조 요청(경기도 택시교통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6. 2. : 부담금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8,284,000원)
2024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6,639,000원)
2025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자치단체 부담금) 집행(7,493,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284	8,284	-	-	
2024	6,639	6,639	-	-	
2025	7,493	7,493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26개 마을
사업규모	통진읍 도사1리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26개 마을		
사업목적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35조의2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0	50,000	40,000	0	0	10,000	40,000	-10,000	
국비	20,000	25,000	20,000			5,000	20,000	-5,000	
도비		0						0	
시비	20,000	25,000	20,000			5,000	20,0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지원 ; 10,000원 (마을별 구간 평균요금)*4,000회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거주 시민들의 교통편의증진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축소하여 가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국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 ~ 2026. 12. : 사업집행 및 분기별 운행내역 보고
 - 2027.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6개 마을 1,848회 이용 지원
2024	· 26개 마을 3,580회 이용 지원
2025	· 26개 마을 3,387회 이용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	27,331	-	12,669	
2024	40,000	39,211	-	789	
2025	50,000	37,507	-	12,49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노후택시 52대		
사업목적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000	80,000	0	0	80,000	0	52,000	-28,000	
국비		0						0	
도비	13,000	24,000			24,000		15,600	-8,400	
시비	13,000	56,000			56,000		36,400	-19,6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2,000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 1,000,000원*52대	= 52,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택시의 대차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사업자의 재정부담완화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도모 등

□ 예산증감 사유

- 노후택시 교체사업비 감액되어 내시 (80대 → 52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6. 10. : 사업신청 공고
 - 2026. 11. : 보조사업 신청
 - 2026. 12. : 보조사업 심사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 미실시
2024	· 노후택시 교체 26대 지원 (법인택시 18대 / 개인택시 8대)
2025	· 노후택시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 공고 완료 (지원예정 : 법인택시 30대 / 개인택시 5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6,000	26,000	-	0	
2025	80,000	-	-	8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		
사업목적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운수업계에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의 안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9,000,000	11,800,000	10,000,000	0	0	1,800,000	10,000,000	0	
시비	9,000,000	11,800,000	10,000,000			1,800,000	10,000,000	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0,000,000	10,000,000	-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경유) : 2,473.3L * 266.58원 * 12개월	7,911,989	7,911,989		
		· 택시(LPG) : 362.3176L * 170.4원 * 12개월	740,867	740,867		
		· 버스(경유) : 138.008L * 293.23원 * 12개월	485,617	485,617		
		· 버스(CNG) : 1,099.447m³ * 65.3원 * 12개월	861,527	861,527		

□ 예산요구 사유

- 물류 및 여객의 안정적인 수송 및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유류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 필요 ('01년부터 시행)
-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과 천연가스(CNG)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예산과 동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8,048,461천원 지급
2024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8,258,874천원 지급
2025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9,131,753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8,700,000	8,700,000	-	8,048,461	8,048,461	-	651,539	651,539	-	
2024	9,000,000	9,000,000	-	8,258,874	8,258,874	-	741,126	741,126	-	
2025	11,800,000	11,800,000	-	9,131,753	9,131,753	-	2,668,247	2,668,247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행정6급 윤은희 행정8급 이호중	전화	2456 5552 5918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건설도로과
요 구 액	32,179,01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80,560	583,010	637,010	-54,000	603,010	20,000	
1 재산임대수입/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465,000	383,000	383,000		383,000	0	
2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48,000	50,000	50,000		50,000	0	
3 사용료수입/공유수면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165,000	150,000	204,000	-54,000	170,000	20,000	허가 건수에 따라 예산 반영
4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560	10	10		10	0	
임시적세외수입	7,059,000	4,549,000	4,549,000		26,008,000	21,459,000	
1 자치단체간부담금/자치단체간 부담금 ◎인천거점도~약암리간 광역 도로 개설사업	7,059,000	4,549,000	4,549,000		26,008,000	21,459,000	인천시 교부금 반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9,000	85,000	86,000	-1,000	93,000	8,000	
1 변상금/변상금 ◎변상금	55,000	55,000	73,000	-18,000	73,000	18,000	부과실적에 따라 예산 반영
2 과태료/기타과태료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14,000	30,000	13,000	17,000	20,000	-10,000	부과실적에 따라 예산 반영

인천거침도~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사업기간		2017. 1. ~ 2026. 12.	사업위치	인천 서구 거침도 ~ 대곶면 약암리 일원	
사업규모		L=6.4km, B=20.0m(4차로)			
사업목적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 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59,000	4,549,000	4,549,000	0	0	0	26,008,000	21,459,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59,000	4,549,000	4,549,000				26,008,000	21,459,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8,000	
인천거침도~ 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6.4km, B=20m(4차로)	= 26,008,000	

□ 예산요구 사유

-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비 편성(인천시 교부금)

□ 예산증감 사유

- 잔여필지 보상비 측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반영 및 광역도로 지정(6.4km, 4차로)
 - 2017. 10. : 사업시행 업무 협약 (김포시↔인천시)
 - 2018.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5. : 기본 설계 완료
 - 2020. 3. : 도로구역 변경(안) 주민공람
 - 2021. 7. : 시도23호선 노선(변경) 지정 고시
 - 2021. 10. : 공사 착공(인천시, 전구간 일괄 발주)
 - 2022. 10. : 시도23호선 도로구역(변경) 결정
 - 2023. 12.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 2024. ~ : 보상 협의 개시 및 보상 추진 중 [보상률 : 50%]
 - 2026.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61,066,000	35,058,000	26,008,000	26,008,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61,066,000	35,058,000	26,008,000	26,008,000			
	공사비	0		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김포시 구간 보상 외 모든 사업추진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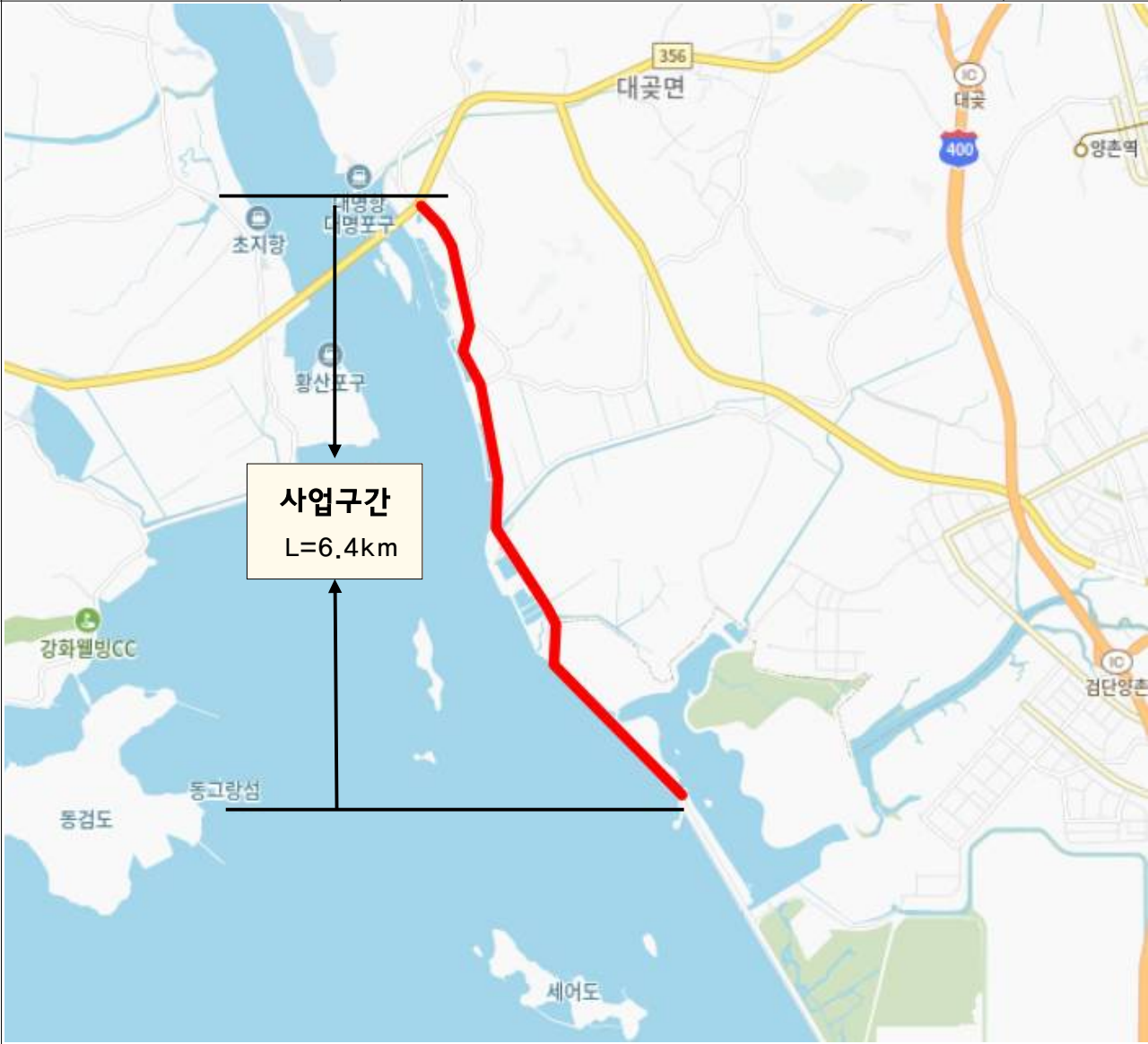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토지보상 계획 공고
2024	- 토지보상 협의 개시
2025	- 토지보상 추진 [보상률 : 5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675,160	2,832,904	15,842,256	-	
2024	22,901,256	15,753,436	7,147,820	-	
2025	11,696,820	8,395,830	3,300,990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4km, B=2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26,008,000
부기명 (세부사업)	인천거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인천 서구 ~ 대곶면 약암리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7.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3km, B=20m(4차로), 총사업비 : 49,475백만원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 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065,000	3,000,000	1,000,000	0	0	2,000,000	6,800,000	3,8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065,000	3,000,000	1,000,000			2,000,000	6,800,000	3,8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토지 75필지, 지장물 100건(30억원) . 공사비 : L=3.3km, B=20m(4차로) ※ 총공사비 206억중 공사 기성, 관급자재 29억원 요구	= 5,900,000	
	401-02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 L=3.3km, B=20m(4차로)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금 5억원 요구	= 500,000	
	401-03 시설부대비	. 예정지적좌표측량도 작성(2.5억원) - LX ※ 점당 8,000원 × 3125점(사업구간) = 2.5억원 . 경계복원측량(1.5억원) - LX ※ 필지당 500,000원 × 300필지(사업구간) = 1.5억원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7년 제2순환 고속국도 하성IC 연계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필요
- 2026년 상반기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편성
- 2026년 상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비 편성
- 2026년 공사 전 LX에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위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상반기 보상,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 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4. : 토지 분할 및 보상 착수
 - 2022. 1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5. 12. : 공사착공
 - 2027.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49,475,000	26,235,000	14,800,000	6,800,000	8,000,000	8,440,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24,155,000	21,155,000	3,000,000	3,000,000			
	공사비	22,100,000	3,260,000	10,900,000	2,900,000	8,000,000	7,940,000	
	감리비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부대비	420,000	20,000	400,000	4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40%)
2024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80%)
202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2차 보상 검토 - 조달청 공사 발주 의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29,130	9,111,870	2,217,260		
2024	13,282,260	8,677,845	4,604,415		
2025	7,604,415	501,148	7,103,26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3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6,8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7.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일원
사업규모		L=1.3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 제1항(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00,000	4,500,000	4,500,000	0	0	0	3,600,000	-900,000	
국비	1,280,000	400,000	400,000				1,400,000	1,000,000	
도비		0						0	
시비	420,000	4,100,000	4,100,000				2,200,000	-1,9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00	
애기봉~태산패 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1.3km, B=12m · 보상비 : L=1.3km, B=12m	= 1,000,000 = 2,100,0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1.3km, B=12m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및 감리 소요 예산 편성
- 잔여필지 보상을 위한 잔여 보상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공사 착공을 위한 소요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5. :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
- 2019. 10. : 2019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통과
- 2020. 6. :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10. ~ 2022. 8. : 도로설계 관련 관계기관 협의
- 2023. 11. 보완설계 (군 협의 결과에 따른 시점부 노선 변경)
- 2024. 5. :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
- 2024. 8.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 지적불일치에 따른 면적 변경
- 2024. 12. ~ : 보상 착수·추진 [보상률 : 40%]
- 2026. 하반기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8,743,000	9,875,000	4,600,000	3,600,000	1,000,000	4,268,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8,000,000	5,900,000	2,100,000	2,100,000			
	공사비	9,043,000	3,160,000	2,000,000	1,000,000	1,000,000	3,883,000	
	감리비	885,000		500,000	500,000		385,000	
	부대비	15,000	15,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2024	-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변경) 공고, 보상 착수
2025	- 손실보상 협의 추진 [보상률 : 4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7,212	-	1,157,212	-	
2024	3,217,212	2,223,084	994,128	-	
2025	5,494,128	1,449,884	4,044,244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3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3,6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애기봉 ~ 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고정~서암간 도로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07. ~ 2026. 12.	사업위치	통진읍 고정리 ~ 서암리 일원
사업규모	도로확포장 L=1.5km, B=12m		
사업목적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40,000	4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	4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고정~서암간 (통진중로3-6 호선) 도로확포장사업	401-01 시설비	· 실시계획인가 용역 1식 = 20,000천원 · 측량비 1식(분할 측량, 이지목 측량, 현황 측량) = 20,000천원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이행 요구(공사완료공고 등)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및 측량비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7.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8.1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0. 3. : 실시계획인가 및 용지보상 시행
 - 2018.10. ~ 2021. 3. : 공사추진
 - 2026. 1. :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6. 상반기 : 관계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6. 하반기 : 공사완료 공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5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40,000
부기명 (세부사업)	고정~서암간(통진 중로3-6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위치	통진읍 고정리 ~ 서암리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도로구간 편입용지, 도로사용료		
사업목적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공유재산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70,000	270,000	270,000	0	0	0	150,000	-1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70,000	270,000	270,000				150,000	-120,000	
기타		0						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401-01 시설비	. 소송 확정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 . 도로 편입용지 보상 및 관련 수수료	= 150,000	

- 법정도로 등 관련 도로사용료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
- 기시행된 공익사업 중 보상금 미지급한 토지의 손실보상금 지급

- 매년 소송의 패소 증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도로사용료 지급 소요 지속 발생
- 예산여건 고려하여 매년 지급 중인 확정된 도로임차료 우선 편성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 이득금 확정분 순차적으로 반영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6. : 상반기 도로사용료 지급
 - 2026. 12. : 하반기 도로사용료 지급
 - 2026. 연중 :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미지급용지 신청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검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도로사용료 지급 391,911천원, 수수료 4,101천원
2024	- 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도로사용료 지급 256,544천원, 수수료 6,376천원
2025	- 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도로사용료 지급 41,21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0	396,012	-	3,988	
2024	270,000	262,920	-	7,080	
2025	270,000	41,215	-	228,7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보상팀장 유종수	담당자	행정6급 조나영	전화	2433
-----	-------	------------	-----	----------	----	------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연 4회		
사업목적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및 관내 공공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단계별 자문·심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8조제1항 제16조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8조(수당 등) 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20	3,400	3,400	0	0	0	3,000	-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20	3,400	3,400				3,000	-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 : 100,000원*5명*2회	= 1,000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 100,000원*10명*2회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따른 자문·심의 수당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 수당

□ 예산증감 사유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횟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 1)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회 개최(연중)
 - 2)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심의 件 접수에 따른 회의 개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1회)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4회)
2024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7회)
2025	·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20	1,440	-	400	
2024	2,320	2,320	-	-	
2025	3,400	1,200	-	2,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순묵	담당자	행정7급 김은화	전화	2770
-----	-------	------------	-----	----------	----	------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8. 12.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70,250	2,816,250	2,816,250	0	0	0	3,342,500	526,250	
국비	2,681,000	2,253,000	2,253,000				2,674,000	421,000	
도비		0						0	
시비	389,250	563,250	563,250				668,500	105,2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42,500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3.5km, B=12m	= 2,692,5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3.5km, B=12m(2차로)	= 6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계속비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필요 사업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로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8.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1구간)
 - 2020. 8. : '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국비지원사업)
 - 2022. 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1구간)
 - 2023. 1. : 실시계획인가
 - 2023. 2. : 토지분할 측량 실시
 - 2023. 4. :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2024. 6. : 실시계획(변경)인가
 - 2024. 10. : 보상 착수
 - 2025. 8. :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
 - 2025. 하반기 : 공사 착공 (준공: 2028년말)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9,912,500	22,586,500	3,342,500	3,342,500	0	13,983,500	
공 정 별	설계비	1,300,000	1,300,000	0			-	
	보상비	14,816,250	14,816,250	0			-	
	공사비	20,796,250	5,975,250	2,692,500	2,692,500		12,128,500	
	감리비	2,950,000	450,000	650,000	650,000		1,850,000	
	부대비	50,000	45,000	0			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토지분할 측량,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2024	-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 토지보상 추진
2025	- 토지보상 추진, 공사 및 감리 용역 발주(조달청 의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09,059	630,620	14,978,439	-	
2024	18,048,689	12,349,468	5,699,221	-	
2025	8,515,471	2,904,091	5,611,380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3,342,50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로 136 일원	
사업규모		L=0.4km, B=10m, 총사업비 : 2,640백만원				
사업목적		인구 및 차량증가, 모담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좁은 마을안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0,000	0	0	200,000	0	50,000	-1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			200,000		50,000	-1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 호선) 개설사업	401-03 시설부대비	· 경계복원 측량(14필지)		
		※ 필지당 약1,200,000원 x 14필지	=	17,000
		· 예정지적좌표측량		
		※ 점당 95,000원 x 200점(사업구간)	=	19,000
		· 확정측량(4,026㎡)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 관습로 확장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한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 필요
- 26년 2월 공사 준공 후 사업 구역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련부서(토지정보과) 협의 결과 해당 사업 부지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및 김포한강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측량(확정 측량 등) 실시 요청으로 측량비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0. 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 2025. 5. :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 2025. 12. : 공사 착공(관습로 확장)
 - 2026. 3. : 공사 준공(관습로 확장)
 - 2026. 3. : 확정측량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640,000	2,590,000	50,000	50,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110,000	110,000	0				
	보상비	1,200,000	1,200,000	0				
	공사비	1,270,000	1,270,000	0				
	감리비	0	0	0				
	부대비	60,000	10,000	50,000	5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2024	- 공사준공
2025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착공(관습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6,349	107,253	2,239,095	-	
2024	2,239,095	734,240	1,504,854	-	
2025	1,704,854	1,203,854	501,000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4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운양로 136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0. ~ 2038. 12.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동(걸포IC)~고양시 법곶동(이산포IC)
사업규모	L=1.84km, B=28.5m(왕복 6차로)		
사업목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통량 분산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통행료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 제1항(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900,000	9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900,000	9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0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207-02 전산개발비	· 일산대교 통행료 연계 시스템 구축비	= 150,000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 : 35천대*1,200원*242일(평일)*50% (지원율)*60%(시민50%+증가분10%)*(1/4)	= 7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상반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김포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통행료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패소
 - 2025. 10. : 입법 예고
 - 202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6. 上. :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통행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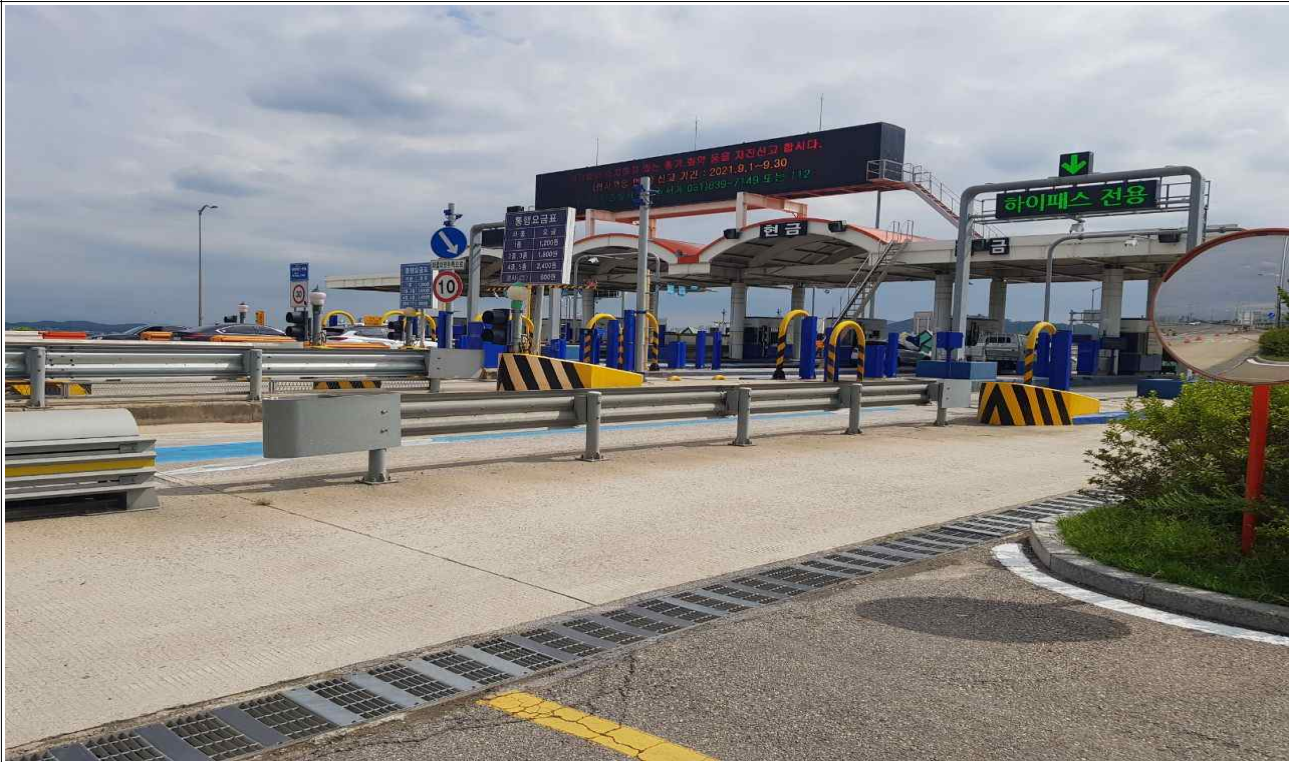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2024				-	
2025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84km, B=28.5m(왕복 6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9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동(걸포IC) ~ 고양시 법곶동(이산포IC)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도유진	전화	2437
-----	-------	-------------	-----	----------	----	------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측량 약 45회, 장비임차, 물품[홍보물(단속, 계도, 안내) 등] 제작·구입 등 ※ 국유지 7,914필지(18,904,895㎡), 공유지: 사유지 12,439필지(7,911,030㎡), 도유지 4,641필지(2,865,708㎡)		
사업목적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을 보전·관리업무의 체계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7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000	43,000	43,000	0	0	0	4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000	43,000	43,000				4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000	
국·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국·공유재산 측량비 등 관리 비용 - 측량 수수료: 1,000,000원 * 35회 = 35,000,000원 - 국·공유재산 유지 관리 장비 임차: 5,000,000원 · 국·공유재산 관리 물품 제작 및 구입 - 홍보물(무단점유 해소 현수막 및 스티커) 제작: 2,000,000원 - 현장 관리·점검 안전용품 및 물품구입: 1,000,000원	= 43,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공유재산을 보호·보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실현을 위함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유지·보수와 민원 대응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임차 필요
- 유희재산 및 무단점유재산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경계, 현황)측량 등 비용 발생
-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한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필요

※ 국유지 7,328필지(18,605,302㎡), 공유지: 시유지 12,804필지(9,133,923㎡), 도유지 2,962필지(1,719,148㎡)

□ 예산증감 사유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사항 해소를 위한 측량 비용 현실화
- 무단점유 해소 필지 관리·점검을 위한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필요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유지·보수와 민원 대응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임차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확인을 위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제작 및 장비 임차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30건), 소유권 이전등기(140필지)
2024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12건)
2025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의 민원으로 인한 지적(경계 및 현황)측량 실시 및 현수막 제작(2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100	48,703	-	14,397	
2024	28,000	22,431	-	5,569	
2025	43,000	20,693	-	22,3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순묵	담당자	시설8급 박상현 시설9급 남창현	전화	2427 2428
-----	-------	------------	-----	----------------------	----	--------------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사업규모		저수지 6개소, 양수장 29개, 관정 10개 등			
사업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시설 유지관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3,420	423,049	409,049	0	0	14,000	292,442	-130,60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3,420	423,049	409,049			14,000	292,442	-130,60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2,442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저수지 유지관리 인부임(환경정화 및 불법남시 단속) - 기본급 : 11,730원*2명*7시간*8월*18일=23,648,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2명*5.6시간*45일=5,912,000원 - 4대보험료 : 14,779,800원*2명*14%=4,139,000원 = 33,699		
		· 쇄암대명 배수갑문 유지관리 인부임(배수갑문의 개폐 및 시설 유지관리) - 기본급 : 11,730원*2명*8시간*5월*18일=16,892,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2명*6.4시간*30일=4,505,000원 - 4대보험료 : 10,697,760원*2명*14%=2,996,000원 = 24,393		
		· 포내·약암 양수장유지관리 인부임 - 기본급 : 11,730원*4명*3시간*6월*31일=26,182,000원 - 유급휴일수당 : 11,730원*4명*3시간*30일=4,223,000원 - 4대보험료 : 7,601,040원*4명*14%=4,257,000원 = 34,662		
	201-01 사무관리비	· 포내양수장 보안관리 : 150,000원*12월=1,800,000원 · 약암양수장 보안관리 : 150,000원*12월=1,800,000원 · 저수지 유지관리 장비임차 : 4,000,000원*6개소=24,000,000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2,184,000원*2개소=4,368,000원 = 31,968		
	201-02 공공운영비	· 농업기반시설 공공요금 : 10,965,000원*8개월=87,720,000원 = 87,720		
	401-01 시설비	· 양수장.저수지.관정 유지관리 : 80,000,000원*1식 = 8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유지관리비(공공운영비, 보수 등) 사용

□ 예산증감 사유

- 생활임금 및 보험료(▲3%)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증가
- 전기요금(▲10%) 인상 및 및 양수장 사용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 증가
- 저수지 및 양수장 유지관리(보수 등)를 위한 시설비 편성(총 시설물 46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저수지, 양수장 및 관정 전기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포내·약암양수장 보안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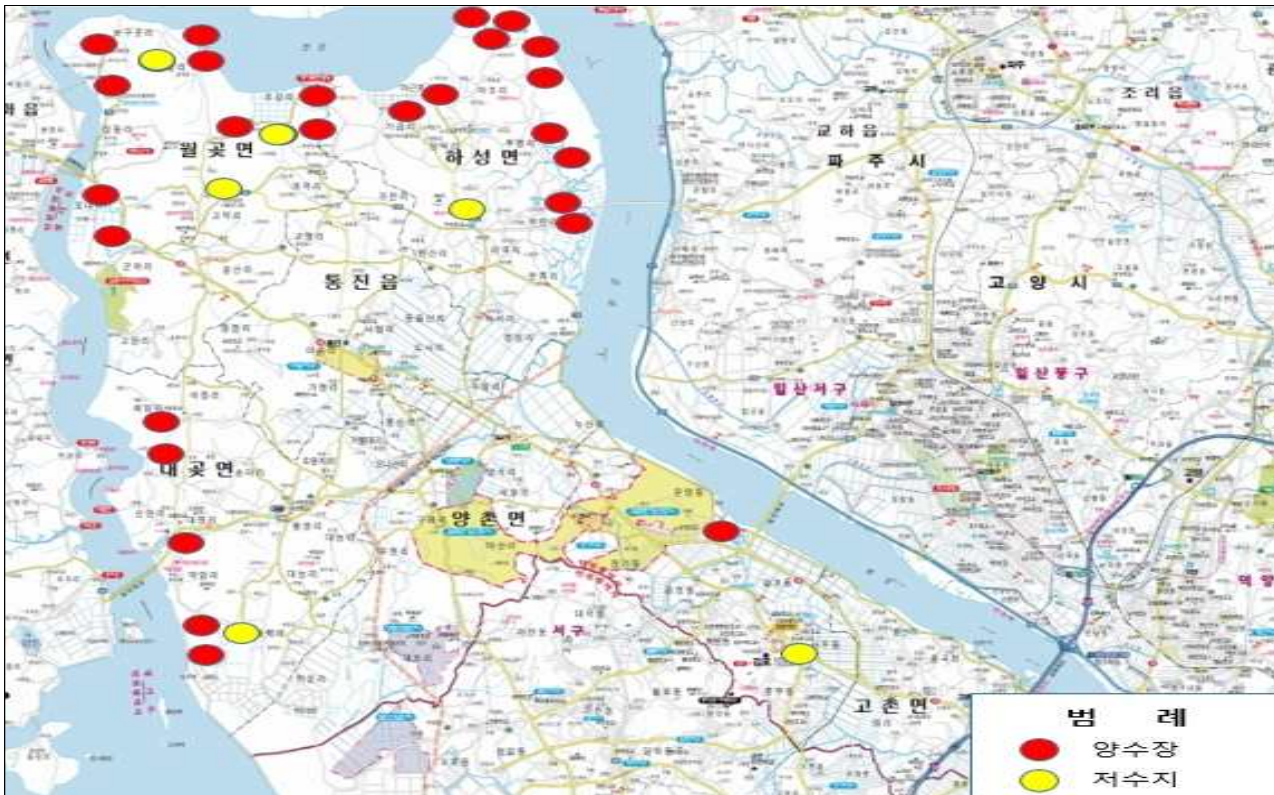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송마양수장 유지보수(수중펌프, 전기공사), 포내양수장 유지보수(전기공사), 시암리 수문 교체공사, 곽포동 4-34번지 일원 농수로 준설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공운영비 집행 등
2024	- 양수장 유지보수(시암1, 약암, 조강, 용강, 하무, 대벽 등), 수문 및 전기공사(약암리, 포내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공운영비 집행 등
2025	- 조강저수지 데크 정비공사, 보수공사(대벽저류지 뢰스, 고막양수장 펌프 및 도장, 포내보 전도수문, 포내양수장 케이블, 하무양수장 펌프 배관, 약암양수장 진공펌프 및 콘덴서, 장기동 배수로 수문 제어장치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공운영비 집행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3,392	255,983	-	7,409	
2024	243,420	234,663	-	8,757	
2025	423,049	380,627	-	42,42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정비	본예산 요구액 (천원)	292,442
부기명 (세부사업)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위치	관내 저수지 및 양수장		
위치도					
현장사진					
	양수장		저수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9급 이아름	전화	2459
-----	-------	------------	-----	----------	----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관내 비법정도로
사업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국가배상 등 배상금 지급		
사업목적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소송 판결 및 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해당조례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35,000	1,736,555	1,532,625	0	0	203,930	1,733,900	-2,6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35,000	1,736,555	1,532,625			203,930	1,733,900	-2,6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33,900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 - 1,500,000원*20일 = 30,000,000원 · 합동설계 운영비 - 특근매식비 : 9,000원*20명*5일 = 900,000원	= 30,000 = 900	
	305-01 배상금등	· 국가배상 등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1건 등) : 3,000,000원 - 인천배심2023년 국배 9호 : 563,350원*1건	= 3,000	
	401-01 시설비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공사 : 1,200,000,000원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 250,000,000원*2구역 = 500,000,000원 - 토공, 관로공, 부대공 등	= 1,200,000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와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 설계·시공 교육 등 합동설계를 통한 감독공무원의 경험 및 업무능력 향상 기대
- 「국가배상법」제 5조에 따라, 국가배상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통한 신속한 행정 처리 기대

□ 예산증감 사유

- 농로 및 마을안길 노후화 및 폭우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정비 대상지 증가
 - '25.08.26. 기준 작년대비 국민신문고 민원(165건→308건) 약 140건 증가하였으며, 민원 증가로 인해 민원 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신속·정확한 민원 해소를 위한 연간단가 2구역 분할 시공 필요
 -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민원 등 증가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비임차료 증액 필요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반사경 설치 및 제거 등 신규 공종 추가
- 2026년 재료비, 노무비 등의 단가·대가 상승에 따른 공사·용역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설계
 - 2026. 2. : 국가배상 등 배상금 지급
 - 2026. 1.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16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9건
2024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53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5건
2025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진행 중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건 진행 중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 작업 11건 진행 중 - '24년 과속방지 시설 심의위원회 가결 안건 과속방지턱 28개소 시공 완료 및 '25년 1회차 가결안 시공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80,000	1,328,010	-	51,990	
2024	1,335,000	1,100,532	207,237	27,231	
2025	1,943,792	1,464,219	-	479,57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 보수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33,900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비법정도로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윤석호 시설8급 오승연	전화	2431 2429
-----	-------	------------	-----	----------------------	----	--------------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교량)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제3종 시설물(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제3종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4,000	330,000	330,000	0	0	0	50,000	-2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4,000	330,000	330,000				50,000	-2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 25,000,000원*2회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추진(반기별 1회 이상) 및 건설도로과-13308호(2025.7.25.)와 관련 실태조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보수가 필요한 풍년교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나,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 정기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 2026. 1. ~ 12. : 제3종시설물(교량) 실태조사

- 2026. 3. ~ 5.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

- 2026. 9. ~ 11.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3종시설물(교량)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구)황금교 철거공사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4	· 제3종시설물(교량)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오니산교, 간척2교)
2025	· 제3종시설물(교량)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포내1교, 포내2교) · 제3종시설물(교량) 난간 보수 · 제3종시설물(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풍년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0,000	140,516	89,484	-	
2024	243,484	166,139	28,115	49,230	
2025	358,115	328,747	-	29,368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제3종 시설물(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안전점검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윤석호	전화	2431
-----	-------	------------	-----	----------	----	------

마을회관 관리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마을회관 보수 13개소		
사업목적	마을회관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 해소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리(이하 "통·리"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9,000	171,024	134,558	0	36,466	0	135,844	-35,1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9,000	171,024	134,558		36,466		135,844	-35,1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844	
마을회관 관리	401-01 시설비	· 성동2리 마을회관 보수(옥상 및 외부방수 공사) · 마조1리 마을회관 보수(창호공사)	= 22,000 = 1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 율생2리 마을회관 보수(창호 교체공사) · 후평2리 마을회관 보수(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 석탄5리 마을회관 보수(도배·장판 교체공사, 화장실공사) · 마조2리 마을회관 보수(옥상방수공사) · 조강2리 마을회관 보수(옥상방수, 배수시설 교체, 도배·천막 교체공사) · 마곡3리 마을회관 보수(창호 교체공사) · 풍무1통 마을회관 보수(외부방수, 도배장판 교체, 마당배수 및 포장공사) · 송마1리 마을회관 보수(옥상방수 및 옥상난간 교체공사)	= 5,359 = 9,460 = 20,000 = 13,000 = 9,500 = 13,310 = 20,000 = 13,215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마을회관 지원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신청지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마을회관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내부 누수, 화장실 및 난방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물의 기능저하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관내 마을회관 185개소 중 136(74%)개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매년 시설보수, 재건축 및 증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의 시급성, 수혜 인구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사업대상지가 감소('25년 14개소 → '26년 10개소)에 따른 비용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반영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2025.11. 반영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2025. 8. : 2026년도 마을회관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
 - 2026. 1. : 공사착공
 - 2026. 12.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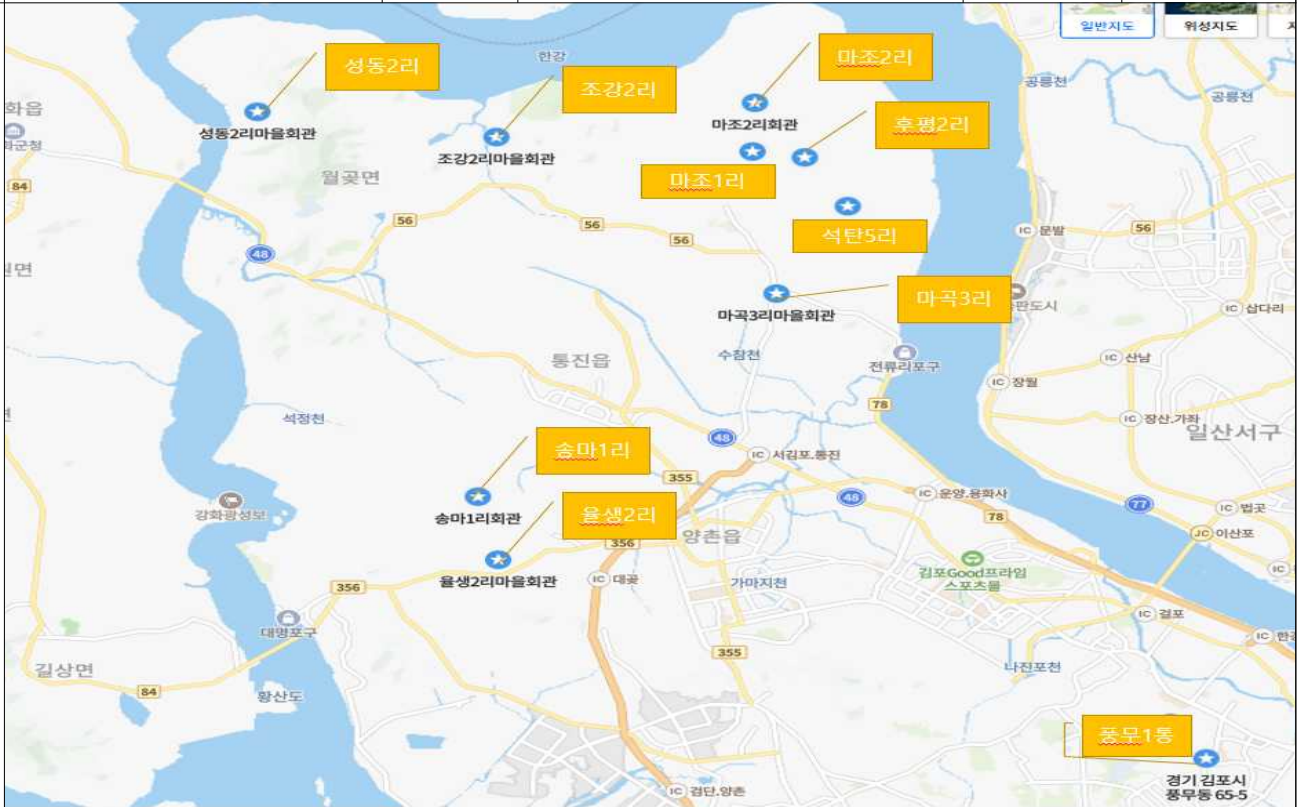
2023	· 증축공사 : 대벽1리 마을회관 · 보수공사 : 구래5리 마을회관 외 6개소
2024	· 보수공사 : 도사2리 마을회관 외 8개소
2025	· 보수공사 - 석탄1리 외 9개소(준공완료) - 누산5리 외 3개소(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6,000	353,782	-	808	
2024	109,000	99,814	-	9,186	
2025	171,024	153,217	-	17,80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마을회관 보수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5,844
부기명 (세부사업)	마을회관 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9급 한현규	전화	2447
-----	-------	------------	-----	----------	----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대곶면 신안리 89-2
사업규모	피복석·사석 쌓기 등 1식(L=150m)		
사업목적	쇄암방조제 유실구간 보수로 제방기능 유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방조제 관리법」 및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시행령제5조제2호	
		- 「방조제 관리법」 제6조(방조제의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게 방조제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관리대행자) 2.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400,00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0	4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2,670,000원 * 150M - 피복석·사석 쌓기, 철책 이설 등 = 400,000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여름철 폭우 및 조류에 의한 방조제 법면 유실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군부대 철책 전도 및 인근 농지의 염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예산증감 사유

- 자연현상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방조제 법면이 유실되어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11.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재난기금사용)
- 2026. 1. ~ 2. : 기관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6. 3. ~ 6. :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50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쇄암방조제 보수공사	사업위치	대곶면 신안리 89-2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9급 이아름	전화	2459
-----	-------	------------	-----	----------	----	------

포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8. 12.	사업위치	월곶면 포내리 252-11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로 5km(벤치플룸관, 흡관 등) 설치 및 정비			
사업목적		농업용수 확보 및 관개수로 개선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250,000	250,000	
국비		0					200,000	200,000	
도비		0						0	
시비		0					5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포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1식	= 130,000	
		. 배수로 정비 5km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 배수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관개 효율 증가 및 배수 시스템 구축으로 홍수 시 원활한 배출 및 가뭄 시 안정적인 수원 확보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국비·시비(8:2) 매칭 사업으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
 - 2025.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6. 1. ~ 4.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26. 5. : 행정절차 이행
 - 2026. 6. ~ 202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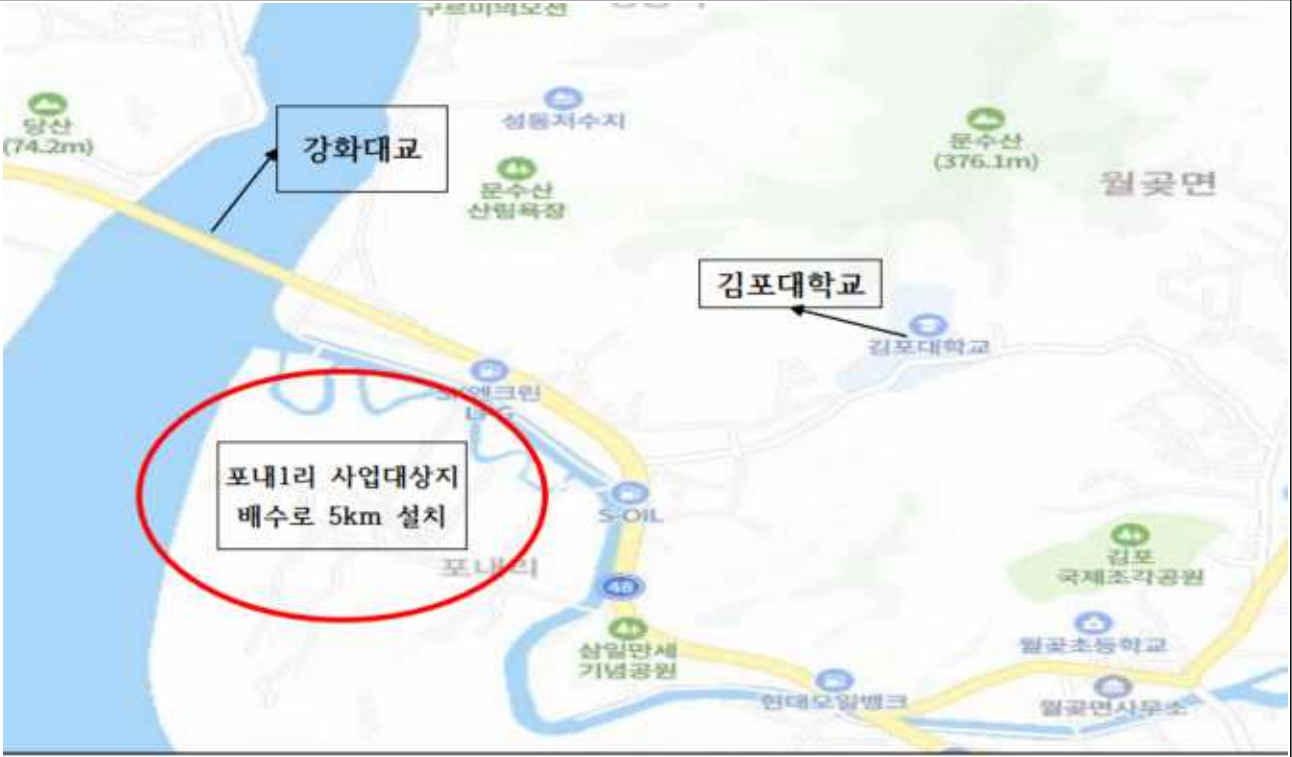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350,000	0	250,000	250,000	0	2,100,000	
공 정 별	설계비	130,000		130,000	130,000			
	보상비	0		0				
	공사비	2,220,000		120,000	120,000		2,1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배수로 정비 5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0,000
부기명 (세부사업)	포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포내리 252-11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윤석호	전화	2431
-----	-------	------------	-----	----------	----	------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 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604번지 외 8개소 일원
사업규모	설계비 1식, 플룸관 설치(L=1,495m), 식생블럭(L=770m) 설치 및 콘크리트 재포장(L=800m)		
사업목적	배수로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 및 통수단면적 증대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하고,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을 통해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1,502,000	1,502,000	
국비		0					1,201,000	1,201,000	
도비		0						0	
시비		0					301,000	30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2,000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	민북지역 마을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 137,000	
		- 설계비 1식	= 172,000	
		가금리 60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60,000	
		- 식생블럭 설치 L=220m	= 189,000	
		석탄리 75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102,000	
		- 플룸관(2,000*1,500) 설치 L=130m	= 20,000	
		후평리 682-7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40,000	
		- 플룸관(2,000*1,500) 설치 L=410m	= 429,000	
		후평리 637-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253,000	
		- 플룸관(2,000*1,500) 설치 L=220m	= 100,000	
		후평리 466-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플룸관(400*400) 설치 L=100m		
		양택리 448-2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플룸관(2,000*1,500) 설치 L=85m		
		전류리 11-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식생블럭 설치 L=550m		
		시암리 516-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 플룸관(2,000*1,500) 설치 L=550m		
		마조리 535번지 일원 마을도로 재포장		
		- 콘크리트 재포장 L=800m		

□ 예산요구 사유

- 지속적인 개발과 성토, 폭우로 인해 5mm 이상의 우천 시 상습 침수 및 배수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를 확보하고, 민원 해소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
- 폭우 및 폭설로 인해 마을안길 심각하게 파손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큰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마을의 특성상 오토바이 및 도보 등의 이동에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빠른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신속한 재포장을 통해 도로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국비·시비(8:2) 매칭 사업으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26. 3. ~ 2026. 4. : 행정절차 이행
 - 2026. 4. ~ 2026.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하성면	사업규모	플룸관(1,495m),식생블럭(770m) 설치, 콘크리트 재포장(80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1,502,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성면 민북지역 마을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일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성면	산업개발팀장 장규선	담당자	시설8급 이주형	전화	3483
-----	-----	------------	-----	----------	----	------

사업기간	2002. 3. ~ 2026. 6.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 하성면 양택리
사업규모	L=6.9km, B=21.0m(4차로)(하사교 구간 : L=340m, B=19.5m)		
사업목적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 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74,500,000	73,242,266	1,257,734	0	734,379	523,355			
국 비									
도 비									
시 비	74,500,000	73,242,266	1,257,734		734,379	523,355	-	-	-
기 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5.11.	2009.10.	-	-	-	-	-	-	-	-

- 2018. 4. : 3구간(누산~마곡, L=3.9km) 공사 타절준공(L=340m 미시행)
- 2021. 6. : 공사 미시행구간 보완설계 용역 착수
- 2021. 12. : 공사 미시행구간 보완설계 용역 준공
- 2022. 4. : 공사(하사교일원, L=340m) 착공
- 2024. 7. : 공사 준공
- 2024. 11. : 보완 공사 (~'25.3.)
- 2025. 2. : 추가간접비 지급
- 2026. 2. : 보완 공사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74,500,000	74,50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400,000	400,000	0				
	보상비	46,967,000	46,967,000	0				
	공사비	26,895,000	26,895,000	0				
	감리비	190,000	190,000	0				
	부대비	48,000	48,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사 추진
2024	- 2024. 6월 공사 준공 - 2024. 10월 보완 공사 설계 중
2025	- 2025. 2월 추가간접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17,226	1,554,107	2,263,119		
2024	2,263,119	1,005,385	1,257,734		
2025	1,257,734	734,449	523,28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9km, B=21.0m(4차로) (하사교 구간 : L=340m, B=19.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위치	양촌읍 누산리 ~ 하성면 양택리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07. 1. ~ 2026. 12.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석탄리 일원	
사업규모		L=2.75km, B=15.0m(2차로)(후평교 구간 : L=249m(국사천 교량 40m))			
사업목적		협소한 도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 제1항(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41,970,000	40,362,811	1,607,189	0	1,002,535	604,654			
국 비	28,920,000	28,158,250	761,750		761,750				
도 비	3,952,000	3,952,000	0						
시 비	9,098,000	8,252,561	845,439		240,785	604,654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06. 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7.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09. 6. : 노선지정[김포시 공고 제2009-643호]
- 2009. 7. : 보상착수
- 2016. 5. : 노선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17. 7. ~ 2020. 6. : 1구간(마곡~석탄, 2.5km) 공사추진
- 2020. 11. : 보완설계(국사천 교량, L=249m) 착수

- 2022. 2. : 후평교구간 보상 착수
- 2023. 4. : 후평교구간 공사 착공
- 2023. 12. : 2구간 보완설계 준공
- 2024. 10. : 사업계획 변경 협의
- 2024. 12. : 후평교구간 공사 준공
- 2026. : 국비 정산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41,970,000	41,97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654,960	654,960	0				
	보상비	21,836,040	21,836,040	0				
	공사비	18,892,000	18,892,000	0				
	감리비	572,000	572,000	0				
	부대비	15,000	15,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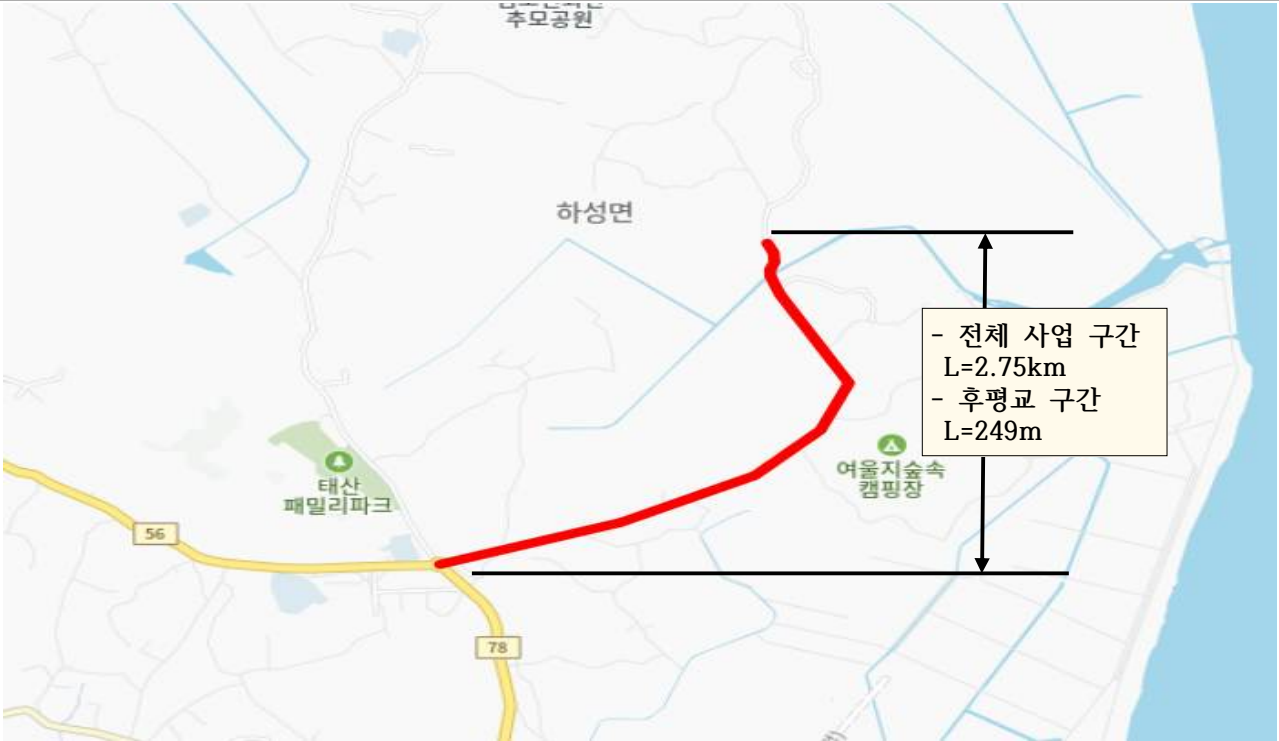
2023	· 후평교 공사 착공
2024	· 후평교 공사 준공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743,198	2,941,698	2,801,500		
2024	3,338,070	1,730,881	1,607,189		
2025	1,607,189	1,002,535	604,65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2.75km, B=15.0m(2차로) (후평교 구간 : L=249m(국사천 교량 4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마곡리 ~ 석탄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살8급 임현호	전화	2436
-----	-------	-------------	-----	----------	----	------

인천거침도~약암리간 광역도로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 ~ 2026. 12.	사업위치	인천 서구 거침도 ~ 대곶면 약암리 일원	
사업규모		L=6.4km, B=20.0m(4차로)			
사업목적		지역간 연결 도로망 확충 및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 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30,509,000	23,361,180	7,147,820	4,549,000	8,395,830	3,300,990	26,008,000	26,008,000	
국 비									
도 비	2,400,000	2,386,191	13,809		13,809	0			
시 비	7,600,000	7,600,000	0			0			
기 타 (인천시→ 김포시)	20,509,000	13,374,989	7,134,011	4,549,000	8,382,021	3,300,990	26,008,000	26,008,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8,000	
인천거침도~약 암리간 광역도로개설 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6.4km, B=20m(4차로)	= 26,008,000	

□ 예산요구 사유

○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비 편성(인천시 교부금)

□ 예산증감 사유

○ 잔여필지 보상비 측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반영 및 광역도로 지정(6.4km, 4차로)
- 2017. 10. : 사업시행 업무 협약 (김포시↔인천시)
- 2018.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9. 5. : 기본 설계 완료
- 2020. 3. : 도로구역 변경(안) 주민공람
- 2021. 7. : 시도23호선 노선(변경) 지정 고시
- 2021. 10. : 공사 착공(인천시, 전구간 일괄 발주)
- 2022. 10. : 시도23호선 도로구역(변경) 결정
- 2023. 12.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 2024. ~ : 보상 협의 개시 및 보상 추진 중 [보상률 : 50%]
- 2026.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61,066,000	35,058,000	26,008,000	26,008,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0		0				
	보상비	61,066,000	35,058,000	26,008,000	26,008,000			
	공사비	0		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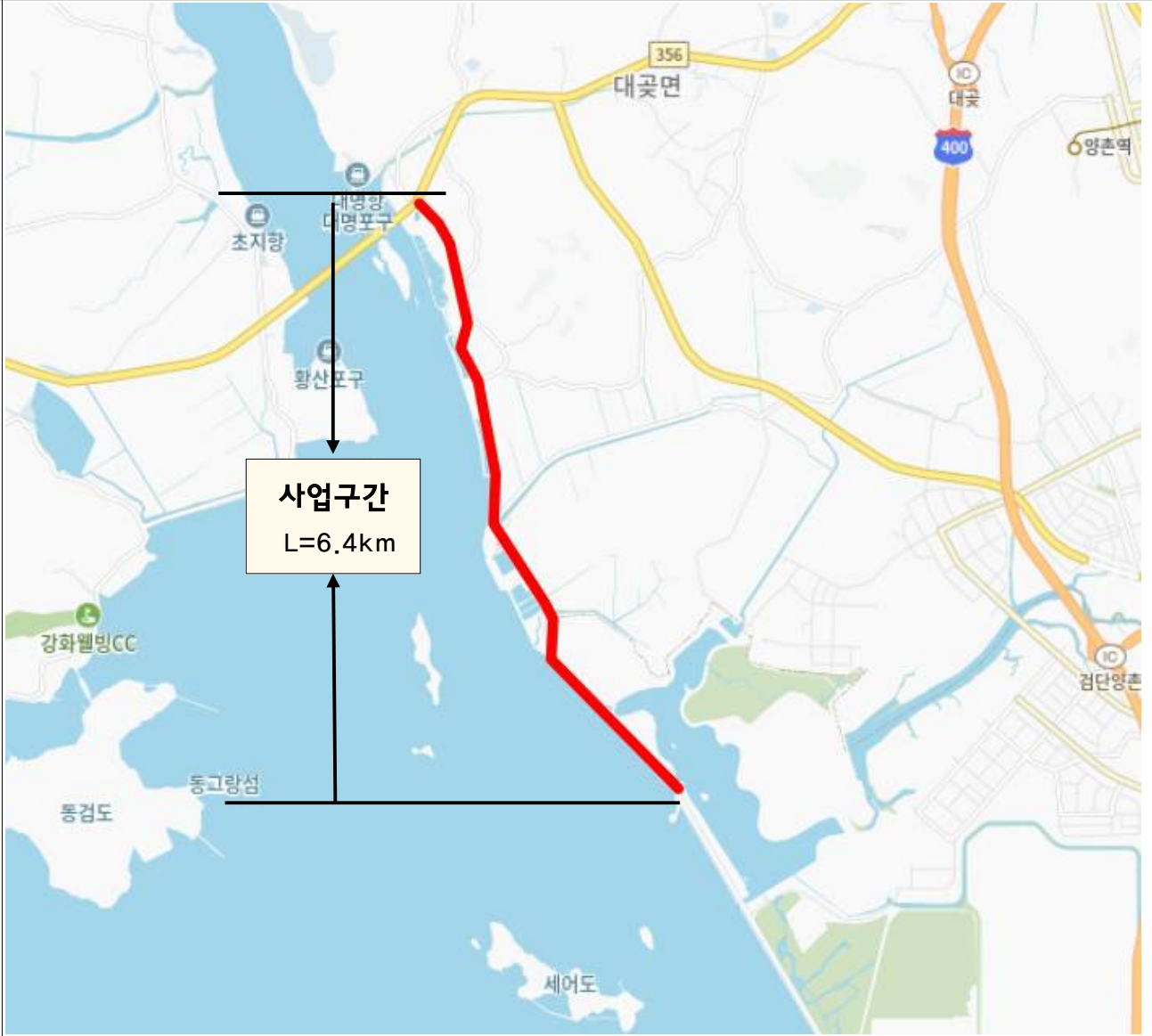
2023	- 토지보상 계획 공고
2024	- 토지보상 협의 개시
2025	- 토지보상 추진 [보상률 : 5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675,160	2,832,904	15,842,256		
2024	22,901,256	15,753,436	7,147,820		
2025	11,696,820	8,395,830	3,300,99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6.4km, B=2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26,008,000
부기명 (세부사업)	인천거점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인천 서구 ~ 대곶면 약암리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7.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3km, B=20m(4차로)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3,235,000	18,630,585	4,604,415	3,000,000	501,148	7,103,267	14,800,000	6,800,000	8,000,000
국비									
도비	1,260,000		1,260,000			1,260,000			
시비	21,975,000	18,630,585	3,344,415	3,000,000	501,148	5,843,267	14,800,000	6,800,000	8,000,0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00,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토지 75필지, 지장물 100건(30억원) · 공사비 : L=3.3km, B=20m(4차로) ※ 총공사비 206억중 공사 기성, 관급자재 29억원 요구	= 5,900,000	
	401-02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 L=3.3km, B=20m(4차로)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금 5억원 요구	= 500,000	
	401-03 시설부대비	· 예정지적좌표측량도 작성(2.5억원) - LX ※ 점당 8,000원 × 3125점(사업구간) = 2.5억원 · 경계복원측량(1.5억원) - LX ※ 필지당 500,000원 × 300필지(사업구간) = 1.5억원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7년 제2순환 고속국도 하성IC 연계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필요
- 2026년 상반기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비 편성
- 2026년 상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비 편성
- 2026년 공사 전 LX에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위하여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상반기 보상,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1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5. 12. : 공사착공
 - 2027.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산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49,475,000	26,235,000	14,800,000	6,800,000	8,000,000	8,440,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24,155,000	21,155,000	3,000,000	3,000,000			
	공사비	22,100,000	3,260,000	10,900,000	2,900,000	8,000,000	7,940,000	
	감리비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부대비	420,000	20,000	400,000	4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40%)
2024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80%)
202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2차 보상 검토 - 조달청 공사 발주 의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29,130	9,111,870	2,217,260		
2024	13,282,260	8,677,845	4,604,415		
2025	7,604,415	501,148	7,103,26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3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6,8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6. 6.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일원
사업규모	L=0.9km, B=20m(4차로)		
사업목적	교통정체가 심각한 초원신사거리~간동사거리 구간의 도로확장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물류수송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 제1항(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15,300,000	14,317,645	982,355	0	163,701	818,654			
국비									
도비									
시비	15,300,000	14,317,645	982,355	-	163,701	818,654	-	-	-
기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17.11.	2017.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8. :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 2019. 11. : 토지분할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1. 3. : 공사 착공
- 2024. 6. : 공사 준공
- 2024. 11. : 보완 공사 및 도로구역 변경 결정
- 2025. 6. : 보완 공사
- 2026. 2. : 추가간접비 지급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5,300,000	15,30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230,000	230,000	0				
	보상비	7,360,000	7,360,000	0				
	공사비	7,400,000	7,400,000	0				
	감리비	300,000	300,00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 확포장공사 중
2024	- 2024. 7월 공사 준공 - 2024. 10월 보완 설계 용역 중
2025	- 2025. 6월 보완공사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97,048	4,101,436	1,895,612		
2024	1,895,612	913,257	982,355		
2025	982,355	163,701	818,654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9km, B=20m(4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초원지-석정(간동사거리)간 도로확포장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일원 (초원신사거리~간동사거리)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6. ~ 2026. 6.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사업목적		월곶면 갈매리 인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가압의 물류비용 절감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3,300,000	22,187,990	1,112,010	-	23,793	1,088,217	-	-	-
국 비							-	-	-
도 비							-	-	-
시 비	23,300,000	22,187,990	1,112,010	-	23,793	1,088,217	-	-	-
기 타							-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7.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2017.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7.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 2020. 6.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0. 9. : 보상 착수
- 2020. 11. : 투자(재)심사 예산(총사업비) 변경
- 2021. 2. : 실시계획인가(변경) 완료
- 2021. 4. : 공사 착공

- 2023. 4.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 2024. 4. : 군하교 개설
- 2024. 6. : 공사 준공
- 2025. 10. : 회전교차로 보완설계 착수
- 2026. 3. : 회전교차로 공사 착공
- 2026. 6. : 회전교차로 공사 착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3,300,000	23,30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865,000	865,000	0				
	보상비	20,155,000	20,155,000	0				
	공사비	1,760,000	1,760,000	0				
	감리비	500,000	500,000	0				
	부대비	20,000	2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부대공사 착수(통신, 전기)
2024	- 공사 준공(2024.06.)
2025	- 회전교차로 보완 설계(2025. 1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29,130	9,111,870	2,217,260		
2024	4,826,862	3,714,852	1,112,010		
2025	1,112,010	23,793	1,088,21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95km, B=25m, 교량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군하로 158-2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7.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일원
사업규모		L=1.3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제13조
		제9조 제1항(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5,375,000	4,380,872	994,128	4,500,000	1,445,879	4,048,249	4,600,000	3,600,000	1,000,000
국 비	4,220,000	4,011,300	208,700	400,000	349,121	259,579	1,400,000	1,400,000	
도 비									
시 비	1,155,000	369,572	785,428	4,100,000	1,096,758	3,788,670	3,200,000	2,200,000	1,000,000
기 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00	
애기봉~태산패 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1.3km, B=12m · 보상비 : L=1.3km, B=12m	= 1,000,000 = 2,100,0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L=1.3km, B=12m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 및 감리 소요 예산 편성
- 잔여필지 보상을 위한 잔여 보상비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공사 착공을 위한 소요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11. (중양)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5. : 2019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
- 2019. 10. : 2019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통과
- 2020. 6. :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 10. ~ 2022. 8. : 도로설계 관련 관계기관 협의
- 2023. 11. 보완설계 (군 협의 결과에 따른 시점부 노선 변경)
- 2024. 5. :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
- 2024. 8. :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 지적불일치에 따른 면적 변경
- 2024. 12. : 보상 착수 [보상률 : 40%]
- 2026. 하반기 : 공사 착공
- 2027.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8,743,000	9,875,000	4,600,000	3,600,000	1,000,000	4,268,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8,000,000	5,900,000	2,100,000	2,100,000			
	공사비	9,043,000	3,160,000	2,000,000	1,000,000	1,000,000	3,883,000	
	감리비	885,000		500,000	500,000		385,000	
	부대비	15,000	15,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계기관 재협의(군사협의 심의의견에 따른 보완)
2024	-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변경) 공고, 보상 착수
2025	- 손실보상 협의 추진 [보상률 : 4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7,212	-	1,157,212	-	
2024	3,217,212	2,223,084	994,128	-	
2025	5,494,128	1,449,884	4,044,244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3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3,6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애기봉 ~ 태산패밀리파크간 경관도로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영사정IC 건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5. 5. ~ 2028. 12.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L=2,038m, B=8.1m)			
사업목적		영사정IC 건설을 통해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선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연결로 설치로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신곡사거리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5,390,000	1,162,904	4,227,096	0	0	4,227,096	8,000,000		8,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390,000	1,162,904	4,227,096			4,227,096	8,000,000		8,00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5. 5. : 영사정 하이패스IC 선정
- 2017. 9. : 협약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19. 6. : 영사정 하이패스IC 타당성평가 용역 완료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1. 12. : 영사정IC(무료화) 도로 연결 변경허가 승인(국토부→김포시)
- 2022. 12. : 변경 협약 체결(김포시↔한국도로공사)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국도로공사)

- 2025. 12. : 고속국도 도로구역 결정(국토부) 및 보상계획 공고
- 2026. 06. : 공사 발주
- 2028.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45,800,000	5,390,000	8,000,000	0	8,000,000	32,410,000	
공 정 별	설계비	1,160,000	1,160,000	0				
	보상비	2,000,000	2,000,000	0				
	공사비	39,400,000	1,720,000	7,900,000		7,900,000	29,780,000	
	감리비	3,000,000	500,000	100,000		100,000	2,400,000	
	부대비	240,000	10,000	0			23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4	-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인허가 추진
2025	-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위한 인허가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40,000	112,904	2,527,096		
2024	4,227,096	-	4,227,096		
2025	4,227,096	-	4,227,096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연결램프 2개소 설치 (L=2,038m, B=8.1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영사정IC 건설사업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일원(김포한강로)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전화	2338
-----	-------	-------------	-----	----------	----	------

해강안 일주도로(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11. ~ 2029. 12.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19,770,250	14,071,029	5,699,221	2,816,250	2,904,091	5,611,380	3,342,500	3,342,500	
국비	14,265,000	11,519,477	2,745,523	2,253,000	2,452,620	2,545,903	2,674,000	2,674,000	
도비									
시비	5,505,250	2,551,552	2,953,698	563,250	451,471	3,065,477	668,500	668,500	-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342,500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L=3.5km, B=12m	= 2,692,500	
	401-03 감리비	- 감리비 : L=3.5km, B=12m(2차로)	= 65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계속비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필요 사업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로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8.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1구간)
- 2020. 8. : '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국비지원사업)
- 2022. 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1구간)
- 2023. 1. : 실시계획인가
- 2023. 2. : 토지분할 측량 실시
- 2023. 4. :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 2024. 6. : 실시계획(변경)인가
- 2024. 10. : 보상 착수
- 2025. 8. :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 발주
- 2026. 2. : 공사 착공 (준공: 2028년말)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9,912,500	22,586,500	3,342,500	3,342,500	0	13,983,500	
공 정 별	설계비	1,300,000	1,300,000	0			-	
	보상비	14,816,250	14,816,250	0			-	
	공사비	20,796,250	5,975,250	2,692,500	2,692,500		12,128,500	
	감리비	2,950,000	450,000	650,000	650,000		1,850,000	
	부대비	50,000	45,000	0			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토지분할 측량, 금개구리 포획·이주 용역 착수
2024	-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 토지보상 추진
2025	- 토지보상 추진, 공사 및 감리 용역 발주(조달청 의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09,059	630,620	14,978,439		
2024	18,048,689	12,349,468	5,699,221		
2025	8,515,471	2,904,091	5,611,38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5.9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3,342,50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일주도로 (월곶중로3-8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성동리 ~ 용강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7급 조재강	전화	2436
-----	-------	-------------	-----	----------	----	------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1. ~ 2029. 12.	사업위치	월곶면 고막리 ~ 용강리 일원	
사업규모		L=4.2km, B=12m			
사업목적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1,810,000	874,095	935,905	0	0	935,905	5,000,000	0	5,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810,000	874,095	935,905	-	-	935,905	5,000,000		5,00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 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 투자심사 완료
- 2019.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3.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7. : 토지분할 측량 의뢰
- 2025. 하반기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보상 착수
- 2026. 하반기 : 공사 착공
- 2029.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9,100,000	1,810,000	5,000,000	0	5,000,000	32,290,000	
공 정 별	설계비	900,000	900,000	0				
	보상비	18,000,000	895,000	5,000,000	0	5,000,000	12,105,000	
	공사비	18,100,000		0			18,100,000	
	감리비	2,000,000		0			2,000,000	
	부대비	100,000	15,000	0			85,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및 토지분할측량 추진
2024	토지분할측량 완료
2025	보완설계 발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1,048	-	201,048		
2024	1,201,048	265,143	935,905		
2025	935,905	-	935,905		10.31.기준 집행현황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로 136 일원	
사업규모		L=0.5km, B=10m			
사업목적		인구 및 차량증가, 모담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좁은 마을안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390,000	885,145	1,504,855	200,000	1,198,556	506,299	50,000	50,000	-
국비									
도비									
시비	2,390,000	885,145	1,504,855	200,000	1,198,556	506,299	50,000	50,000	-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 호선) 개설사업	401-03 시설부대비	· 경계복원 측량(14필지) ※ 필지당 약1,200,000원 x 14필지 · 예정지적좌표측량 ※ 점당 95,000원 x 200점(사업구간) · 확정측량(4,026㎡)	= 17,000 = 19,000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 관습로 확장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한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 필요
- 26년 2월 공사 준공 후 사업 구역 확정을 위한 확정측량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련부서(토지정보과) 협의 결과 해당 사업 부지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및 김포한강신도시 사이에 위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측량(확정 측량 등) 실시 요청으로 측량비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0. 10.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 2025. 5. :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 2025. 10. : 공사 착공(관습로 확장)
 - 2026. 2. : 공사 준공(관습로 확장)
 - 2026. 3. : 확정측량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640,000	2,590,000	50,000	50,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110,000	110,000	0				
	보상비	1,200,000	1,200,000	0				
	공사비	1,270,000	1,270,000	0				
	감리비	0	0	0				
	부대비	60,000	10,000	50,000	5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2024	- 공사준공
2025	-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착공(관습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6,349	107,253	2,239,095		
2024	2,239,095	734,240	1,504,855		
2025	1,704,854	1,203,854	50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4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5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운양로 136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3. ~ 2026. 12.	사업위치	월곶면 평화공원로 10 일원	
사업규모		L=1.5km, B=12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9,871,000	9,343,840	527,160	-	-	527,160	-	-	-
국 비									
도 비									
시 비	9,871,000	9,343,840	527,160	-	-	527,160	-	-	-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 12.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11.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 2020. 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3.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3. 8. : 공사 준공
 - 2024. 12. : 잔여지 보상(국토부)
 - 2026. 3. : 잔여지 보상(국방부)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9,871,000	9,871,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3,411,000	3,411,000	0				
	공사비	5,950,000	5,950,000	0				
	감리비	300,000	300,00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사준공(2023. 8.)
2024	- 잔여지(국유지) 보상 추진
2025	- 잔여지(국유지) 보상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98,591	3,021,526	677,065		
2024	1,198,065	670,905	527,160		
2025	527,160	-	527,16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5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월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평화공원로 10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7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0. 6.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로 109 일원
사업규모		L=0.12km, B=15m		
사업목적		감정동과 검단신도시 연결 구간으로 지역 간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개설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3,180,000	2,837,343	342,657	120,000	398,474	64,183	-	-	-
국비									
도비									
시비	3,180,000	2,837,343	342,657	120,000	398,474	64,183	-	-	-
기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0. 2.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2. : 투자심사
 - 2020. 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5. : 실시계획인가
 - 2024. 12. : 공사준공
 - 2025. 9. : 공사완료공고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300,000	3,30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50,000	50,000	0				
	보상비	2,570,000	2,570,000	0				
	공사비	680,000	680,000	0	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상진행
2024	- 공사준공
2025	- 공사완료공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8,197	614,840	953,357		
2024	1,503,357	1,160,700	342,657		
2025	462,657	398,474	64,18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12km, B=1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대로3-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감정동 631-20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4.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202-2번지 일원	
사업규모		L=0.2km, B=8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440,000	2,411,021	28,979	0	0	28,979	0	0	0
국 비									
도 비									
시 비	2,440,000	2,411,021	28,979	0	0	28,979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2019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0. 3. : 실시계획인가
- 2020. 4. : 보상착수

- 2021. 11. : 공사착공
- 2023. 3. : 공사준공
- 2023. 11. : 시설물 인수·인계
- 2026. 3. : 잔여지 보상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440,000	2,440,000	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0				
	보상비	1,990,000	1,990,000	0				
	공사비	420,000	42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사 추진
2024	- 공사 준공
2025	- 행정절차 검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9,397	359,397	30,000		
2024	30,000	1,021	28,979		
2025	28,979	-	28,979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2km, B=8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0호선)개설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202-2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통진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29. 12.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로 65-72 일원	
사업규모		L=0.34km, B=25m(4차로)			
사업목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혼잡 및 통행불편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90,000	184,669	5,331	0	0	5,331	5,000,000	0	5,000,000
국비									
도비									
시비	190,000	184,669	5,331	0	-	5,331	5,000,000	0	5,000,000
기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6.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6. 3. : 보상 준비 및 착수
- 2026. 4. : 보상계획공고
- 2028. 3. : 공사 착공
- 2029.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0,190,000	190,000	5,000,000	0	5,000,000	15,000,000	
공 정 별	설계비	190,000	190,000	0				
	보상비	7,980,000		5,000,000	0	5,000,000	2,980,000	
	공사비	11,920,000		0			11,92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0		0			1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실시계획인가 완료 - 건설기술심의 추진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617	30,286	5,331		
2024	5,331	-	5,331		
2025	5,331	-	5,33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34km, B=25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통진 도시계획도로 (대로3-2호선) 개설공사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로 65-72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양촌 도시계획도로(광로3-5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30. 2.	사업위치	양촌읍 구래리 202-16번지 일원	
사업규모		L=0.5km, B=40m(8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340,000	339,031	969	0	0	969	5,000,000	0	5,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40,000	339,031	969	0	-	969	5,000,000	0	5,00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4.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6. 3. : 보상 준비 및 착수
- 2026. 4. : 보상계획공고
- 2023. 3. : 공사 착공
- 2030.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37,840,000	340,000	5,000,000	0	5,000,000	32,500,000	
공 정 별	설계비	340,000	340,000	0				
	보상비	17,800,000		5,000,000	0	5,000,000	12,800,000	
	공사비	19,500,000		0			19,5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200,000		0			2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설계VE 등 검토 용역 추진 - 실시계획인가 완료 - 건설기술심의 추진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778	21,809	969		
2024	969	-	969		
2025	969	-	969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5km, B=4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양촌 도시계획도로 (광로3-5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구래리 202-16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3-9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8. ~ 2029.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205-22	
사업규모		L=0.72km, B=10m(2차로)			
사업목적		주거지 및 공장 밀집 지역의 열악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및 차량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물류 수송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140,000	114,013	25,987	0	0	25,987	5,000,000	0	5,000,000
국비									
도비									
시비	140,000	114,013	25,987	0	-	25,987	5,000,000	0	5,000,000
기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9.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6. 1. : 보상 준비 및 착수
- 2026. 4. : 보상계획공고
- 2028. 3. : 공사착공
- 2029.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8,930,000	140,000	5,000,000	0	5,000,000	3,790,000	
공 정 별	설계비	130,000	130,000	0				
	보상비	7,090,000		5,000,000	0	5,000,000	2,090,000	
	공사비	1,700,000		0			1,7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905	16,918	25,987		
2024	25,987	-	25,987		
2025	25,987	-	25,98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72km, B=10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곶북로 205-22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대곶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5. ~ 2029. 12.	사업위치	대곶면 울생리 266-3번지 일원	
사업규모		L=1.33km, B=10~12m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이월예정액)(C+D-E)	계(F+G)	본예산요구(F)	향후추경(G)
계	210,000	154,659	55,341	0	0	55,341	5,670,000	0	5,67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10,000	154,659	55,341	0	0	55,341	5,670,000	0	5,67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 8.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5.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9.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6. 3. : 보상착수
- 2028. 3. : 공사착공
- 2029.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1,380,000	210,000	5,670,000	0	5,670,000	5,500,000	
공 정 별	설계비	200,000	200,000	0				
	보상비	5,670,000		5,670,000	0	5,670,000		
	공사비	5,500,000		0			5,5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341	-	55,341		
2024	55,341	-	55,341		
2025	55,341	-	55,34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1.33km, B=10~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개설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읍생리 266-3번지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양촌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9. 4. ~ 2026. 12.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38 일원	
사업규모		L=0.3km, B=8m			
사업목적		양촌 구도심 교통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불편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5,699,700	5,585,924	113,776	0	0	113,776	700,000	0	7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5,699,700	5,585,924	113,776	0	0	113,776	700,000	0	70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19. 3.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11. : 2019년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2.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9.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4. :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22. 4. : 보상 착수
 - 2024. 3. : 공사 착공
 - 2024. 10. : 공사 준공
 - 2026 5. : 보상 준비 및 착수
- ※ 기협지사항 : 도시관리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사업 부지 앞 양촌소로2-9호선의 토지보상은 건설도로과, 도로설계 및 시공은 도시관리과 시행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6,399,700	5,699,700	700,000	0	7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30,000	30,000	0				
	보상비	5,889,700	5,189,700	700,000	0	700,000		
	공사비	470,000	47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2024	-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72,330	3,052,209	619,821		
2024	619,821	506,045	113,776		
2025	113,776	-	113,776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3km, B=8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양촌 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양촌읍 양곡1로 38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중로3-25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2. 2. ~ 2029. 12.	사업위치	풍무로 57번길 일원	
사업규모		L=0.45km, B=12m			
사업목적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 유입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연계도로 구축을 통한 교통편익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A)	지출액(B)	지출잔액 (C=A-B)	예산액(D)	지출액(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159,700	130,635	29,065	0	0	29,065	5,000,000	0	5,0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59,700	130,635	29,065	0	0	29,065	5,000,000	0	5,00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뢰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2. 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2 : 김포 도시계획도로(중로3-25호선) 개설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2. 11 : 투자심사 완료
- 2023.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5.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6. 4. : 보상 착수
- 2028. 3. : 공사 착공
- 2029.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10,700,000	159,700	5,000,000	0	5,000,000	5,540,300	
공 정 별	설계비	149,700	149,700	0				
	보상비	5,000,000		5,000,000	0	5,000,000		
	공사비	5,540,300		0			5,540,300	
	감리비	0		0				
	부대비	10,000	10,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9,700	105,044	54,655		
2024	54,655	25,590	29,065		
2025	29,065	-	29,06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45km, B=12m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중로3-25호선) 개설공사	사업위치	풍무로 57번길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선 개설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5. 7. ~ 2030.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사업규모		도로신설 L=2.2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650,000	0	650,000			
국 비									
도 비									
시 비				650,000	0	650,000			
기 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5.10. (시)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투자심의 결과 : 조건부 추진 -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6. 0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7. 0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고시
- 2028. 01. : 토지보상 착수
- 2029. 01. : 공사 착공
- 2030.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2,000,000	650,000	0	0	0	21,350,000	
공 정 별	설계비	650,000	650,000	0				
	보상비	7,000,000		0			7,000,000	
	공사비	10,600,000		0			10,600,000	
	감리비	1,100,000		0			1,100,000	
	부대비	650,000		0			650,000	
	예비비	2,000,000		0			2,0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24					
2025	650,000	-	650,000		10.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2.2km, B=12m(2차로)	본예산 요구액 (천원)	-
부기명 (세부사업)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포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8.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포내리 252-11번지 일원
사업규모		배수로 5km(벤치플룸관, 흙관 등) 설치 및 정비		
사업목적		농업용수 확보 및 관개수로 개선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			2026년		
	예산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C=A-B)	예산액 (D)	지출액 (E)	지출잔액 (이월예정액) (C+D-E)	계 (F+G)	본예산 요구(F)	향후 추경(G)
계							250,000	250,000	
국 비							200,000	200,000	
도 비									
시 비							50,000	50,000	
기 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포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1식	= 130,000	
		· 배수로 정비 5km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 배수로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관개 효율 증가 및 배수 시스템 구축으로 홍수 시 원활한 배출 및 가뭄 시 안정적인 수원 확보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국비·시비(8:2) 매칭 사업으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선정
 - 2025.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6. 1. ~ 4. :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26. 5. : 행정절차 이행
 - 2026. 6. ~ 202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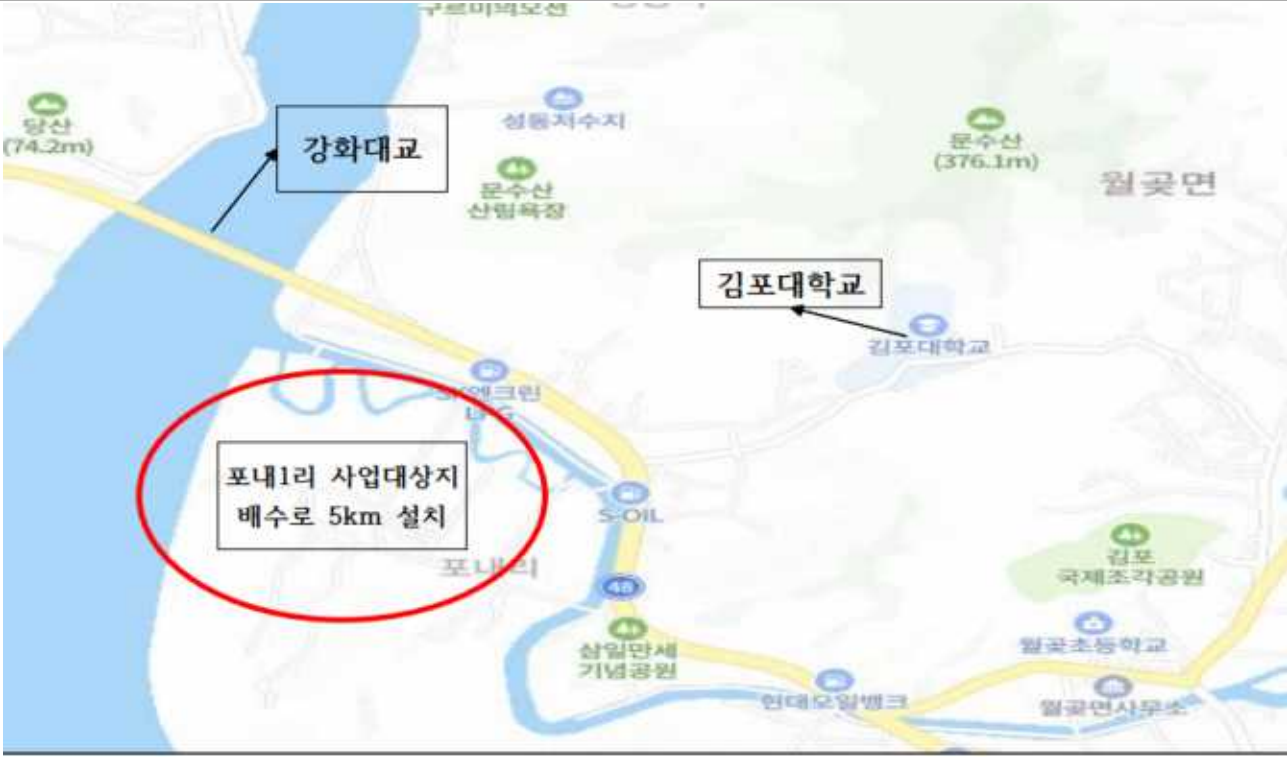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E)	비고
				계 (B=C+D)	본예산 (C)	추경 (D)		
계		2,350,000	0	250,000	250,000	0	2,100,000	
공 정 별	설계비	130,000		130,000	130,000			
	보상비	0		0				
	공사비	2,220,000		120,000	120,000		2,1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배수로 정비 5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0,000
부기명 (세부사업)	포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사업위치	월곶면 포내리 252-11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윤석호	전화	2431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도로관리과
요 구 액	2,801,571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356,500	2,449,008	2,442,260	6,748	2,532,860	83,252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60	60	60		60	0	
사용료수입/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2,100,000	2,200,000	2,200,000		2,300,000	100,000	신규도로 점용허가 및 공시지가 상승 고려 편성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제한차량운행허가	80,000	60,000	60,000		50,000	-10,000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수입 지속 감소 추세 반영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400	400	400		400	0	
수수료수입/기타수수료 ◎불법주정차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0	300		300	900	600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
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74,240	186,312	180,000	6,312	180,000	-6,312	경기도 징수금 교부액 미확정에 따른 전년도 대비 편성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800	1,936	1,800	136	1,500	-436	이자수입 감소
임시적세외수입	30,000	888,860	30,000	858,660	550	-888,310	
기타수입/그외수입 ◎방치자전거 매각대금	30,000	888,660	30,000	858,660	550	-6,3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700	9,700	9,700		8,000	1,700	
과태료/기타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9,700	9,700	9,700		8,000	-1,700	대집행 등 통한 적치물 정비로 과태료 부과 감소

도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보수 비상근무자 급식비, 위생비, 도로관리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사업목적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근무자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8,494	214,554	214,554	0	0	0	224,878	10,32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8,494	214,554	214,554				224,878	10,32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4,878	
도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비상근무자 급식비 9,000원*23명*108회 = 22,356 ◎ 비상근무자 위생비 = 4,300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000 ◎ 도로안전점검용 물품 구입 100,000원*23명*1회 = 2,300	29,956	
	201-02 공공운영비	◎ 법정도로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 100,000원*250건 = 25,000 ◎ 도로관리용 차량유지관리비 : 10,000,000원*12대 = 120,000	145,000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도로관리용 장비 구매 : 12,320,000원 + 37,602,000원 = 49,922	49,922	

□ 예산요구 사유

- 도로관리용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정도로 영조물 배상 접수 사항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급액 확보
- 도로 보수 시 효율적 작업 및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비(자동사다리 등) 구매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로 내 사고로 인한 영조물 배상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자기부담금 확보 필요(2025.10.31.기준 133건 13,319천원)
- 도로관리용 장비(자동사다리, 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 굴삭기 장비(버킷 등) 운반 시 장비파손 및 보수원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자동사다리차 미보유)
 - 확장·신규 개설된 도로 작업 시 한계가 있어 예비용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자 함(1대 운용 중)

자동사다리	신규 구매 요청	견적																																																																																																																																																																																																															
견적서	대비견적서																																																																																																																																																																																																																
견 적 서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具下 견적일자 : 2025년08월21일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담당자: 이근배 부임장님 *연 화: 010-919-2972 *이메일: kemp2972@korea.kr *참 조: 코보라자동사다리견적의뢰 *제 목: 코보라자동사다리견적서 *견적 유효일: 견적일로부터 30일 사업자NO: 966-87-대153 상 호: 주식회사 상현모터스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서흥대로 830 당 당 자: 김형선 영업과장 전화·팩스: 031-642-9778/(F)031-641-9778 이 메 일: sh6429777@naver.com <table> <tr> <th>NO</th><th>기 종 명</th><th>모 델 명</th><th>수량</th><th>단가</th><th>총금액</th><th>비고</th></tr> <tr> <td>1</td><td>코보라 자동사다리</td><td>SH-A6000</td><td>1</td><td>8,400,000</td><td>8,400,000</td><td>4m</td></tr> <tr> <td>2</td><td rowspan="4">옵 션</td><td>무선리모콘</td><td>1</td><td>400,000</td><td>400,000</td><td></td></tr> <tr> <td>3</td><td>중앙다리</td><td>4</td><td>150,000</td><td>600,000</td><td></td></tr> <tr> <td>4</td><td>적재함바닥</td><td></td><td></td><td>-</td><td></td></tr> <tr> <td>5</td><td>갈비보강</td><td>4.2T 각파이프</td><td>10</td><td>100,000</td><td>1,000,000</td><td>5.3m</td></tr> <tr> <td>6</td><td>회문제작</td><td></td><td>1</td><td>800,000</td><td>800,000</td><td></td></tr> <tr> <td>7</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9</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0</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계</td><td></td><td></td><td>17</td><td></td><td>11,200,000</td><td></td></tr> </table> *구조변경 관련 취득세 별도 금액입니다. *적재함바닥이 철재로 깔려있는상태의 견적입니다. 없는 경우 적재함바닥을 하셔야 사다리장착가능합니다. *본견적은 30일간 유효 합니다. *담당자 상현모터스 영업과장 김형선 임니다. 소 계 11,200,000 부 가 세 1,120,000 합 계 12,320,000 기 타 사 항 상현모터스 영업과장 김형선	NO	기 종 명	모 델 명	수량	단가	총금액	비고	1	코보라 자동사다리	SH-A6000	1	8,400,000	8,400,000	4m	2	옵 션	무선리모콘	1	400,000	400,000		3	중앙다리	4	150,000	600,000		4	적재함바닥			-		5	갈비보강	4.2T 각파이프	10	100,000	1,000,000	5.3m	6	회문제작		1	800,000	800,000		7					-		8					-		9					-		10					-		계			17		11,200,000		견 적 서 사기 2025년 08월 22일 주 소: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이근배 부임장님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복이면 대흥내후길164-12 공 사 명: 자동사다리 장착 TEL: (043)217-0946 FAX: (043)217-0947 금 액: ₩13,662,000(부가세포함) E-mail: jw2170946@hanmail.net 주주 정우테크놀로지 대표 서영준 <table> <tr> <th>NO</th><th>종 명 및 규격</th><th>단 위</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 <td>1</td><td>5톤 차량용 자동사다리 3.9m</td><td>1</td><td>1</td><td>8,800,000</td><td>8,800,000</td></tr> <tr> <td>2</td><td>무선리모콘</td><td>1</td><td>1</td><td>500,000</td><td>500,000</td></tr> <tr> <td>3</td><td>사다리 지지대</td><td>1</td><td>4</td><td>180,000</td><td>720,000</td></tr> <tr> <td>4</td><td>갈비 보강</td><td>1</td><td>10</td><td>120,000</td><td>1,200,000</td></tr> <tr> <td>5</td><td>탈부착 회문제작</td><td>1</td><td>1</td><td>1,200,000</td><td>1,200,000</td></tr> <tr> <td>6</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7</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8</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9</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0</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1</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2</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3</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4</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5</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6</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17</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5">소 계</td><td>12,420,000</td></tr> <tr> <td colspan="5">부 가 가치 세</td><td>1,242,000</td></tr> <tr> <td colspan="5">합 계</td><td>13,662,000</td></tr> </table> * 비 고 *	NO	종 명 및 규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5톤 차량용 자동사다리 3.9m	1	1	8,800,000	8,800,000	2	무선리모콘	1	1	500,000	500,000	3	사다리 지지대	1	4	180,000	720,000	4	갈비 보강	1	10	120,000	1,200,000	5	탈부착 회문제작	1	1	1,200,000	1,200,000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소 계					12,420,000	부 가 가치 세					1,242,000	합 계					13,662,000
NO	기 종 명	모 델 명	수량	단가	총금액	비고																																																																																																																																																																																																											
1	코보라 자동사다리	SH-A6000	1	8,400,000	8,400,000	4m																																																																																																																																																																																																											
2	옵 션	무선리모콘	1	400,000	400,000																																																																																																																																																																																																												
3		중앙다리	4	150,000	600,000																																																																																																																																																																																																												
4		적재함바닥			-																																																																																																																																																																																																												
5		갈비보강	4.2T 각파이프	10	100,000	1,000,000	5.3m																																																																																																																																																																																																										
6	회문제작		1	800,000	800,000																																																																																																																																																																																																												
7					-																																																																																																																																																																																																												
8					-																																																																																																																																																																																																												
9					-																																																																																																																																																																																																												
10					-																																																																																																																																																																																																												
계			17		11,200,000																																																																																																																																																																																																												
NO	종 명 및 규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5톤 차량용 자동사다리 3.9m	1	1	8,800,000	8,800,000																																																																																																																																																																																																												
2	무선리모콘	1	1	500,000	500,000																																																																																																																																																																																																												
3	사다리 지지대	1	4	180,000	720,000																																																																																																																																																																																																												
4	갈비 보강	1	10	120,000	1,200,000																																																																																																																																																																																																												
5	탈부착 회문제작	1	1	1,200,000	1,200,000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소 계					12,420,000																																																																																																																																																																																																												
부 가 가치 세					1,242,000																																																																																																																																																																																																												
합 계					13,662,000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신규 구매 요청	조달청 벤처나라
결착 전개가 가능한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ETI-TMA2 80KM/h) 37,400,000원 유사상품 검색 * 위 가격은 조달청 벤처, 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을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2017-6호) 제21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주식회사 이티아이 사업자등록번호 7018600354 물품식별번호 24878899 단위 대 창업기업 N 벤처기업 Y 중기간경쟁제품 N * 중기간경쟁제품은 통기부 제2024-13호 기준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공고보기] 규격 모델명 : ETI-TMA2 80KM/h 크기 : (가로)3494 × (세로)2440 × (높이)640mm 등급 : TMA2 (충격흡수속도 80Km/h용) 상품설명 본 제품은 주행 중 결착 및 전개가 가능하고 설치시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작업차량에 탈착가능하며, 탈 부착 소요 시간 1분 내외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품이며 국내유일의 충돌시험을 통과한 충격흡수시설 임. 납품조건 최소주문수량 1대, 최소납품기한은 주문요청일로부터 120일 하자보증 : 1년 납품장소 : 장착차량 공장입고 설치비 포함 기타 : 후방 블랙박스 미포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수리 56건 -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75건 지급
2024	- 도로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수리 53건 -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275건 지급
2025	- 도로관리 차량 및 제설차량 수리 64건 -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167건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0,000	117,747	-	12,253	
2024	178,494	170,567	-	7,927	
2025	214,554	185,828	-	29,27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9급 오은채 행정9급 정영익	전화	4575 4576
-----	-------	------------	-----	----------------------	----	--------------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보수용 자재 포대아스콘 등 구입		
사업목적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0,000	360,000	360,000	0	0	0	36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0	360,000	360,000				36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0	
도로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 도로유지보수 자재 구입 · 블라드: 200,000원*800개 = 160,000 · 긴급보수재(포대아스콘): 13,000원*10,000포 = 130,000 · 안전유도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 블록 등: 40,000,000원 = 40,000 · 스틸그레이팅, 골재 등: 30,000,000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존에 설치된 블라드가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저하되고 도시 미관이 손상되어, 교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포트홀 등 도로 파손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위해 필수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현장 조사 및 민원 접수 결과, 블라드(차량 진입 억제봉) 신규 설치 및 교체 요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요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3. : 자재 수량 확인 및 구매
 - 2026.01. ~ 2026.12. : 볼라드(도로안전시설물) 현황 파악 및 교체·설치(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보수재 11,400포 구매 - 볼라드 550개 구매, 안전유도블록 9,000개 - 충격흡수대 5개 구매 등
2024	- 도로보수재 8,670포 구매 - 볼라드 400개 구매, 안전유도블록 3,000개 및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4,500개 구매 - 스틸그레이팅 45개 구매 등
2025	- 볼라드 970개 구매 - 스틸그레이팅 96개 구매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1,800㎡ - 안전유도블록(점형) 1,600개 및 안전유도블록(선형) 400개 - 주철맨홀뚜껑 12조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0	357,082	-	42,918	
2024	440,000	439,872		128	
2025	360,000	350,348	-	9,65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행정9급 정영익	전화	4576
-----	-------	------------	-----	----------	----	------

도로유지보수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 긴급보수, 배수로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목적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포괄사업비 확보를 통한 적기 도로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70,300	1,440,000	1,440,000	0	0	0	1,44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70,300	1,440,000	1,440,000				1,44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4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도로유지보수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 320a * 2,000,000원 = 640,000 · 배수시설 정비 : 50개소 * 4,000,000원 = 200,000 · 침수도로 개선공사 등 : 관로 매설 및 잡수정 설치 1,000,000원*0.6km = 600,000		

□ 예산요구 사유

-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보름초·양도중학교 일원 등 도로가 파손되어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보수공사 예산 확보 필요
- 노면 불량구간을 적기에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
-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배수시설 용량을 확충하고, 주요 구간의 배수 기능 개선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최근 폭우·폭설 등 이상고온의 반복으로 도로파손(포트홀) 국민신문고 등 보수 민원 2,430건 발생(2025.10.31.기준)
- 올해 극한호우(호우특보)시 빗물받이 준설 및 도로 배수 개선 요청 2,036건 발생(2025.10.31.기준)
 - 가로수 뿌리로 인한 배수로 막힘 다수 확인 → 배수로 재가설 및 기계정비 등 정비공사 필요
- 통로박스(굴다리) 및 램프구간 배수로 토사 퇴적에 따른 배수불량 구간이 다수 확인되어, 대규모 개선사업 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3. ~ 2026.06. : 상습침수구역 개선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03. ~ 2026.12. : 긴급보수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관내 법정도로 빗물받이 및 배수관로 준설 231m ³ - 사우사거리 외 2개소 침수도로 개선공사 (우수받이25개소, 수로관72m, 관로 175m 등) - 발산교차로 외 5개소 교통섬 바닥표시등 설치공사 - 사우사거리 외 2개소 침수도로 개선공사
2024	- 용화사IC 옹벽복구 공사 - 북변동752번지 외 4개소 싱크홀 긴급 복구 공사 - 노후 교량 및 중대결함 보수·보강 공사 - 걸포동1543-2 가드레일 구매설치 - 관내 법정도로 빗물받이 및 배수로관로 준설(1~3구역) - 갈산교 재설치 공사
2025	- 김포한강10로 일원 외 1개소 체계개선공사 - 김포우리병원 일원 외 3개소 보행로 조성공사 - 울생로(대곶소로 2-13호선) 외 4개소 재정비공사 - 애기봉로 472번지 일원 도로 관로 교체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57,224	540,373	1,295,560	21,291	
2024	3,165,860	2,463,922	533,939	167,999	
2025	1,973,939	1,654,403	-	319,5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7급 박병선 시설8급 이영수 시설9급 오은채	전화	4573 4574 4575
-----	-------	------------	-----	----------------------------------	----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보수 연간단가(도로보수, 보도, 배수로, 도로이정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목적		도로유지관리 대행사업을 통하여 신속한 도로 보수 실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40,000	3,100,000	2,500,000	0	0	600,000	2,500,000	-6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40,000	3,100,000	2,500,000			600,000	2,500,000	-6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 소규모 파손 복구 등 346개 공종 = 2,100,000 · 법정도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 빗물받이 준설 등 110개 공종 = 300,000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 25개소*4,000,000원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리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시설물 노후화 및 파손이 가속화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연간 단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도로유지 관리 필요
-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을 통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배수 불량 구간에 신속한 개선 공사 필요
- 기존 표지판을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보수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도로이용자의 편익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도 대비 국민신문고 등 도로 보수 등 요청 건 70% 증가(2025.10.31. 국민신문고 등 도로 보수 요청 1,446건 기준)
- 빗물받이 및 배수로 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상습 침수도로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 관내 빗물받이 21,928개소(2025.01.01.기준) 전 구간 준설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3구역 착공 및 준공
 - 2026.01. ~ 2026.12.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6.03. ~ 2026.11. : 법정도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3구역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8구역) - 표지판 설치 55개소 및 가드레일 100경간 - 배수로 준설 등
2024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8구역) - 법정도로 준설공사(1~3구역)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2025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3구역) - 법정도로 준설공사(1~3구역)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0,000	2,311,828	-	488,172	
2024	3,240,000	3,240,000	-	-	
2025	3,100,000	2,794,940	-	305,0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7급 박병선 시설8급 이영수 시설9급 오은채	전화	4573 4574 4575
-----	-------	------------	-----	----------------------------------	----	----------------------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 절삭 후 재포장 1,250a		
사업목적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내 법정도로 구간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0,000	3,000,000	1,500,000	0	0	1,500,000	2,500,000	-5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00	3,000,000	1,500,000			1,500,000	2,500,000	-50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 읍면시도 재포장공사 : 500a * 2,000,000원 ·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 750a * 2,000,000원	= 1,000,000 = 1,500,000	

□ 예산요구 사유

- 금년 해빙기·우기시 도로 노면 파손(포트홀, 균열, 소성변형 등)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법정도로의 추가 재포장 필요
 -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대곶로 및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
- 도로 노후화에 따른 복구 지연 시 차량 파손(영조물 배상 청구) 증가 및 보행자·운전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예상
- 특히 간선도로(김포한강로, 김포대로 등)는 김포시 주요 교통축으로, 통행량이 많아 도로 파손이 교통 흐름 지연 및 안전사고로 직결되어 재포장 필요성이 큼

□ 예산증감 사유

- 재포장 대상 후보지 및 해빙기·우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노면 파손 구간 추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 필요
-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관리 도로 연장이 증가하면서 사업 물량이 확대됨에 따른 추가 예산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2.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6.03. ~ 2026.11. : 재포장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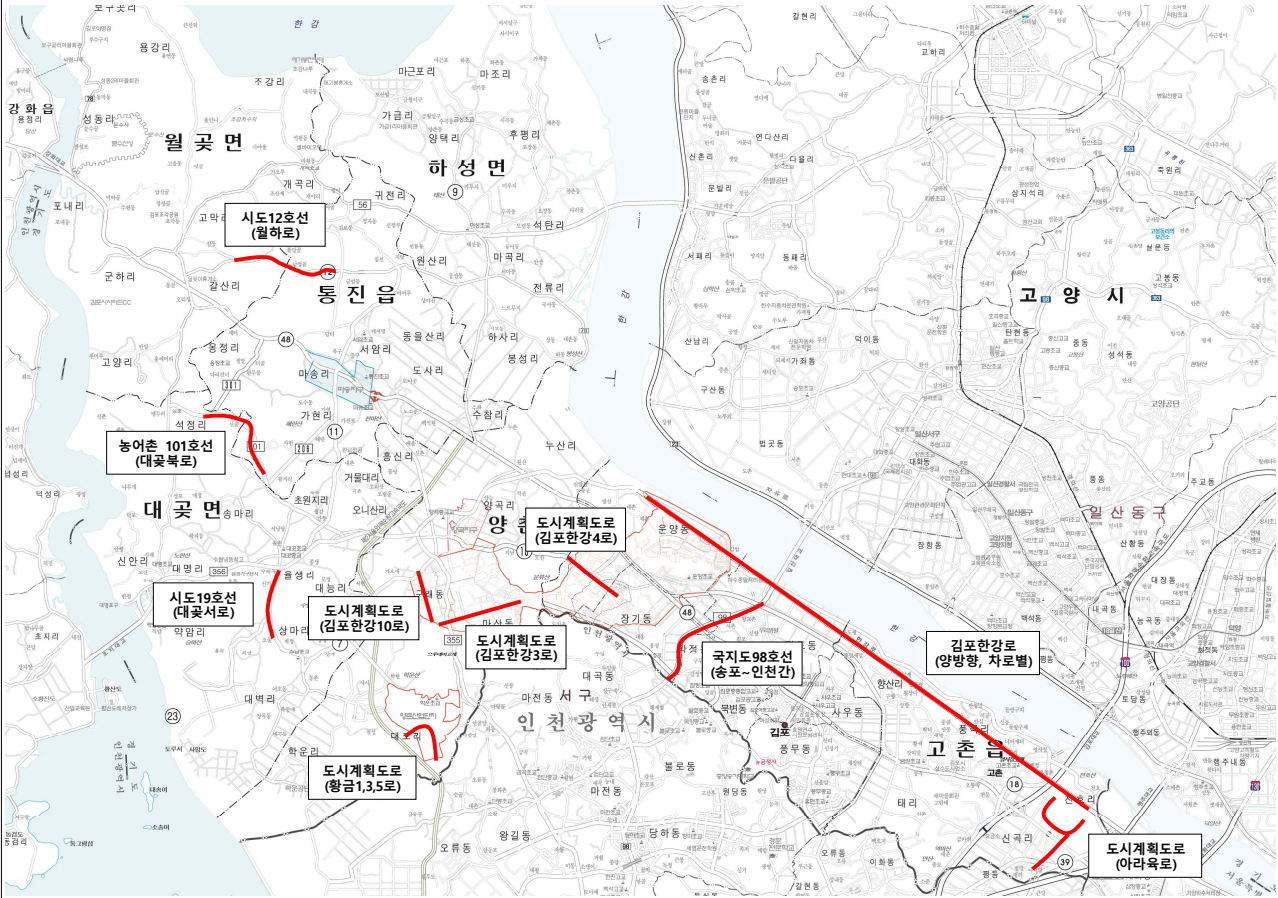
2023	- 읍면시도(시도7호선) 재포장공사 95a - 도시계획도로(걸포로, 김포한강로, 돌문로, 김포한강3로, 승가로, 김포대로2270번길) 재포장공사 672a - 국도 및 지방도(국도48호선) 재포장공사 71a
2024	- 주요 간선도로(김포한강로, 김포한강10로) 재포장공사 498.7a -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시도7호선, 시도12호선) 재포장공사 380.5a
2025	- 주요 간선도로(김포대로 2개소, 김포한강로, 김포한강7로, 김포한강4로) 재포장공사 1,052.4a - 농어촌 101호선(대곶북로) 재포장공사 75.8a -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시도18호선(인향로), 시도12호선, 승가로, 김포금빛초교, 읍면시도9호선, 약암로) 재포장공사 383.9a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00	2,750,526	-	249,474	
2024	2,500,000	2,500,000	-	-	
2025	3,000,000	2,238,947	-	761,05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A = 1,250a		본예산	2,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예산요구액 (천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6급 모상훈	전화	4572
-----	-------	------------	-----	----------	----	------

보행도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사업목적	노후화된 보행도로를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40,000	440,000	440,000	0	0	0	44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0	440,000	440,000				44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보행도로 정비사업 · 보도 정비공사 : 4,400㎡ * 100,000원 = 440,000	440,000	

□ 예산요구 사유

- 보행자 도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 및 이용 불편 증가로 보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영조물 배상 보행로 사고 발생 증가(영조물 배상 접수 건수 대비) 및 보행로 보수·개선 요구 민원 증가
- 도시 노후화(준공 후 10년 초과)에 따른 보도 전면보수 필요 구간 증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 기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4.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 2026.05. ~ 2026.11. : 보행로 정비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중봉1로 외 2개소 보도 정비공사 - 은여울 초·중학교 보행로 개선공사 20a
2024	- 마송로, 양곡3로 보도 정비공사
2025	- 장릉로 보도 정비공사 - 장차로 외 1개소 보행로 정비공사 - 고촌초 주변 도로환경 개선공사 - 대곶면 석정리 304-1번지 보도 이설공사 - 운양역 장기역 PM 주차금지구역 보도 설치 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19,071	479,392	195,103	123,412	
2024	635,103	408,233	-	266,870	
2025	440,000	439,072	-	9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7급 박병선	전화	4573
-----	-------	------------	-----	----------	----	------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보조)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355번, 356번 지방도
사업규모		도로명표지판 교체 3개소		
사업목적		노후된 도로이정표 교체를 통한, 시인성 확보 및 정확한 길안내를 통한 운전자 불편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55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20,000	20,000	0	0	0	12,000	-8,000	
국비		0						0	
도비	20,000	20,000	20,000				12,000	-8,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401-01 시설비	◎ 도로이정표 정비 · 도로이정표 교체 : 4,000,000원(단가) × 3개소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화된 도로이정표 교체 및 정비를 통한 표지판의 시인성 확보, 정확한 길 안내를 통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지속적인 지방도 표지판 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도로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설계
 - 2026. 04. : 공사 착공
 - 2026. 05.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방도355호선(오니산교차로) 도로명표지판 정비공사(도로명표지판 문안수정 1개소)
2024	- 지방도355호선(오니산교차로) 도로명표지 교체공사(도로명표지판 교체 7개소, 문안수정 1개소)
2025	- 지방도355,356호선(양곡4로) 도로명표지 교체공사(도로명표지판 교체 8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	2,000	-	-	
2024	20,000	19,237	-	763	
2025	20,000	19,110	-	8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9급 오은채	전화	4575
-----	-------	------------	-----	----------	----	------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보조)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국지도78호선, 지방도355·356호선
사업규모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		
사업목적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로 접도구역 내 제한행위 발생 사전 방지 및 효율적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동법 시행규칙, 접도구역 관리지침		제40조 제2항, 제17조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	3,200	3,200	0	0	0	2,600	-600	
국비		0						0	
도비	4,000	3,200	3,200				2,600	-6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00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401-01 시설비	◎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 접도구역 표주 설치 60,000원 × 40개소 ·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 200,000원 × 1개소	= 2,400 = 200	

□ 예산요구 사유

- 지방도에 접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 접도구역 내 제한행위 발생 사전 방지 및 효율적 관리 목적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반영 [경기도 도로안전과-18460(2025. 10. 30.)]
- 2025년 대비 접도구역 내 설치예정 표주 개수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0. : 접도구역 표주 및 표지판 정비 대상 사업지 선정
 - 2026. 11.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2개소 및 표주 30개소 설치
2024	·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4개소 및 표주 12개소 설치
2025	· '25. 11월 : 사업지 선정 및 공사 착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	3,300	-		
2024	4,000	4,000	-		
2025	3,200	0	-	3,200	10. 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김형철	담당자	시설9급 김석진	전화	4566
-----	-------	------------	-----	----------	----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교량, 육교, 옹벽, 사면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목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336,217	7,592,153	6,409,153	0	983,000	200,000	7,930,863	338,710	
국비		0						0	
도비	83,600	0						0	
시비	4,252,617	7,592,153	6,409,153		983,000	200,000	7,930,863	338,71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930,86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도로시설물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 100,000원 * 7명 * 2회 = 1,400 ◎ 배수펌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7개소) = 17,200		
	201-02 공공운영비	◎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 700,000 ◎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14개소) = 32,000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김포도시공사 지하차도 위탁 운영비 = 665,727		
	401-01 시설비	◎ 도로시설물 상시보수공사 연간단가 = 320,000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법정 점검(정기·정밀·실태조사 등) = 2,080,000 ◎ 법정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 = 3,900,000 ◎ 관내 보강토 옹벽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 = 200,000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김포도시공사 지하차도 위탁 운영 물품구입비 = 14,536		

□ 예산요구 사유

- 교량, 육교 승강기, 옹벽 등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유지·보수 필요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법정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검토 및 관리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시설물 안전법」 상 3종 시설물 지정 확대에 따른 점검 및 보수 대상시설물 증가
- 법정 점검 용역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증가
- 최근 타 지역 옹벽, 지하차도 등 잇따른 도로시설물 사고 발생으로 안전 점검 강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도시공사 전출금 지급
 - 2026. 01. ~ 12. :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및 공공요금 연중 납부
 - 2026. 02. ~ 12. : 도로시설물 법정 점검 실시
 - 2026. 03. ~ 12.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복변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2024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갈산교 통신관로 가이설 공사 - 운양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전기공사 등
2025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계양천1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 풀잎교 보수보강공사 - 백운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 장기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보수공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68,134	3,433,711	627,953	206,470	
2024	4,964,170	4,209,035	628,355	126,780	
2025	8,220,508	6,334,094	-	1,886,4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시설9급 김재현 시설9급 최대한	전화	4583 4585 4586
-----	-------	------------	-----	----------------------------------	----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도로
사업규모	가로·보안등 35,71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		
사업목적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및 안전진단 등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로 원활한 시설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24,604	4,932,667	4,632,667	0	0	300,000	4,385,587	-547,0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24,604	4,932,667	4,632,667			300,000	4,385,587	-547,0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85,587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가로등·보안등 공공요금 365,000,000원 × 12월	4,083,777	
		◎ 가로등 전기 안전진단 50,000원 × 1,200개소	60,000	
		◎ 가로등 양방향제어기 통신요금 3,300,000원 × 12월	39,600	
		◎ 가로등(5차) 상환금 202,209,960원 (16,850,830 × 12개월)	202,210	

□ 예산요구 사유

- 가로등, 보안등의 공공요금 적기 납부로 가로등, 보안등의 원활한 관리
-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고효율LED조명사업비 상환을 통한 안전한 야간운전 및 보행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가로등 설치 및 임대관리용역(4차) 상환금 납부 완료
- 신규 설치 및 가로등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증가
- 한전 전기요금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공공요금 연중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하차도 및 터널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1차,2차,3차,4차,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2024	· 지하차도 및 터널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2차,3차,4차,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2025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4차,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72,344	4,770,968	-	1,376	
2024	4,824,604	4,788,585	-	36,019	
2025	4,932,667	3,802,000	-	1,130,66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행정6급 배명선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2 4584
-----	-------	------------	-----	----------------------	----	--------------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도로
사업규모	보안등 12,586개소에 대한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목적	보안등 점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제14조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006,000	906,000	906,000	0	0	0	906,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6,000	906,000	906,000				906,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06,000	
보안등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 . 램 프 300개 × 80,000원 = 24,000 . 점멸기 400개 × 68,500원 = 27,400 . 유닛트 420개 × 60,000원 = 25,200 . 등기구 500개 × 300,000원 = 150,000 . 암 대 200개 × 117,000원 = 23,400		
	401-01 시설비	◎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1~6구역) = 540,000 ◎ 보안등 설치 및 교체 125개소 × 925,000원 = 116,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보안등 교체 및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 재료비
 - 2026. 3. ~ 12. :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 ▶ 시설비
 - 2026. 1. ~ 12. : 보안등 연간단가 공사 착공 등 운영
 - 2026. 3. ~ 12. : 보안등 설치·교체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안등 유지보수(1권역~6권역)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설치 및 교체
2024	· 보안등 유지보수(1권역~6권역)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설치(306개소) 및 교체
2025	· 보안등 유지보수(1권역~6권역) · 범죄취약지 LED보안등 설치(94개소) 및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000	1,306,868	-	13,132	
2024	1,006,000	975,854	-	30,146	
2025	906,000	828,023	-	77,97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행정6급 배명선	전화	4582
-----	-------	------------	-----	----------	----	------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도로
사업규모	가로등 23,124개소,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2,500개소		
사업목적	가로등,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통한 교통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제14조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12,000	1,892,000	1,712,000	0	0	180,000	1,540,000	-35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12,000	1,892,000	1,712,000			180,000	1,540,000	-35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40,000	
가로등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 구입		
		· 램프 : 300개 × 40,000원	≒ 12,000	
		· 점멸기 : 50개 × 220,000원	≒ 11,000	
		· 등기구 : 500개 × 500,000원	≒ 250,000	
		· 누전차단기 : 600개 × 45,000원	≒ 27,000	
	401-01 시설비	◎ 가로등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1~8구역) 연간단가	≒ 720,000	
		◎ 도로 조명시설물(가로등, 터널등, 경관조명) 설치 및 교체	≒ 52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을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 노후된 가로등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로미관 개선
- 취약지역에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야간 조도환경 조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보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 재료비
 - 2026. 03. ~ 12. :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 ▶ 시설비
 - 2026. 01. ~ 12. : 연간단가 공사착공 등 운영
 - 2026. 03. : 현장조사 및 설계(가로등 설치 및 교체)
 - 2026. 04. ~ 12. : 가로등 설치 및 교체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8권역 발주 ·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 459 개 · 노후분점함 및 점멸기 교체 : 8대
2024	·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8권역 발주 ·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 185개 ·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 829m
2025	·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8권역 발주 · 운양지하차도 터널등 421개 교체 · 노후분점함 및 점멸기 교체 : 2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40,000	2,029,081	-	10,919	
2024	1,712,000	1,708,745	-	3,254	
2025	1,892,000	1,745,646	-	146,35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4
-----	-------	------------	-----	----------	----	------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보조)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국지도 78호선 외 1개소
사업규모	LED 가로등 60개소 교체		
사업목적	가로등,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통한 교통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제14조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5,000	120,000	120,000	0	0	0	60,000	-60,000	
국비		0						0	
도비	125,000	120,000	120,000				60,000	-60,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 60개소 × 1,000,000원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 노후된 가로등기구 교체로 도로 미관 개선 및 에너지 절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4 : 현장조사 및 설계
 - 2026. 5. ~ 6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국지도 56호선 가로등 교체(85개소) · 국지도 78호선 가로등 교체(70개소)
2024	· 지방도 356호선 외 1개소 가로등 교체(160개소)
2025	· 국지도 56호선 외 1개소 노후 점멸기 교체(260개) · 지방도 356호선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5,000	140,710	-	4,290	
2024	125,000	113,655	-	11,345	
2025	120,000	107,567	-	12,43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4
-----	-------	------------	-----	----------	----	------

지하차도 안전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지하차도 9개소 및 터널 2개소
사업규모		관내 지하차도 9개소 및 터널 2개소 유지·관리		
사업목적		도로시설물 중 지하차도, 터널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000	160,330	100,000	0	60,330	0	420,000	259,6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000	160,330	100,000		60,330		420,000	259,6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0	
지하차도 안전관리	401-01 시설비	◎ 지하차도 및 터널 상시 유지보수공사 ◎ 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	= 120,000 = 300,000	

□ 예산요구 사유

- 타 지자체 웅벽, 사면 붕괴 사고로 긴급 점검 및 보강이 확대됨에 따라, 지하차도·터널의 즉각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장비 필요
- 지하차도·터널 전담 유지보수공사와 노후 신축이음 교체를 실시하여 폭증하는 도로 이용자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지하차도 신축이음 평균 내구연한 5년)

□ 예산증감 사유

- 지하차도 9개소, 터널 2개소에 대한 노후 신축이음 교체 및 보수, 배수로 준설, 포트홀, 시설물 균열 보수 등 별도 유지비용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지하차도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 2026. 04. ~ 06. : 지하차도 신축이음 정비 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운양지하차도 제트팬 점검용역 - 장기지하차도 내 점검용 안전난간 설치
2024	- 장기지하차도 제트팬 점검용역
2025	- 지하차도 제트팬 성능검증 용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9,076	119,075		1	
2024	56,000	49,437		16,563	
2025	160,330	86,188	-	74,1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전화	4583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살포기 55대, 제설기 5대, 자동염수분사장치 30개소		
사업목적		살포기, 제설삽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 및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422,150	2,073,903	173,900	0	0	1,900,003	158,000	-1,915,90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22,150	2,073,903	173,900			1,900,003	158,000	-1,915,90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8,0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 용역(소규모 수리)	= 14,400	
		◎ 제설근무자 피복비 : 180,000원*30명	= 5,400	
	201-02 공공운영비	◎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유지관리 : 800,000원*60대	= 48,000	
		◎ '25~'26년 제설차량 유류비 지급 : 200,000원*51대	= 10,200	
		◎ '25~'26년 읍면동 마을제설반 트랙터 유류대 지급	= 35,000	
		◎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GPS장치 제설잔잔지 공공요금 : 3,750,000원*12개월	= 45,000	

□ 예산요구 사유

- 설해 대비 원활한 도로환경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대비 예산
-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등) 유지관리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제설장비 유류비 등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제설장비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 관리
 - 2026. 01. ~ 2026. 03.: 제설차량 유류비 지급
 - 2026. 04.: 마을제설반 유류대 재배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살포기 57대, 제설기 12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29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2024	· 살포기 48대, 제설기 17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29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2025	· 살포기 54대, 제설기 2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30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1,547	1,061,878	1,651,374	118,295	
2024	3,073,524	1,364,358	1,569,390	139,776	
2025	3,643,293	1,412,388	-	2,230,9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시설비)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자동염수분사장치 30개소		
사업목적		동절기 원활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을 위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및 수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0,000	50,000	0	0	0	50,000	35,000	-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	50,000				50,000	35,000	-15,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0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401-01 시설비	◎ 자동염수분사장치 수리 : 1식 =	35,000	

□ 예산요구 사유

- 강설 시 사전 염수분사장치 작동을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제설제 포대 폐기물 처리 미반영(26년 추경예산 반영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및 수리
 - 2026. 05.: 제설제 포대 폐기물 처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염수 교반기 보수
2024	· 누산IC 자동염수살포장치 이설공사 완료 · 교량 3개소(하나교, 전호교, 백운교) 자동염수살포장치 전면수리공사 완료 · 걸포기지 제설제 절개 플랫폼 설치공사 완료 · 자동염수분사장치 14개소 수리 · '23~24년 겨울철 제설작업 종료에 따른 제설제 포대 폐기물 처리
2025	· 자동염수분사장치 14개소 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0	3,410	214,067	22,523	
2024	254,067	204,288	40,000	9,779	
2025	90,000	31,136	-	58,86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자산취득비)

사업기간		2026. 1. ~ 9.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살포기(15톤 3대), 제설기(15톤 4대)		
사업목적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를 통한 원활한 제설작업 실시 및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8,300	570,700	296,000	0	0	274,700	249,000	-321,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8,300	570,700	296,000			274,700	249,000	-321,7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9,0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제설장비(살포기) 구입 : 15톤 살포기 63,000,000원*3대 ◎ 제설장비(제설기) 구입 : 15톤 제설기 15,000,000원*4대	= 189,000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노후 제설장비 교체

□ 예산증감 사유

- 노후 제설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제설장비 구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톤 살포기 2대, 트랙터용 제설삽날 15대 구매 · 5톤 살포기 2대, 1톤 살포기 2대, 5톤 삽날 2대 구매 · 포대 절개기 2대 구매
2024	· 트랙터용 제설삽날 6대 구매 · 제설용액제조용 약품 탱크 구매 · 15톤 살포기 2대, 15톤 삽날 1대 구매
2025	· 고압살수장치 1대 구매 · 15톤 살포기 6대, 15톤 삽날 2대 구매 · 15톤 살포기 1대 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5,283	155,760	17,192	2,331	
2024	255,492	177,462	78,030	-	
2025	648,731	365,090	-	283,6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운영

사업기간		2026. 4. ~ 11.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관내 법정 도로 인도, 보행자도로 등 제초 및 잡목 제거		
사업목적		신속한 인도 및 도로변 제초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311	95,502	95,502	0	0	0	102,342	6,8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8,311	95,502	95,502				102,342	6,8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2,342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도로환경 신속대응반 인건비 ・ 기본급 : 11,730원*8시간*4명*180일 = 67,565 ・ 유급휴일수당 : 93,840원*4명*40일 = 15,015 ・ 4대보험료 : 82,580,000원*14% = 11,562 ・ 피복비 : 140,000원*4명 = 560		2026년 생활임금 반영
	201-01 사무관리비	◎ 특수건강검진 : 130,000원*4명*2회 = 1,040 ◎ 안전용품 구입 : 200,000원*4명 = 800 ◎ 근로자 휴게실 물품 구입 : 100,000원*8개월 = 800 ◎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 : 4,000,000원 = 4,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노후 장비 교체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2021.10. 찾아가는 시장실 현장건의(보도블럭 등 제초 요청)에 따른 추진계획 보고
- 인도, 보행자도로 등 제초 및 가지치기 등 통행 불편 요소에 대한 신속민원 처리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 04. ~ 11. : 기간제근로자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보행자 도로, 인도 등 예초 및 폐기물 처리
2024	보행자 도로, 인도 등 예초, 수목정비 및 폐기물 처리, 과적단속 보조
2025	보행자 도로, 인도 등 예초, 수목정비 및 폐기물 처리, 과적단속 보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6,024	85,678		346	
2024	98,311	88,625	-	9,685	
2025	95,502	82,780	-	12,7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시설6급 최호선	전화	4592
-----	-------	------------	-----	----------	----	------

가로환경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관내 법정 도로변 제초 및 잡목 제거		
사업목적		시민 및 운전자의 통행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88,000	613,000	613,000	0	0	0	500,000	-11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8,000	613,000	613,000				500,000	-113,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0	
가로환경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생활권역 도로변 환경정비(연간단가) : 200,000,000원*2개 권역 = 400,000 ◎ 광역도로변 환경정비(연간단가) : 100,000,000원*1개 권역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 제초, 가지치기 등 도로 환경 정비
- 단순 제초 작업 뿐 아니라 도시화 확장에 따른 도시지역 미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증가

□ 예산증감 사유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를 통해 과속방지턱 시설을 포함하여 사업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02 : 추진 계획 수립
 - 2026.03 : 현장 조사 및 실시 설계
 - 2026.04~2026.11 : 사업 집행
 - 2026.12 : 사업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광역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2개 권역) - 생활권역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4개 권역) - 위험수목 정비공사 등 16개 공사 준공
2024	- 생활권역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3개 권역) - 상반기 도로변 환경정비 긴급처리 공사 등 2개 공사 집행
2025	- 생활권역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2개 권역) - 광역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집행 - 2025년 하반기 법정도로 환경정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50,000	1,148,020	101,980	-	
2024	489,980	474,010	15,970	-	과속방지턱 포함
2025	628,970	548,711	-	80,25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시설6급 최호선	전화	4592
-----	-------	------------	-----	----------	----	------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관내 노점상 47개소 및 관내 법정도로 상 적치물		
사업목적	관내 법정도로 상 불법 적치물을 단속 및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61조 제1항, 제75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4,060	241,110	241,110	0	0	0	243,860	2,7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4,060	241,110	241,110				243,860	2,7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3,860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	201-01 사무관리비	◎ 적치장 CCTV 유지비 :	55,000원*12월 =	660
		◎ 행정대집행 장비(지게차, 화물차) 임차 :	500,000원 * 12건 =	6,000
		◎ 적치장 펜스 수선 :	400,000원 * 2경간 =	800
		◎ 적치장 폐기물 처리 :	1,500,000원 =	1,500
		◎ 안전용품 유지관리(소화기, 조끼 등) :	200,000원 =	200
		◎ 측량 수수료 :	850,000원 * 2개소 =	1,700
	401-01 시설비	◎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노무비, 경비 등) :	233,000,000원 =	233,000

□ 예산요구 사유

- 법정도로 내 인도 등 보행로 상 불법 적치물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원활한 보도 이용 확보
- 고정형 노점(인도 점용)에 대한 일일 순찰 및 단속을 위한 인력 필요
- 일시형 노점(좌판상, 차량노점)의 특성 상 민원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필요 및 불규칙한 위치에서 반복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해당 위치의 지속 순찰 및 단속 인력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스티커 제작 완료, 펜스 유지수선비용 및 안전용품 유지관리비 등 감액
- 적치장 폐기물 처리비, 인건비 상승분, 대집행 임차비 등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계획 보고 및 집행 추진
 - 2025. 12. : 수의계약
 - 2026. 01. : 착수
 - 2026. 12.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행정대집행 13건(노점: 1건/ 기타: 12건), 과태료 부과 38건, 순찰 및 단속 35,610건(용역 2팀 / 24년부터 1팀) · 정비: 노점 1건 / 차량노점 800건 / 좌판상 600건 / 기타 3,000건
2024	· 행정대집행 11건(노점: 3건/ 기타: 8건), 과태료 부과 15건, 순찰 및 단속 22,608건 · 정비: 노점 3건 / 차량노점 950건 / 좌판상 396건 / 기타 1,744건
2025	· 행정대집행 12건(노점: 3건/ 기타: 9건), 과태료 부과 17건, 순찰 및 단속 17,275건 · 정비: 노점 3건 / 차량노점 860건 / 좌판상 420건 / 기타 1,30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5,000	340,601	-	64,399	
2024	244,060	187,160	-	56,900	
2025	241,110	204,670	-	36,44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9급 김태현	전화	4595
-----	-------	------------	-----	----------	----	------

운행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이동 단속		
사업목적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77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820	5,060	5,060	0	0	0	2,900	-2,1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20	5,060	5,060				2,900	-2,1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900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단속	201-01 사무관리비	◎ 과적차량 단속원 근무복 구입 : 140,000원*10명 = 1,400 ◎ 단속장비(측중기) 검사 : 400,000원*1회 = 400 ◎ 과적차량 단속장비 유지관리 : 500,000원 = 500 ◎ 단속원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 : 600,000원 = 600		

□ 예산요구 사유

- '20.05.26. 시군종합평가 신규지표 확정
- 단속원 근무복, 안전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편성
※ 근거 : (국토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21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1 : 시군종합평가 목표 달성 완료
 - 2026.01~2026.02 : 추진계획 수립
 - 2026.03~2026.11 : 단속 업무 추진
 - 2026.12 : 시군종합평가 최종 평가
 - 2026.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운행제한 위반(과적) 의심차량 72대 검차 완료(목표 60대)
2024	운행제한 위반(과적) 의심차량 75대 검차 완료(목표 60대)
2025	운행제한 위반(과적) 의심차량 101대 검차 완료(목표 8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20	5,799	-	21	
2024	5,820	5,819	-	1	
2025	5,060	3,169		1,89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시설6급 최호선	전화	4592
-----	-------	------------	-----	----------	----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자전거도로
사업규모	관내 자전거도로(총연장 209.48km)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거치대, 표지판, 공기주입기 등)		
사업목적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정비한다.	
	해당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80,000	480,000	480,000	0	0	0	510,000	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0,000	480,000	480,000				510,000	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10,000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시설물 설치(거치대, 표지판 정비 등) = 480,000 ・ 소파보수 : L=1.8km, B=1.0m(1,800㎡*250,000원=450,000,000원) ・ 거치대 : 25조*400,000원=10,000,000원 ・ 표지판 : 1식*15,000,000원=15,000,000원 ・ 공기주입기 등 시설물 정비 : 1식*5,000,000원 ◎ 자전거도로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 30,000 ・ 예초작업 등 : 1회*30,000,000원=30,000,000원		

□ 예산요구 사유

-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및 정비 필요
-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거치대·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시설물 관련 요청 민원 대응
- 자전거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변 제초, 가지치기 등 도로 환경 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규 자전거도로 개설 등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 대상 자전거도로 증가
-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증가, 거치대·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시설물 수리 민원 증가
- 도로변 환경정비(제초작업 등) 예산 감소에 따라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수행하면서 민원다발지(전류리 포구, 전호리 전호교 등) 제초(2회 이상)를 위한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2.: 연간단가 공사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 02. ~ 12.: 연간단가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 04. ~ 11.: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 시설물 정비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 12.: 연간단가 공사 정산준공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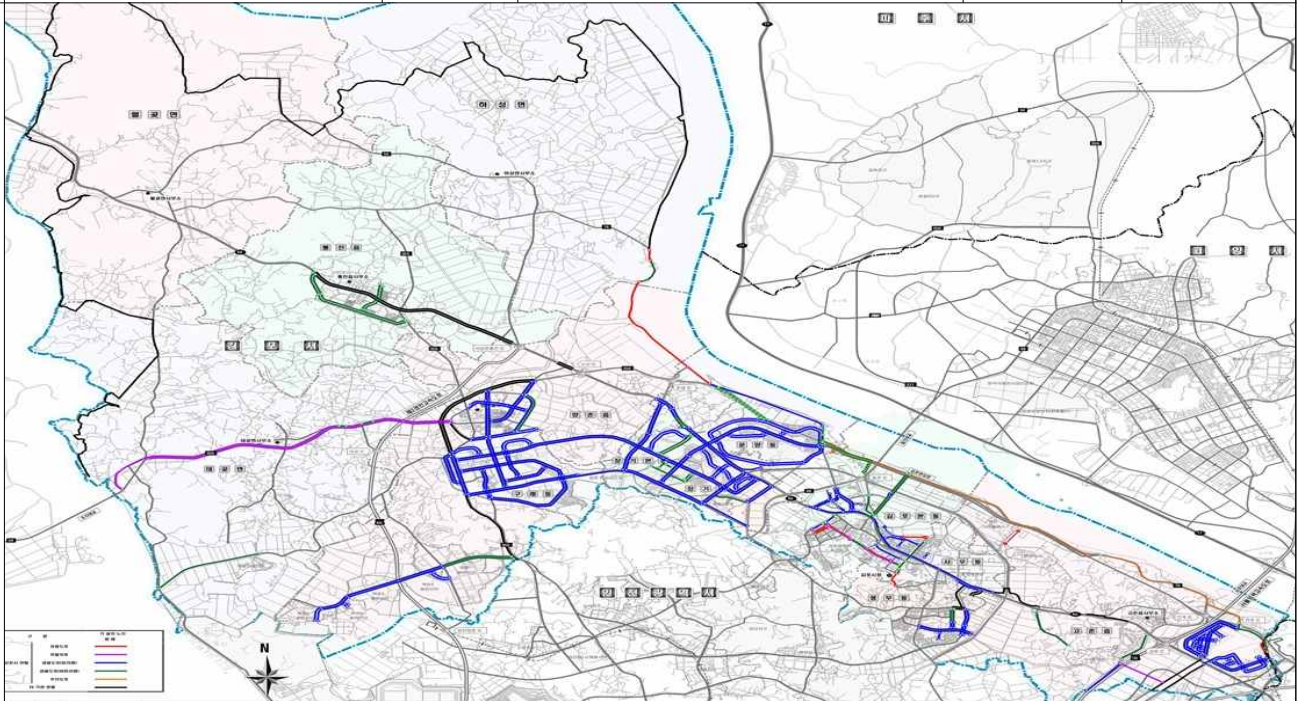
2023	·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등) 설치 · 김포시 관내 자전거도로 연간단가 공사 (L=6.0km, B=1.5~2.4m) · 자전거도로 위험구간(국지도78호선) 재정비 (L=3.9km, B=2.4~8.2m)
2024	·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안내표지판) 설치 · 김포시 관내 자전거도로 연간단가 공사 (L=1.92km, B=1.0m) · 서촌교 하부 자전거 횡단로(데크) 설치 공사 (L=106m, B=3m) · 자전거도로 예초 및 잡목제거 공사 (L=12.4km)
2025	· 자전거 편의시설(거치대, 공기주입기) 정비 · 김포시 관내 자전거도로 연간단가 공사 (L=1.92km, B=1.0m) · 자전거도로(전류리 포구 ~ 전호리 구간) 도로변 환경정비 공사 (L=16.3km) · 자전거길 시설물(데크) 정비·보수 공사 (7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48,554	2,285,369	333,892	29,293	
2024	813,892	738,749	36,263	38,880	
2025	516,263	79,306	-	436,95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관내 자전거도로(총연장 209.48km)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	본예산 요구액 (천원)	510,000
부기명 (세부사업)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위치	관내 자전거도로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현주영	담당자	행정7급 김형남 시설9급 김수민	전화	4552 4553
-----	-------	-------------	-----	----------------------	----	--------------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평화누리자전거길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평화누리자전거길 61km		
사업목적	평화누리자전거길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 인프라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호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항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그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8,409	175,300	175,300	0	0	0	95,202	-80,098	
국비		0						0	
도비	39,682	52,590	52,590				28,561	-24,029	
시비	158,727	122,710	122,710				66,641	-56,0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5,202	
평화누리길 기반시설보강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및 관리용역비 · 일반수용비 5,202,000원 = · 화장실 청소 등 유지관리 2,100,000원x12개월=24,000,000원	29,202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 공과금(전기,수도 등) 등 10,000,000원 = · 편의시설(화장실, 쉼터 등) 유지보수 10,000,000원 · 자전거길 노면정비 5,000,000원x2회=10,000,000원	30,000	
	401-01 시설비	◎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 · 제초작업 및 도로보수 22,000,000원 =	22,000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 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14,000,000원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평화누리자전거길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 인프라 제공
- 평화누리자전거길 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지역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 보수 위탁사업비 지급(경기관광공사)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보조사업 분담 내시 비율(3:7) 따른 시 예산 편성
- 도비보조금 감소(금52,590천원 → 금28,516천원)에 따른 시설비 및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12. : 평화누리자전거길 기반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평화누리자전거길 기반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경기관광공사 위탁)
2024	· 평화누리자전거길 기반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경기관광공사 위탁)
2025	· 평화누리 자전거길 공용화장실 정비 · 평화누리 자전거길 환경정비 공사 추진 (제초) ·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금25,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8,409	198,409	-	-	
2024	198,409	198,409	-	-	
2025	175,300	62,279	-	113,02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평화누리자전거길 61km	본예산 요구액 (천원)	95,202
부기명 (세부사업)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평화누리자전거길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현주영	담당자	행정7급 김형남 시설9급 김수민	전화	4552 4553
-----	-------	-------------	-----	----------------------	----	--------------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사업기간	2026. 2. ~ 11.	사업위치	관내 초·중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학교 대상 약12회		
사업목적	초·중학교 학생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방법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위임규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7,406	0	0	0	0	17,406	0	
국비		0						0	
도비		5,222						-5,222	
시비		12,184					17,406	5,22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406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201-03 행사운영비	◎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 주강사 수당 : 80,000원*28시간=2,240,000원 · 주강사 실습 추가수당 : 40,000원*42시간=1,680,000원 · 주강사 이동수당 : 40,000원*12회=480,000원 · 보조강사 수당 : 60,000원*3인*12시간=2,160,000원 · 보조강사 실습 추가수당 : 30,000원*3인*42시간=3,780,000원 · 보조강사 이동수당 : 30,000원*3인*12회=1,080,000원 · 교육기자재 운반비 : 100,000원*12회=1,200,000원 · 교육기자재 임차비 : 80,000원*12회=960,000원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3,826,000원	= 17,406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학생들에게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무면허운전, 동승자탑승 등)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PM 이용요건 · 안전수칙 등 추가 교육 실시

□ 예산증감 사유

- '24년 도비보조사업(도비 30%)으로 도비가 교부되어 '25년 사업추진(명시이월) 하였으나 '26년 도비 보조사업 미추진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시자체예산 편성
- 관내 학교 대상 자전거안전교육 수요조사 결과 20개교 희망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12개교만 교육 진행하는 상황(수요대비 60%)으로, 비슷한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12.: 관내 초·중학교 수요조사 실시
 - 2026. 02. ~ 03.: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위탁용역 집행 및 계약
 - 2026. 03. ~ 11.: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위탁용역 실시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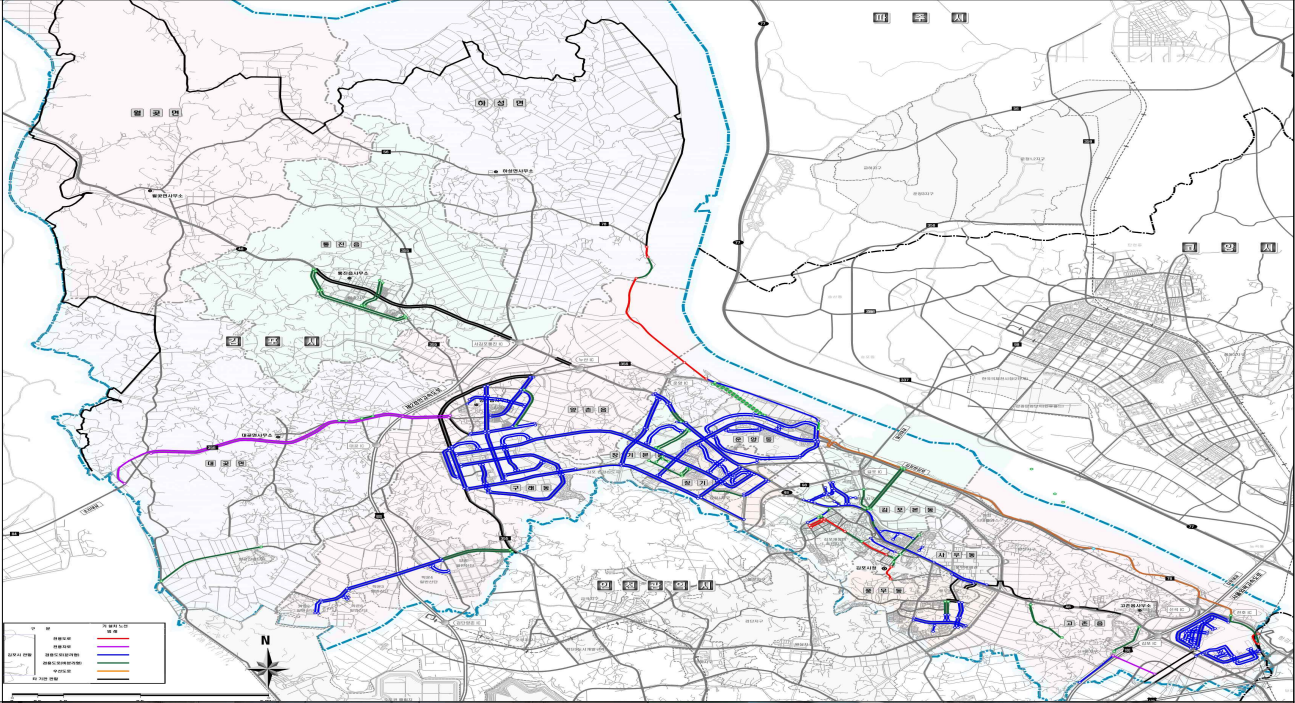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 2024년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도비교부(도비 30%, '24.02.19.) ·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예산 전액 명시이월 결정(2회 추경 지연)
2025	·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위탁용역 집행(12개교 2,825명 교육)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7,406	-	17,406	-	
2025	17,406	17,406	-	-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관내 초·중학교 대상 약12회	본예산 요구액 (천원)	17,406
부기명 (세부사업)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초·중학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현주영	담당자	시설9급 김수민	전화	4553
-----	-------	-------------	-----	----------	----	------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운영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감암로 125-1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1개 운영		
사업목적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공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하는 보관소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9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700	3,700	0	0	0	3,240	-4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00	3,700				3,240	-4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240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170,000원*12월 =	2,040	
		◎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 70,000원*12월 =	840	
	201-02 공공운영비	◎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요금 : 30,000원*12월 =	360	

□ 예산요구 사유

- 공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및 견인 실시에 따른 견인기기 보관장소 필요.
- 견인기기 보관소에 보관 중인 이동장치의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및 견인기기 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무인경비장비(CCTV 등) 설치 완료에 따른 공공운영비 예산 감액
-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의 최소 필요 예산 신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공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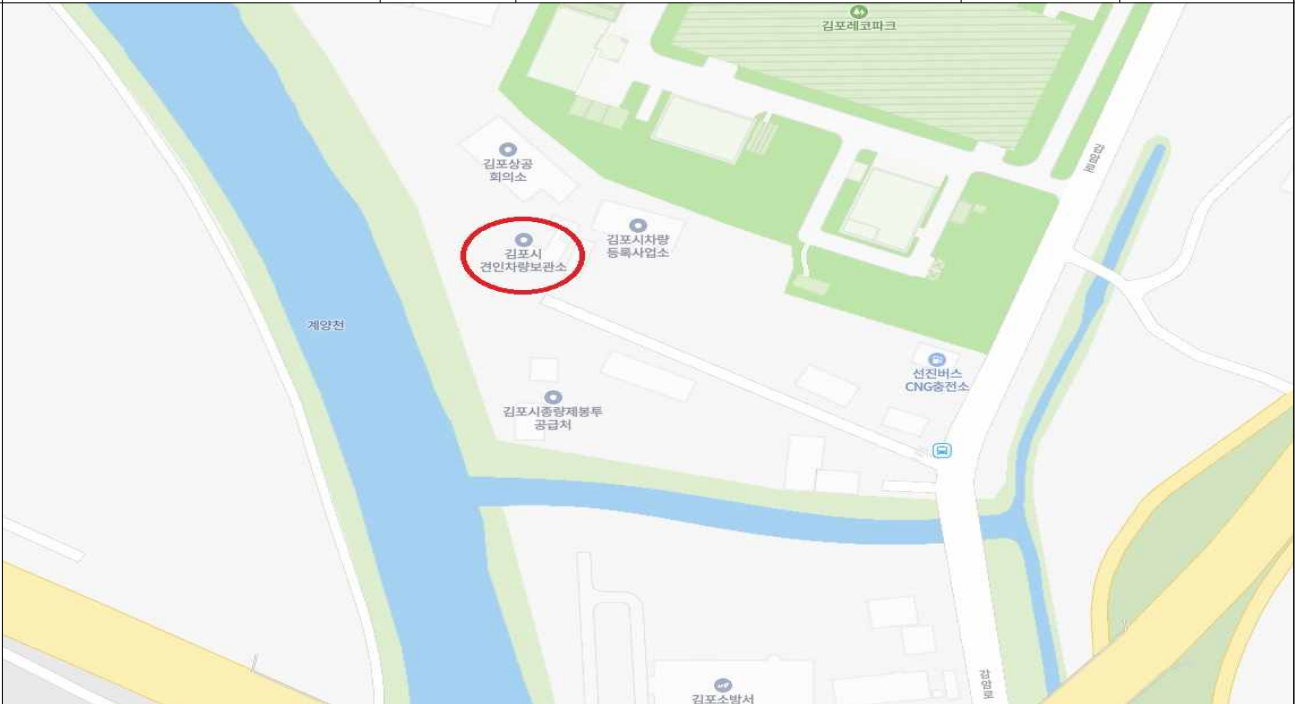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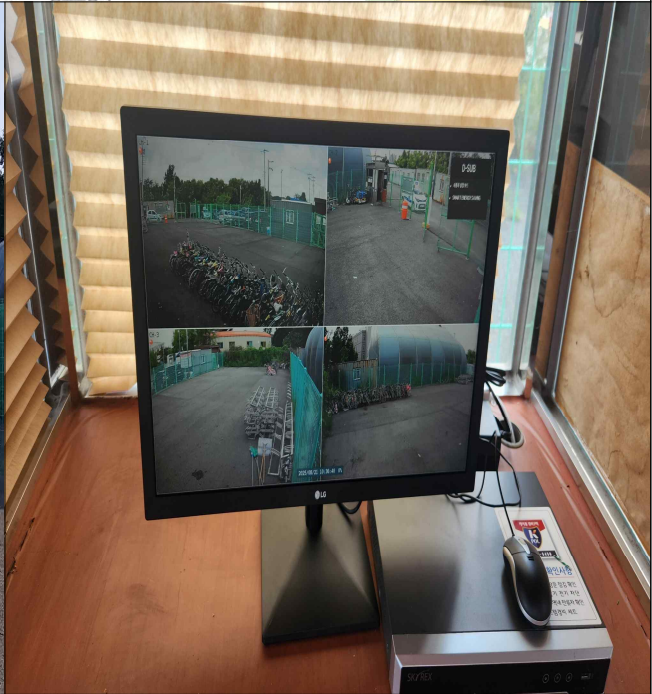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700	3,373	-	32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1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3,240
부기명 (세부사업)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운영	사업위치	감암로 125-1		
위치도					
현장사진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불법주정차 견인기기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현주영	담당자	행정7급 김형남	전화	4552
-----	-------	-------------	-----	----------	----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봉화로182번길 18, 4층
사업규모	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4층(도로관리과 청사)		
사업목적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933	34,668	34,668	0	0	0	75,589	40,92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9,933	34,668	34,668				75,589	40,92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5,589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01-04 인건비	◎ 청사청소원 인건비	12,813	2026년 생활임금 적용
		· 기본급 : 11,730원*3시간*1명*248일	= 8,728	
		· 유급휴일수당 : 35,190원*1명*66일	= 2,323	
		· 명절휴가비 : 187,500원*1명*1회	= 188	
	201-01 사무관리비	◎ 청사청소원 4대보험료 : 11,239,000원*14%	= 1,574	
		◎ 정수기 임차료 : 100,000원*12월	= 1,200	
		◎ 무인경비시스템 : 495,000원*12월	= 5,940	
		◎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133,000원*12월	= 1,596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 10,000,000원	= 10,000	
		◎ 전기요금 : 3,500,000원*12월	= 42,000	
		◎ 상하수도요금 : 170,000원*12월	= 2,040	

□ 예산요구 사유

- 도로관리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청소원 채용, 무인경비 시스템 이용, 공공요금 납부
- 청사 이전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사 노후로 인한 소규모 보수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도로관리과 이전(북변자주식공영주차장 4층)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 범위 증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승인
일자	2025.11. 반영										2025.8.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12.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 2026.01.~12. : 공공요금 납부(매월) 및 청사 소규모 수선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사청소원 인건비 지급 · 무인경비 등 청사운영 ·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 소규모 수선공사	12,706천원 7,932천원 7,428천원 6,764천원
2024	· 청사청소원 인건비 지급 · 무인경비 등 청사운영 ·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3,138천원 8,310천원 7,485천원
2025	· 청사청소원 인건비 지급 · 무인경비 등 청사운영 ·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9,150천원 8,785천원 7,2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055	34,830		3,225	
2024	29,933	28,933		1,000	
2025	34,668	25,202		9,46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김형철	담당자	행정6급 김민아	전화	4562
-----	-------	------------	-----	----------	----	------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보수원 사무실 공공요금 납부, 근로 환경개선 물품 구매 등		
사업목적		도로보수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442	24,186	24,186	0	0	0	30,440	6,25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442	24,186	24,186				30,440	6,25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440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 교육비 : 300,000원*24시간 = 7,200 ◎ 작업환경측정비 : 1,300,000원*1회 = 1,300 ◎ 특수건강검진비 : 130,000원*17명*2회 = 4,420 ◎ 정맥인식기 유지관리 : 120,000원*12개월 = 1,440 ◎ 통합보안시스템 및 무인경비 : 200,000원*12개월 = 2,400 ◎ 정수기 등 임대료 : 145,000원*12개월 = 1,740 ◎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 : 3,000,000원 = 3,000		
	201-02 공공운영비	◎ 상하수도 요금 : 400,000원*12개월 = 4,800 ◎ 통신요금(인터넷 등) : 45,000원*12개월 = 540 ◎ 공용 휴대폰 요금 : 60,000원*5대*12개월 = 3,600		

□ 예산요구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등 실시
- 잦은 호우 등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및 공공요금 등 사용량 증가와 요금 인상
-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용 휴대폰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도로보수원 특수건강검진비 및 산업안전 교육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증가
-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12. :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2026.01.~12. : 상하수도 및 통신비 등 공공요금 납부(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강사비 지급(1,0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 및 정수기 이용료 납부(3,219천원) · 상하수도 및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3,615천원) · 출퇴근 정맥인식기 및 에어컨 청소등(1,870천원)
2024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강사료 및 건강검진비 등 지급(4,990천원) · 공공요금, 무인경비, 수리수선비 등 지급(17,280천원)
2025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강사료 및 건강검진비 등 지급(11,948천원) · 공공요금, 무인경비, 수리수선비 등 지급(6,45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986	14,911		7,075	
2024	22,442	22,270	-	172	
2025	24,186	18,399	-	5,78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행정9급 정영익	전화	4576
-----	-------	------------	-----	----------	----	------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돌문로 도로환경개선)

사업기간		2026. 1. ~ 6.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930-1 일원 도로
사업규모		배수시설 정비 및 측구 보수공사		
사업목적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도로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408,308	0	0	408,308	0	105,400	-302,9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8,308			408,308		105,400	-302,90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5,4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돌문로 도로환경개선) · 배수시설 설치 : 400,000원/m(단가) * 263.5m(길이) =	105,400	

※ 매칭비율(6.5:3.5) : 한국공항공사 68,500 김포시 36,900

□ 예산요구 사유

- 소음피해 지역 내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침수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 예산지원[매칭사업(6.5:3.5)]을 통해 돌문로 도로환경개선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03.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6.04. ~ 2026.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항공기 소음피해(김포본동 도로재포장) 주민지원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8,308	392,112	-	16,196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배수시설 설치 : 263.5m	본예산 예산요구액 (천원)	105,400
부기명 (세부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돌문로 도로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동 930-1번지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8급 이영수	전화	4574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개선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35개소) 및 주차금지구역 신규설치(2개소)		
사업목적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방해, 교통안전 저해 등에 대한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0	0	0	0	64,000	6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0	0	0	0	64,000	64,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4,000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개선	401-01 시설비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존 조성공사 = 36,000 · 주차존 신규설치 : 100㎡(5개소)*90,000원=9,000,000원 · 기조성 주차존 정비 : 600㎡(30개소)*45,000원=27,000,000원 ◎ 도시철도 역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보도 설치 공사 = 28,000 · 싸인블록 포장 : 2개소*14,000,000원=28,000,000원		

□ 예산요구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로 보행자 통행 방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교통안전 및 도로미관 저해 등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 발생
- 2025년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장님 지시사항과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성 대두
- 기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보수 및 확충을 통해 이용자들의 주차구역 이용을 유도하고, 김포도시철도 역사 출입구에 주차금지구역 보도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35개소) 추진(36,000천원)
- 도시철도 역사 진출입구 일원 주차금지구역 보도 설치(2개소) 추진(28,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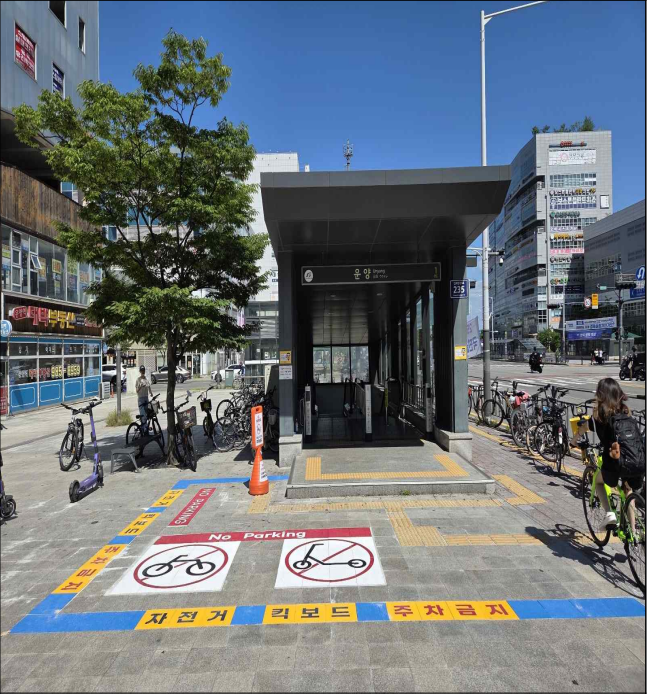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일자	2025.11. 반영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03.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주차금지구역 설치 및 보수구역 현장확인
 - 2026. 04. ~ 12.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주차금지구역 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5개소) 및 정비(30개소) ·도시철도 역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설치(2개소)	본예산 요구액 (천원)	64,000
부기명 (세부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개선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현장사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사전거문화팀장	현주영	담당자	행정7급 김형남 시설9급 김수민	전화	4552 4553
-----	-------	---------	-----	-----	----------------------	----	--------------

도로안전시설 설치

사업기간		2026.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차선분리대, 반사경, 보차도휼스, 가드레일) 관리		
사업목적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85,800	580,000	440,000	0	0	140,000	440,000	-140,000	
국비		0						0	
도비								0	
시비	585,800	580,000	440,000			140,000	440,000	-14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40,000	
교통안전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	= 200,000	
		· 차선분리대 : 350경간 × 160,000원	= 56,000	
		· 보행자용방호울타리 : 180경간 × 350,000원	= 63,000	
		· 시선유도봉 : 845개 × 16,000원	= 13,500	
		· 반사경 : 450개 × 150,000원	= 67,500	
		◎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1~2)구역 : 120,000,000 * 2식	= 24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민원 지속 증가
- 관내 도로안전시설물의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보수 및 교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도시 지역 등 내구 연한이 경과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및 재설치 민원 증가
 - 차선분리대의 경우 초기 설치 당시 연결형 구조로, 시 전역에 걸쳐 대규모 보수 필요
- 대규모의 개발사업 준공으로,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대상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12.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
 - 2026. 01. ~ 12. : 연간단가 공사착공 등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교통안전표지판 360개 교체 및 정비 - 차선분리대 280경간 구입, U볼라드 20개 구입 - 설치 및 철거(차선분리대 450경간, 보차도휀스 145경간, 차선규제봉 890개)
2024	-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시선유도봉 1,610개, 반사경 400개) - 설치 및 철거 (차선분리대 510경간, 보차도휀스 240경간, 가드레일 20경간)
2025	-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차선분리대 578경간, 시선유도봉 1500개, 반사경 500개, 보행자용방호울타리 115경간)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75,892	1,202,866	-	73,026	
2024	585,800	417,662	-	168,137	
2025	580,000	498,130	-	81,8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행정6급 배명선 공업8급 윤태주 시설9급 김재현 시설9급 최대한	전화	4582 4584 4585 4586
-----	-------	------------	-----	--	----	------------------------------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차량등록과
요 구 액	1,276,08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E-B)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26,048	195,080	195,080	0	215,080	20,000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번호판교부처 등 임대료	16,000	15,000	15,000	0	15,000	0	
수수료수입/증지수입 ◎자동차등록업무등 수수료	210,000	180,000	180,000	0	200,000	20,000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48	80	80	0	80	0	
임시적세외수입	19,200	16,800	19,000	-2,200	18,000	1,200	
기타수입/그외수입 ◎폐번호판매각대금 및 임대사업자공공요금	16,000	15,000	15,000	0	16,000	1,000	폐번호판 매각개수 증가에 따른 증액
기타수입/그외수입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충전수익	3,200	1,800	4,000	-2,200	2,000	200	2025년도 수준의 충전수익 발생 예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74,500	1,053,000	1,058,000	-5,000	1,043,000	-10,000	
과징금/과징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1,500	3,000	3,000	0	3,000	0	
과태료/차량관련과태료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등 과태료	99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	
과태료/기타과태료 ◎건설기계관리위반 과태료	58,000	30,000	30,000		30,000	0	
벌칙금/벌칙금 ◎무보험운행 및 자동차이전 등록 벌칙금	25,000	20,000	25,000	-5,000	10,000	-10,000	벌칙금 미납 시 전액 삭감 후 검찰 송치 건수 증가에 따른 감액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 비공모	
보조사업자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대표자	이명희	
사업목적		김포시민 및 취약계층 소유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2"=""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td><td>재원</td><td colspan="/>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템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1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요구액 (F)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F-B)	비고
		최종예산액 (A=B+C+D+E)	본예산 (B)	1회추경 (C)	2회추경 (D)	3회추경 (E)			
계	10,950	14,000	14,000	0	0	0	14,000	0	
시비	5,950	7,000	7,000				7,000	0	
자부담	5,000	7,000	7,000				7,00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026년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4,000	7,000	7,000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참여인원: 200명 · 지원단체: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 · 사업내용: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보충 · 산출근거 - 대여비 : 천막, 의자, 탁자 등 = 2,200 2,200 - 홍보비 : 현수막 80,000원 × 30장 = 2,400 2,400 - 서식인쇄 : 점검표, 유인물 등 = 750 750 - 연막소독 기계 : 연무탈취기 200,000원 × 6대 = 1,200 1,200 - 연막소독 약품 : 탈취제 30,000원 × 12병 = 360 360 - 타이어 공구 : 11,250원 × 8세트 = 90 90 - 소모품 구입 : 오일, 부동액, 필터 등 구입 = 5,800 5,800 - 식대 : 8,960원 × 134명 = 1,200 1,200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소유의 차량 무상 점검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에 기여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 업 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 시 : 2023.09.17.(일) 09:30 ~ 16: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67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2024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 업 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 시 : 2024.10.13.(일) 09:30 ~ 15: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33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2025	○ 보조사업자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카포스) ○ 추진실적 - 사 업 명 :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 일 시 : 2025.09.21.(일) 09:00 ~ 16:00 - 참여인원 : 전문정비사 100여명 - 행사내용 : 김포시민 차량 500여대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및 보충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7,000	7,000	10,000	17,000	7,000	10,000	0	0	0	
2024	10,950	5,950	5,000	10,355	5,546	4,809	595	404	191	
2025	14,000	7,000	7,000	14,000	7,000	7,000	0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7급 김유진	전화	4903
-----	-------	------------	-----	----------	----	------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업무용 통신기기 2대		
사업목적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를 위한 행정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80	840	840	0	0	0	84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80	840	840				84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40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 통신요금 : 35,000원 × 2대 × 12월 =	840	

□ 예산요구 사유

-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 처리 및 특사경 업무 시 민원인과 잦은 연락 및 사진 전송 등을 위해 업무용 휴대폰 2대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휴대폰 요금 월별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휴대폰 요금 납부(1~12월)
2025	· 휴대폰 요금 납부(1~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0	0	-	0	
2024	780	758	-	22	
2025	840	660	-	1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9급 이우림	전화	4905
-----	-------	------------	-----	----------	----	------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관내 등록 자동차(250,432대) 및 건설기계(5,257대)			
사업목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1항
		①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제1항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신청서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제2항
		②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등 제반 사무를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060	21,380	21,380	0	0	0	25,000	3,6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060	21,380	21,380				25,000	3,6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민원업무용 토너 등 소모품 구입 : 270,000원 × 10대 × 6월 = ·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 100,000원 × 2대 × 6월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소모품 구입 : 2,500원 × 1,880개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유지보수비 : 900,000원 =	16,200 1,200 4,700 900	23,000
	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인증기 구입 : 2,000,000원 × 1대 =	2,000	2,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련 민원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민원 서식 및 소모품 확보
- 일평균 400~500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차량등록 수수료 납부 인증기 1대 추가 필요 (현재 인증기 1대 운영중으로 장비고장 및 장애발생 시 민원 불편사항 발생)

□ 예산증감 사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민원서식 및 소모품의 안정적·지속적 보급을 위한 증액
- 단일장비 운영에 따른 민원집중 시간대 대기시간 증가 및 민원서류 마감 지연 발생 방지를 위한 인증기 1대 추가 구입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事成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서식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 등 구입 : 13,559,9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 2,855,050원 · 인증기 수리비용 지급 : 1,239,700원 · 취득등록세 고지서 제작 : 5,346,000원 · 홍보리플릿 제작 : 1,232,000원 · 초소형 스캐너 구입 : 770,000원
2024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 등 구입 : 12,880,76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 4,573,800원 · 인증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 605,000원 · 취득등록세 고지서 제작 : 7,999,200원
2025	·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 관련 서식 등 구입 : 13,013,45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 4,657,400원 · 인증기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 : 2,544,07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010	25,003	-	7	
2024	26,060	26,059	-	1	
2025	21,380	20,215	-	1,16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서원일	담당자	행정7급 김영섭	전화	4912
-----	-------	------------	-----	----------	----	------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자 및 무보험 운행 수사 대상자		
사업목적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 운행 사건 수사로 신뢰받는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및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5의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5. 시장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및 제48조(과태료) 제3항제1호, 제51조(통고처분) 제1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①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88,620	244,960	220,360	0	0	24,600	220,360	-24,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8,620	244,960	220,360			24,600	220,360	-24,6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0,360	
정기검사· 의무보험제도 확립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서식 인쇄 : 60,000원 × 10상자 × 12월 = 7,200 · 등기 및 문자전송프로그램 유지보수 : 275,000원 × 12월 = 3,300 ·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 : 100,000원 × 1대 × 5회 = 500 · 자동차 취·등록세 서식 인쇄 : 60,000원 × 14상자 × 12월 = 10,080 ·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프로그램 라이선스 : 625,000 × 12월 = 7,500	28,580	
	201-02 공공운영비	· 일반·등기우편요금 : 2,830원 × 4,986건 × 12월 = 169,340 ·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 187원 × 10,000건 × 12월 = 22,440	191,780	

□ 예산요구 사유

-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과태료의 문자알림 메시지 활용을 위한 모바일 고지 시스템 구축
-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통한 세입 증대 및 징수율 제고, 취득유형에 따른 과세표준액 및 세율 적용, 비과세·감면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결정고지를 위한 각종 서식 제작
- 우편발송 내역(일반, 등기) : 보험가입촉구서, 검사경과안내문(명령서), 감경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체납고지서 등 발송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11.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보험 만료 및 검사 유효기간 경과자에게 수시 이행 안내
- 2026. 01. ~ 2026. 12. : 과태료 감경·본부과 매월 고지 및 독촉 기간 경과자에게 체납처분 실시
- 2026. 01. ~ 2026. 12. :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전자고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분기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우편발송 내역(1~12월) : 127,063건 · 우편요금 지급 내역 : 180,272천원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 8,710천원 ·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및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9,858천원 · 우편물봉합기 구입 : 9,400천원
2024	· 우편발송 내역(1~12월) : 115,713건 · 우편요금 지급 내역 : 164,082천원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 7,774천원 ·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및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10,506천원
2025	· 우편발송 내역(1~10월) : 152,450건 · 우편요금 지급 내역 : 181,897천원 · 각종 서식 제작 및 홍보 등 : 16,39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8,120	208,240	-	29,880	
2024	188,620	182,362	-	6,258	
2025	244,960	198,295	-	46,66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장 이재근	담당자	행정6급 장문희 행정9급 서윤진	전화	4927 4929
-----	-------	------------	-----	----------------------	----	--------------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등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사업목적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시민 교통안전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효과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1항, 제2항
		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방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96	16,800	12,096	0	0	4,704	12,096	-4,7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96	16,800	12,096			4,704	12,096	-4,70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096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견인용역 : 84,000원 × 144대 =	12,096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도로 및 사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 견인비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무단방치 견인용역 설계 및 계약
 - 2026. 01. ~ 2026. 12. : 현장 수사 및 견인 용역 실시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단방치차량 견인 119대
2024	· 무단방치차량 견인 133대 ※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교통과에서 이관
2025	· 무단방치차량 견인 144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096	8,568	-	3,528	
2024	12,096	10,055	-	2,041	
2025	16,800	6,441	-	10,35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우종수	전화	4938
-----	-------	-------------	-----	----------	----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업무 지원		
사업목적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방치차량 관리 및 특사경 수사 업무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35호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5.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60	12,600	12,600	0	0	0	12,6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60	12,600	12,600				12,6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60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무보험·무단방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 1,050,000원 × 12월 =	12,600	

□ 예산요구 사유

-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건 접수, 출석요구서 출력, 조사 내용 기록 등을 통해 수사 업무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분기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2024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2025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1~3분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	3,600	-	-	
2024	4,260	4,260	-	-	
2025	12,600	8,824	-	3,77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김명주 행정8급 한영석	전화	4940 4939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내		
사업목적	지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1항
	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1항
	① 김포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096	99,332	92,062	0	6,070	1,200	131,875	32,54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096	99,332	92,062		6,070	1,200	131,875	32,54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1,875	
청사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청사청소원 인건비 - 기본급 : 11,730원 × 1명 × 4시간 × 245일 = 11,496 - 유급휴일수당 : 46,920원 × 1명 × 68일 = 3,191 - 명절휴가비 : 250,000원 × 1명 × 2회 = 500 · 청사청소원 4대보험료 : 15,187,000원 × 14% = 2,126 · 청사청소원 퇴직금 : 15,187,000원 × 1/12 = 1,265	18,578	
	201-01 사무관리비	· 청사관리 소모품 및 보수부품 구입 : 6,400,000원 = 6,400 ·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 42,000원 × 6대 × 12월 = 3,024 · 비데 임차료 : 20,000원 × 5대 × 12월 = 1,200 ·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198,000원 × 12월 = 2,376 ·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 198,000원 × 12월 = 2,376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 181,500원 × 12월 = 2,178 ·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 121,000원 × 12월 = 1,452 · 청사 방역소독비 : 150,000원 × 12회 = 1,800 · 청사 수목전정 및 제초 : 2,500,000원 = 2,500 · 서고 모빌렉 및 기록물 이전 비용 : 15,000,000원 = 15,000	38,306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2,333,000원 × 12월 = 28,000 · 상하수도 요금 : 450,000원 × 12월 = 5,400 · 교통유발부담금 : 400,000원 × 1회 = 400 · 업무배상공제회비 : 1,200,000원 × 1회 = 1,200 ·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 10,000,000원 = 10,000	45,000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청사관리	401-01	·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 17,550,000원	= 17,550	25,294
	시설비	· 청사 승강기 보수공사 : 7,744,000원	= 7,744	
	405-01	·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 4,697,000원	= 4,697	4,697
	자산및물품취득비			

□ 예산요구 사유

- 청사환경 정비 및 관리용역 운영을 통한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
- 공공요금의 적기 납부 및 시설 유지보수 관리,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필요
- 청사 시설물의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대응

□ 예산증감 사유

- 폭우 시 사무실 누수에 따른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예산 편성
- 청사 증축(2009년) 당시 설치한 승강기 부품(인버터)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교체 필요
- 1층 민원실 천장형 에어컨의 잦은 고장(노후화, 2009년 설치)에 따른 민원인 불편 야기 방지를 위한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비 편성(정수 승인:자산관리과-27870(2025.08.21))
- 서고 부족(부서 연간생산기록물: 2,500권(철))에 따른 중봉도서관 철거 모빌렉 일부 이전 설치 및 기록물 이동 용역 비용 편성 ※ 도로관리과 이전에 따른 기존청사 임시서고로 활용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	-	-	2025.8. 반영	-	-	-	-	2025.9.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청사 유지관리 관련 개별 용역 계약
 - 2026. 01. ~ 2026. 12. : 청사 유지관리 용역 수수료 지급 및 청사 청소원 임금 지급
 - 2026. 01. ~ 2026. 06. : 청사 방수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서고 모빌렉 이전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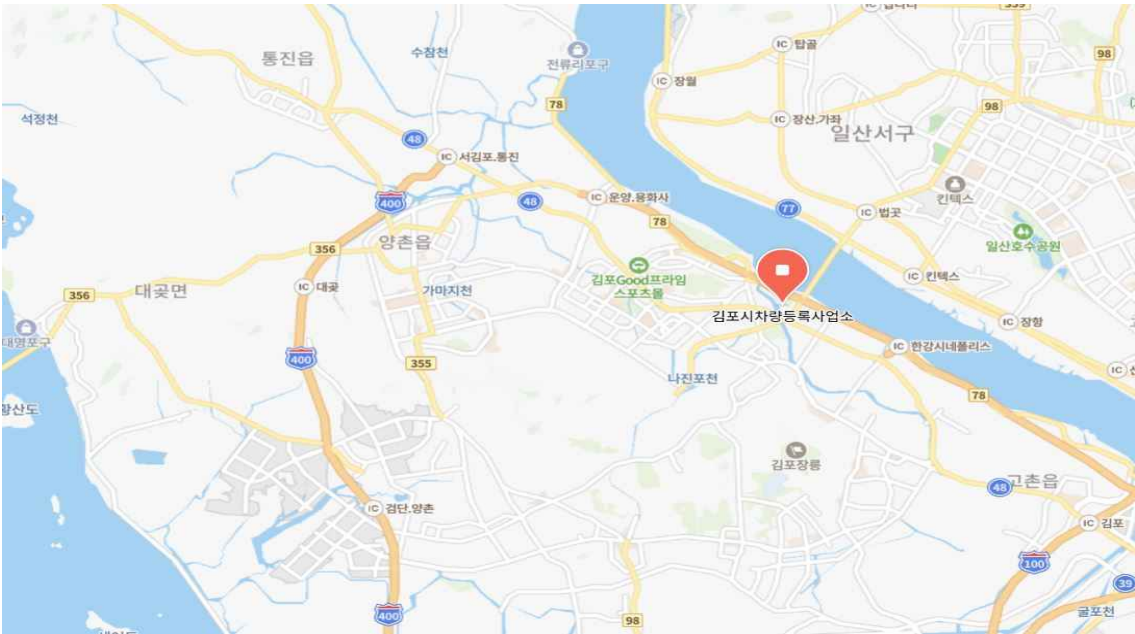
2023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3회) ·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2024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2회) · 청사 엘리베이터 CCTV 공사
2025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2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진입로 배수 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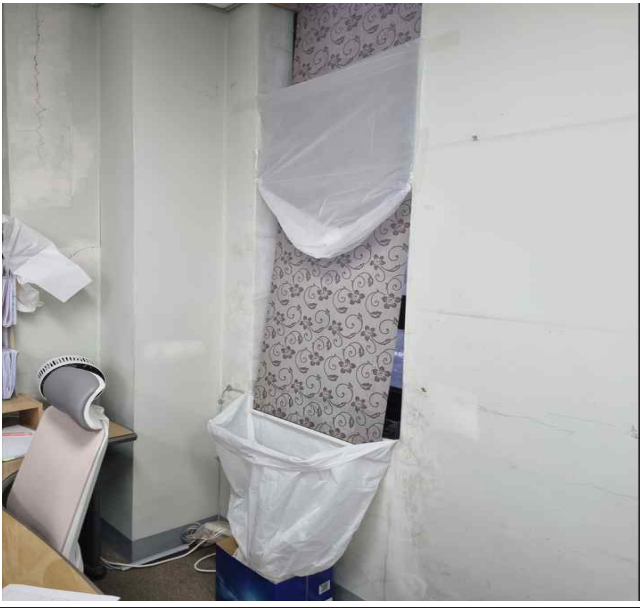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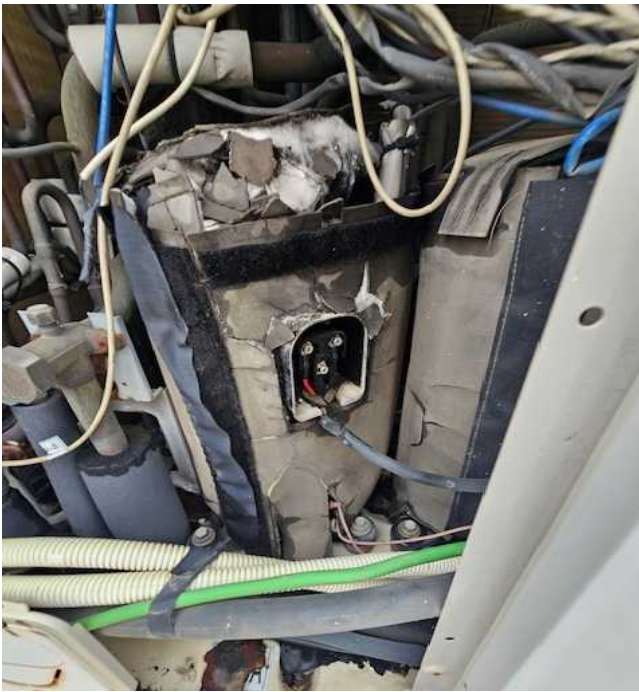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6,155	123,220	-	2,935	
2024	95,096	92,284	-	2,812	
2025	99,332	85,517	-	13,81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차량등록과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1,875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서고 모빌렉 및 기록물 이전)	사업위치	감암로 125		
위치도					
현장사진 (서고 모빌렉 및 기록물 이전)					

부서	차량등록과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1,875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사업위치	감암로 125		
현장사진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부서	차량등록과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1,875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청사 수목전정 및 제초)	사업위치	감암로 125		
현장사진 (청사 수목전정 및 제초)					
					

부서	차량등록과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본예산 요구액 (천원)	131,875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사업위치	감암로 125		
제품사진					
현장사진 (냉난방기 수리 및 유지관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대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480	5,520	7,680	0	0	-2,160	6,600	1,0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480	5,520	7,680			-2,160	6,600	1,0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600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급속충전기 수선유지비 : 600,000원 × 1기 · 급속충전기 위탁관리비 : 150,000원 × 12월	600 1,800	2,400
	201-02 공공운영비	·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350,000원 × 12월	4,200	4,200

□ 예산요구 사유

- 차량등록과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는 전기자동차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대비,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량 감소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대비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예산 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계약 체결(전기차충전사업자)
 - 2026. 01. ~ 2026. 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1대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충전시설 위탁관리비용 지급(1~12월) · 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1~12월)
2025	· 충전시설 위탁관리비용 지급(1~9월) · 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1~10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480	6,740	-	1,740	
2025	5,520	3,650	-	1,87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

자동차등록관리 홍보물 제작

사업기간	2026. 01. 0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방문 민원		
사업목적	자동차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된 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차량 소유자들에게 홍보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6년 본예산 요구액 (G)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G-B)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500	4,500	4,500	0	0	0	4,5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500	4,500	4,500				4,5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	
자동차 등록관리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자동차등록관리 홍보물 제작(등록증 케이스) : 375원 × 12,000장 =	4,500	

□ 예산요구 사유

-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차량 변경·이전 등에 대한 사항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 홍보 대상 선정 및 홍보물 제작
 - 2026. 03. ~ 2026. 12. : 홍보물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 수량: 15,000개 - 비용: 4,950천원
2024	·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 수량: 12,300개 - 비용: 4,465천원
2025	·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 수량: 12,000개 - 비용: 4,5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00	4,950	-	50	
2024	4,500	4,465	-	35	
2025	4,500	4,5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

